

農業法令 整備에 대한 研究

韓國 農業法學會 編

2001. 3.

농림부 자료실		
등록번호:		
등록일:	년	월 일
기증:		

머 리 말

「농업법령 정비에 대한 연구」의 농림부의 研究用役은 2000. 11. 3.부터 시작되었다. 연구의 주된 목적은 1999. 2. 5. 「농업·농촌기본법」이 공포됨에 따라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됨으로 인하여 기존의 다른 농업법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구체적으로는 「농업·농촌기본법」에 일치하지 않는 농업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에 일치하도록 새로 입법할 농업법이 있는지 등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새로 공포된 「농업·농촌기본법」 자체의 분석과 아울러 다른 농업법령 전체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연구는 진행되었다. 연구기간이 6개월이었기는 하나 이번 연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성과는 첫째, 「농업·농촌기본법」의 성립경위와 의미가 밝혀졌으며(「농업·농촌기본법」해설) 둘째, 여성농업인육성법안의 구체적인 윤곽이 나타났으며, 셋째, 농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고, 일자상속제가 연구되었으며, 넷째, 농업법 중 개정을 요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지적되었으며, 새로 立法을 요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타나게 되었다. 예컨대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이용 증진, 강제임대차, 일자상속제 등,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들의 중요한 대부분이 「농업·농촌기본법」으로 옮겨가고 다른 일부는 농어촌정비법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이제는 농어촌정비법의 중요성이 과거보다 부각되게 되었다. 특히 거기에 규정된 限界農地의 개발을 어떻게 추진하는가가 문제이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농업·농촌기본법」의 성립과정에서 法案에는 들어갔다가 빠진 농업회의소 설치 문제, 또한 농산물 유통에서 농산물규격의 법제정 문제는 앞으로 중요한 연구과제로 생각한다. 이번 연구는 문제의 해결책 제시 라기보다는 지금부터 연구는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연구에 한국농업법학회에 연구비를 지원한 농림부당국에 감사한다. 또한 이 연구는 농업경제학자와 법학자의 공동연구의 성과이다. 바쁜 중에서도 협력·집필 하여 주신 교수들에게, 그리고 연구보고서를 읽고 코멘트를 하여 주신 농림부 실무자 여러분에게 깊은 사의를 표한다.

이 연구보고서가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발전에 기여있기를 바란다.

2001. 3. 3.

서울법대 명예교수실에서

한국농업법학회 회장 황적인

목 차

1. 序 論	1
I. 總說	1
II. 各論	2
2. 農業·農村基本法 解説	5
I. 序論	5
II. 解説	5
III. 農業·農村基本法の 문제점	85
3. 女性農業人育成法案	92
I. 연구의 개요	92
II. 학회의 법안	93
III. 김영진의원안과 학회의 대안의 대비표	97
4. 農業協同組合法	108
5. 農地法 등	116
(1) 農地法	116
(2) 强制賃貸借	153
I. 프랑스 農業法の 農地 强制賃貸借	153
II. 프랑스 農業法(Code Rural)	155
III. 末耕作 또는 非效率性으로 利用되는 土地의 整備	155
(3) 農地의 一子相續制	169
(4) 草地法	187
6. 農漁村整備法 등	190
(1) 農業構造	190

(2) 限界農地	196
I. 일본의 「特定農山村法」의 중요성	196
II. 일본의 「特定農山村法」의 중요성	197
7. 農産物流通	210
7-1. 農産物 流通 關聯 法律	210
I. 「양곡관리법」 정비사항	210
II.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정비사항	211
III. 「농산물 품질관리법」 정비사항	218
IV.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법」 정비사항	219
7-2. 農産物 規格	222
I. 일본의 농림물자규격관련 법률에 관하여	222
II. 농산물표준화 및 규격화에 관한 증언	223
8. 農業動産信用法	227
I. 序 論	227
II. 日本農業用動産의 抵當權	227
III. 일본 농업 동산신용법(1933. 3. 29 법률 30호)	229
9. 農漁業災害	236
10. 環境農業法	240
(1) 親環境農業育成法	240
(2) 土壤汚染防止	243
11. WTO協定履行特別法	246
I. 들어가며	246
II. 개별조항의 검토	247

1. 序 論

I. 總 說

1. 農漁村整備法(1994. 12. 22.), 農地法(1995. 12. 22) 및 農業資材關係法인 種子産業法(1995. 12. 6.), 肥料管理法(1995. 12. 6. 全文改正), 農藥管理法(1995. 12. 6. 全文改正), 農業·農村基本法(1999. 2. 5.)으로 남은 法律은 폐지·改正 또는 새로 立法되었으므로 중요한 農業法令의 第 1 次的 法令整備事業은 대체로 끝난 것으로 생각된다.
2. 그리하여 앞으로 하여야 할 일은

첫째, 第 1 次的 法令整備의 후속사업으로서 第 1 次的 法令整備에 따른 면밀한 다른 法令의 내용정비 및 補完이 필요하며 광범위하고 수년간에 걸친 農業法令의 制定 또는 改正된 變動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制度에 農業界를 適應·定着시켜 뿌리를 내리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農業·農村基本法이 1999년 2월 5일에 가장 늦게 제정되었고 또한 이는 모든 農業法令의 기초를 이루는 法律이므로 이 法律과 모든 農業法令이 符合·一致하는지 확인하고 문제점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셋째, 外國(독일·프랑스·일본 등)에서 制定·施行되고 있는 農業法令을 比較法的으로 연구하여 필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導入, 새로 立法할 필요가 있다.

II. 各 論

1. 농업법 중 새로立法을 요하는分野

(1) 벤처農業 등의 육성

農業·農村基本法 제 26 조에 「벤처農業 등을 지원·육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벤처企業育成에 관한 特別措置法」(1997) 제 2 조에 “벤처企業”의 定義에서 農業은 극히 일부에만 반영되어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 2 조 제 3 항 제20호. 참조). 따라서 벤처農業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상기 法을 개정하든가 또는 벤처農業지원을 위하여 새로 法律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日本에는 「農業에 관한 技術의 研究開發의 促進에 관한 特別措置法」이 있다. 그러나 이 法은 研究機關의 설치에 관한 것이고, 벤처農業과 직접 관계는 없다.

(2) 農林物資規格

農産物規格에 관하여 우리나라에는 「農水産物品質管理法」제 4 조 (標準規格)가 있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제 3 조 (표준규격의 제정)부터 제 7 조까지 다섯조문이 있을 뿐이다.

이에 반하여 日本에는 「農林物資規格法」·「JAS法」(正式 명칭은 「農林物資의 規格化 및 品質表示의 適正化에 관한 法律」)(1970년에 題名을 바꿈) 동 施行令 및 동 施行規則이 있다. 총 62조문이며, 「現行法規總覽」 58권은 총 2191 면인데, 이 大部分이 農林物資의 規格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農産物加工産業은 아직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나, 앞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農産物의 對日輸出의 擴大가 요망되므로 農産物의 規格에 관한 法律의 제정이 필요하다.

(3) 土壤汚染防止

우리나라에는 親環境農業育成法(1997년, 全文 27조문)이 있으나, 이에는 農用地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다.

日本에는 「土壤汚染防止法」(正式 명칭은 「農用地의 土壤의 汚染防止 등에 관한 法律」)이 있다. 土壤이 일단 汚染되면 회복하는데 오랜 세월이 소요되고, 農業에 있어서는 土壤汚染의 방지가 절대 필요하므로 이에 관한 法律의 제정이 필요하다.

(4) 農業動産信用法

日本에는 2次 大戰 전부터 이 法이 있는데, 우리나라 農村에는 지금은 農機械가 많은데도 아직 이를 담보로 해서 융자하는 길이 열려져 있지 않다. 이 法은 動産擔保法이므로 農機械 등을 담보로 하여 융자받은 후에도 계속 農民이 그 機械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法律의 제정이 바람직하다.

2. 現行 法律 중 改正을 요하는 事項

(1) 農業·農村基本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필요성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중의 많은 조문이 농업·농촌기본법으로 옮겨갔으나 기본법은 기본법의 성질상 선언적 조문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농발법에 있던 많은 조문이 축소되었으므로 농발법에 남은 자세한 시행적인 조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기본법 제정에 따르는 후속 조치가 문제된다.

(2) 農地法

1) 農地의 利用增進 등

이에 관해서는 農地法 제 13~21 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 규정은 日本의 「農業經營基盤強化促進法」을 축소하여 규정한 것인데, 이것은 農業경영의 규모확대 내지는 農業경영자에 대한 農地의 利用集積이어서 대단히 중요한 法律이므로 이것

을 자세히 연구·검토하여 改正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農地의 賃貸借 중 法定 賃貸借제도의 導入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유휴농지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농가의 이웃에 있는 농가의 농지를 임대하여 농경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프랑스 농업법전 제 125조의 1 에서 15 까지 규정되어 있는 강제임대차 제도의 도입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3) 農地의 保全 및 轉用

현행 農地法 제 4 장 農地의 保全 등 제 30 ~ 35 조에는 農業振興地域의 指定·運營을, 제 30 ~ 45조에는 農地의 轉用을 규정하고 있으나 日本의 「農業振興地域의 整備에 관한 法律」(全文 26조문)을 참고로 하고 農地法 제 2 장 農地의 保全 등에 규정된 내용을 보다 具體的으로 研究·分析하여 농지의 보전강화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4) 農地의 一子相續制

農地法 제 21 조 [農地所有의 細分化 방지]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具體化하는 條文이 없다. 日本의 (舊)農業基本法에는 「國家는 자립경영과 자립경영코자 하는 가족농업경영 등의 세분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遺産의 相續에 있어서 종전의 농업경영을 가능한 한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인계하여 담당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한다」고 규정하고, 상속자금제도를 구상하여 1955년 자작농유지창설자금융통법을 제정·시행하였다.

(3) 農漁村整備法 중 限界農地 등의 整備

農漁村整備法 제 7 장 제 2 절에 규정된 限界農地 등의 整備는 日本에서 1993년 6월 16일에 공포된 「特定農山村法」(정식 명칭은 「特定農山村地域에 있어서 農林法 등의 活性化를 위한 基盤整備의 促進에 관한 法律」全文 23조, 附則 12조문)을 도입·규정한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山이 많아서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연구·보완할 필요가 있다.

2. 農業 · 農村基本法 解説

I. 序 論

「농업·농촌기본법」은 한국 농업의 발전의 기초이고 설계도이며, 출발점을 이루는 법률이다. 기본법이라고 하면 기본 원칙만을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법률은 단순히 기본원칙을 열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농업 발전에 필요한 모든 한국농업의 구도를 그리는 법률인데 그 중요성이 있다. 이제, 이 법의 조문의 의미와 성립과정 그리고 농업 실물과의 관계를 서술한다.

II. 解 說

第1條(目的) 이 법은 國家와 國民經濟의 基盤인 農業과 農村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農業·農村이 나아갈 방향과 國家의 政策方向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1조의 조문은 1998. 7. 14. 기본법작업반의 초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이 국민의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등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가와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고, 농촌이 산업과 자연이 조화된 국민공유의 삶의 공간으로서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과 보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농촌 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법령정비협의회(3차 회의 : 1997. 12. 26. 농림부 대회의실)에서는 더 간단하게 조정하도록 요청하여 보다 축소하여 위와 같이 작성된 것이다.

第2條(基本理念) 農業¹⁾은 國民의 食糧을 안정적으로 供給하고 國土環境保全에 이바지 하는 등 經濟的·公益의 기능을 수행하는 基幹産業으로서 國家經濟의 調和로운 발전의 基盤이 되도록 하고, 農業人²⁾은 自律과 創意를 바탕으로 다른 産業從事者와 균형된 所得을 실현하는 經濟主體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하며, 農村³⁾은 固有한 傳統과 文化를

보존하는 풍요로운 産業·生活空間으로 발전시켜 이를 未來世代에 承繼되도록 함을 이 法의 基本理念으로 한다.

제2조(基本理念)은 한국농업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본법 작업반 초안에서는 다음과 같았다.

제2조(기본이념) 농업은 농업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여 경쟁력 있고 환경과 조화된 생명산업으로의 발전을 추구하고, 농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한 풍요로운 산업·생활공간으로의 발전을 유도하여 이를 미래세대에 승계되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에 대하여 법령정비협의회에서는 이 내용을 삭제하고 정책목표를 각 주체, 즉 농업·농업인·농촌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농업·농업인·농촌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그 역할을 규정하였다.

1) 農業은 國民의 食糧을 안정적으로 供給하며 國土環境保全에 이바지하고 基幹 産業의 역할을 수행하며, 농업은, 경쟁력을 갖춘 종합과학산업, 국토환경보전과 농촌사회유지에 기여하고 국가와 민족의 유지·형성에 기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익적 산업이다. 요컨대, 농업 - 경쟁력 있고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이다.

2) 農業人은 自律과 創意를 기본으로 다른 産業從事者와 균형된 所得을 실현하는 經濟主體이다. 즉 농업인 - 타산업 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이다.

3) 農村은 固有한 傳統과 文化를 보존하는 풍요로운 産業·生活空間으로 발전시켜 未來世代에 承繼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농촌은, 다양한 경제·사회·문화활동의 기본으로서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한 풍요로운 산업·생활공간이다. 즉, 농촌 -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산업·생활공간이다.

第3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農業”¹⁾이라 함은 農作物生産業, 畜産業, 林業 및 이들과 관련된 産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農業人”²⁾이라 함은 農業에 종사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者를 말한다.

3. “農業經營體”라 함은 農業人,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營農組合法人 및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會社法人을 말한다.
4. “生産者團體”³⁾라 함은 農業生産力의 增進과 農業人의 權益保護를 위한 農業人의 自主的인 組織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團體를 말한다.
5. “農村”⁴⁾이라 함은 郡의 地域과 市의 地域 中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을 말한다.
6. “農産物”⁵⁾이라 함은 農業活動에 의하여 생산되는 農作物·畜産物·林産物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産物을 말한다.

1) 農業 : 제3조 1호의 「農業」을 시행령 2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농작물생산업 : 식량작물생산업·원예작물생산업·특용작물생산업·양잠업 및 종자생산업
2. 축산업 : 가축의 사육업·부화업 및 종축업
3. 임업 : 영림업(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임산물생산업 및 야생 조수사육업

2) 農業人 : 시행령 제3조 2호의 「農業人」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농업인이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1호의 1000㎡는 303평인데, 農漁村整備法 제83조 1항 2호는 「農林漁業人, 營利目的이 아닌 營農을 하고자 하는 자 및 農漁村居住希望者」는 限界農地, 즉 條件不利地域(中山農村 등)에 거주하는 非農業人을 의미하며 이들이 住宅을 分讓·賃貸받은 경우에 부속된 農地를 제외하고 303평 이상을 경영 또는 경작하여야 「農業人」으로 된다는 뜻이다.

3) 生産者團體

(1) 제3호 「生産者團體」에 관하여 기본법작업반이 작성한 법안(이하 제1초안, 1998. 6. 29.)에서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었으나 基本法에서는 가目 이하 모두 삭제되

었다.

4. “생산자단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단체를 말한다.

-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나.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다.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라.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2) 시행령 제4조는 「生産者團體」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1호)
- ②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이하 “임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3호)
- ③ 연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연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연연초생산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4호)
- ④ 기타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조직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6호)

4) 農村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 중 농림부장관이 농촌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촌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승 5조).

5) 農産物 : 시행령 제6조가 정하는 것은 「사육하는 야생동물의 고기·알 기타의 부산물」을 말한다.

第4條(國家·地方自治團體 및 農業人의 責務)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農村地域開發 등을 위한 綜合的인 施策을 수립하고 이를 施行할 責務를 진다.

② 農業人은 農業·農村의 發展主體로서 品質좋고 安全한 農産物을 안정적으로 生産·供給하고 生産性向上과 經營革新 등을 통하여 國家發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條文은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農業人의 農業·農村발전지원을 위한 責務를 규정한 것이다. 解釋論으로 추가할 것은 國家는 綜合的인 施策을 강구하고 地方自

治團體는 그 地域條件에 맞는 施策을 강구하는 것으로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1)

農業人은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로부터 지원을 받으므로 그에 상응한 責務를 지는 것이다.2)

1) 同旨, 日本 食料·農業·農村基本法(이하 日基本法이라고 略함) 8조

2) 日基本法에서는 「農業團體의 努力」(同9조)과 「食品産業事業者의 努力」(同10조)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고, 11조에서는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者·農業團體 및 食品産業事業者가 하는 自主的인 努力에 대하여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2條는 「消費者의 役割」로서 食品의 消費生活의 向上에 積極的인 役割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第2章 農業・農村施策의 基本方向

第5條(施策의 수립·施行의 기본원칙)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施策을 수립·

施行함에 있어서 市場經濟原理¹⁾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되, 農業의 公益的
기능²⁾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條文은 政府의 農業施策의 基本原則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자금지원을 비롯하여 생산·유통지원 등 농업전반에 걸쳐 市場經濟原理를 바탕으로 하되, 농업의 外部經濟效果를 고려하여 環境保全·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개입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1) 市場經濟

市場經濟란 經濟의 중점을 市場(需要·供給의 原則이 지배하는)에 둔 經濟를 의미하며, 自由經濟를 말한다. 그러므로 農業분야에서 규제개혁을 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려는 것이다. 非農業人의 농업분야 진출규제를 완화하며(자본·농지 등), 농업분야의 M&A를 촉진하며(경영 자산 이전을 촉진), 농산물가격지지를 축소하며 유통을 효율화한다.

2) 公益的 기능

또한 농업의 公益的 기능의 개념을 法的으로 인정함으로써 對外的으로 WTO 차기 농산물협상에 대응하여 우리 農業政策의 方向을 선언하며 農業投資에 대한 획일적 효율성 논의를 극복하여 구체적 필요에 입각한 直拂制확대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第6條(國民食糧의 안정적 供給)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民食糧의 안정적 供給이 國家의 건전한 발전과 國民의 生活安定을 위하여 필수적인 要素임을 認識하고 이를 위하여 적정한 食糧自給水準의 目標을 設定·유지하며 적정한 食糧在庫量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2章 農業·農村施策의 基本方向은 다섯 개의 시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1)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제6조)
- (2) 농업구조 개선의 촉진(제7조)
- (3) 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제8조)
- (4) 환경친화적 농업의 육성(제9조)
- (5) 통일대비 농업정책(제10조)

제6조는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즉 國民食糧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정 식량자급수준의 目標을 설정·유지하고, 적정재고량 확보를 위한 정부의 의무를 규정하였다. 이것은 公共備蓄 개념을 法上 도입한 것이다.

주곡을 포함한 국민식량의 安定的 공급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지 등 생산기반을 확보하여야 하고 식량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³⁾

제6조의 구체적 시행법은 糧穀管理法이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수립(제3조)

정부는 매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양곡의 비축(제10조)

농림부장관은 천재·지변 기타 급격한 경제변동에 대비하기 위하여 양곡을 비축하여야 한다.

糧穀管理法 제19조는 市·道知事가 양곡가공업의 등록(1항) 및 신고(2항)를 규정하고 제21조는 역시 市·道知事의 營業停止·登錄取消(1항)를 규정하고, 제28조는 登

3) 식량수급여건은 다음과 같다.

① 국내여건

- 곡물자급도 : ('90) 43.1 → ('95) 29.1 → ('97)29.2%
- 쌀자급도 : ('90)108.3 → ('95) 95.9 → ('97)104.8%
- 논면적 : ('90)1,345 → ('95)1,206 → ('97)1,163ha
- 북한곡물수급추정('97) : 생산 3,700천톤
 수요 6,700천톤, 해외도입 940천톤, 부족 약 2,000천톤

② 세계여건

- 인구증가, 곡물생산성 증가세의 둔화, 중국의 식량수입국으로의 전환 등으로 식량 수급 여건 악화(식량 재고비율이 70년대 이후 최저)
- 국제 곡물 교역은 i) 자급위주의 구조(thin market), ii) 수출국의 과점구조(oligopoly market)의 특징을 가짐
- 국지적인 수급불균형이 가격의 폭등·폭락 야기
- 생산량 1% 변화 → 교역량 17% →가격 47% 변화
- * 80년 한국 쌀 수입시 국제 쌀가격이 47%(367 → 541불/톤)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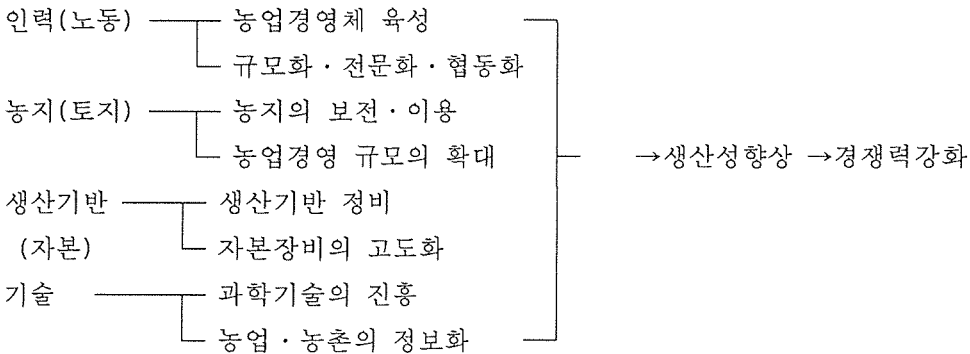
錄取消時 聽聞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市·郡·區廳長의 사무로 이양하도록 2001년에 改正할 예정이다.

第7條(農業構造改善의 촉진)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産物의 生産·流通 등 綜合的인 農業構造의 개선을 통하여 農業의 競爭力을 높이고 農業人의 所得이 增大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基本施策의 하나로서 農業構造改善(Structural Reform) 추진에 대한 선언적 조문이다. 構造改善의 목적은 생산성향상에 의한 경쟁력강화이다. 이에 관해서는 이 法 제3장 農業構造改善이라는 제목하에, ①農業人力의 育成(1절), ②農地의 이용 및 보전(2절), ③農業生産構造의 高度化(3절)에 구체적으로 細分化하여 규정하고 있다.⁴⁾

농업구조의 개선방안을 圖表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⁵⁾

< 농업구조의 개선방안 >



농업구조에 관련된 법률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농업단체⁶⁾에 관하여

- 4) 원래 農業構造 개선에 관한 法律로서 農漁村 發展 特別措置法(1990. 4. 7. 공포)이 있었으나 그 중 중요한 條文은 모두 農業·農村基本法에 옮겨져서, 현재는 漁業에 관하여 약간 남아 있고, 앞으로 漁業基本法이 제정되면 農發法을 폐지할 예정이다.
- 5) 農業構造改善에 관하여 그 중요성에 비추어 日本의 「食糧·農業·農村基本法」에서는 제2장 3절 「農業의 持續的인 發展에 관한 施策」의 제목으로 13조문(21~33조)이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 6) 직접 농업에 관련되는 것은 아니나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山林組合法과 水産業協同組合法이 있다.

- ① 농업협동조합법
- ②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 관한 법률

(2) 農地에 관하여

- ① 농지법(이에 관련되는 것으로 초지법)
- ②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③ 농어촌정비법

(3) 농업생산구조의 고도화

- ① 농업기계화촉진법
- ② 농어촌 도로 정비법

(4) 농업기술

- ① 농약관리법
- ② 비료관리법
- ③ 종자산업법
- ④ 농촌진흥법
- ⑤ 방조제관리법

(5) 농업구조개선에 관한 자금관리에 관하여

- 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 ② 농어촌특별세법
- ③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법

第8條(農村地域開發 및 福祉增進)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村을 都市와 連繫된 生活空間으로 발전시켜 農村의 快適性이 增大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村地域의 固有한 傳統과 文化를 보전·계승하고¹⁾ 農村 住民의 福祉增進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條文은 현재 WTO/OECD 등에서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地域開發(Rural Development)에 대한 선언적인 조항이다.

이는 종래의 가격지지 등 전통적인 농업보호정책은 계속 축소됨에 따라 지역의 창의력 고취, 교통·통신 등 SOC차원의 투자, 농외소득원 확대와 같은 포괄적·지역적인 개발에 대한 투자수요는 오히려 증대되고 이를 통한 직·간접적인 농업·농촌에 대한 파급효과를 제고하려는 측면에서 지역개발은 중시되고 있다.

농업정책으로는 장기간 지속 가능하고 광범위한 농촌의 생존능력개발이 어려워지고 국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일정인구의 농촌거주가 바람직(농업의 사회적 안전망(Social Safety Net)기능, 고용흡수 기능 등)하다.

* 귀농가구 추세 : ('90)371 → ('95)922 → ('97)1,823 → ('98.1~5)3,513가구
('90~'98.5 : 10,681가구)

특히 지역개발에 대해서는 개발을 통한 농촌지역의 쾌적성(amenities) 증대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외국의 정책도 개발부문으로 집중되고 있다.

- 일본 : 中山間地域 지원대책
- EU : 농업·농촌의 구조조정을 위한 구조기금 확충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농업·농촌기본법에서도 농촌지역 생활환경개선, 농촌지역 산업진흥, 복지향상·소득지원 등을 「농촌지역개발」로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원래 「農村地域의 固有한 傳統과 文化를 보전·계승하고」라는 문구는 제1초안에는 없었는데 법령정비협의회(1997. 12. 26.)에서 당시 초안내용이 시설 등의 Hardware에만 중점을 두고 있으나 Software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언급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제2초안에서부터 이 문구가 제2항에 추가되었다.

[농촌개발·복지에 관한 법규정]

이에 관해서는 農業·農村基本法 제6장(37~41조)에 규정되어 있고, 법률로는

- ① 농어촌정비법 제5장(29~42조), 제7장(66~75조) 산업진흥·휴양자원
- ②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 ③ 농어촌전화촉진법
- ④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⑤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 ⑥ 농어업재해대책법
- ⑦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직접지불)

第9條(環境親和的 農業의 육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의 環境保全機能을 增大시키고 安全한 農産物의 生産 및 消費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環境 親和的인 農業을 육성하여야 한다.

이 條文은 농업의 세계적인 추세가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적 농업(Low Input Sustainable Agriculture)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대응한 기본시책을 선언적·방침적 조항으로 규정하였으며⁷⁾, 농업의 환경보전효과, 고품질농산물 공급 등을 위한 환경친화적 농업육성을 기본시책으로 규정하였다.

21세기 지속가능한 개발의 시대를 맞이하여 농업의 환경보전효과 등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공급을 위한 환경친화적 농업육성을 농정의 기본시책으로 선언한 것이다.

또한 원래 草案에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및 「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것은 법령정비협회의회의 심의에서 삭제되었다.

이 條文은 환경보전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강화하며

7) 농림업의 환경보전 등 공익적기능 추정(농경연)

		물량(억M/T)	한국(10억원)	일본(10억엔)
강수 저류기능	산림 경지	340~450 23~30	3,040~4,590 940	1,610~3,680 850
지하수 함양기능	경지	100		
토존 보존기능	산림 경지	1,953m ²	3,781~6,220	2,320~5,570 100
환경보존기능 (대기정화)	산림 경지	230	2,113~15,725	4,873~11,440 10,850
(수질정화)	산림 경지			
(폐기물정화)	경지			
계	산림 경지		8,934~26,535 940	8,803~20,690 11,940

- ①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지원하며
- ② 유기농 등 친환경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며
- ③ 환경과 조화되는 농촌지역을 개발하려는 것이다.

21세기 지속가능한 개발의 시대를 맞이하여 농업의 환경보전효과 등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공급을 위한 환경친화적 농업육성을 농정의 기본시책으로 선언하였다.

제9조를 시행하는 법률은 「친환경농업육성법」이며, 이 條文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法律은 「수질환경보전법」과 「먹는물관리법」이 있다.

第10條(統一對備 農業政策) ① 政府는 統一에 대비하여 北韓의 農業生産體制, 農地 및 農產物流通制度 등에 대한 調査·研究를 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南北韓間의 農產物去來는 民族內部去來임을 인식하고 南北韓間 農業部門의 相互交流 및 協力を 增進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통일대비 농정시책에 대한 기본방침을 선언한 조항이다.

최근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남북교류 중 농산물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식량난을 감안할 때 통일과정에 있어서 농업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기본방향을 규정하였다.

남북간 내부거래원칙은 WTO이행특별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취지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선언적으로 규정하였다.

1. 대북 농업지원 및 교류협력 기본방향

- ① 대북지원은 인도주의 차원의 단기적인 식량지원을 고려하되, 근본적인 농업생산능력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종자, 비료·농약 지원 등 북한농업생산성 향상 지원하고, 식량지원은 최소비용으로 영양공급효과를 극대화하되, 투명성을 확보한다.
- ② 남북관계개선에 따라 농업기술협력, 농업분야 공동개발·합작투자 등의 교

류·협력을 추진한다.

남북한의 작부체계(남한-논, 북한-밭)를 보완하는 농산물 계약재배 등을 추진하며, 유전자원의 공동연구, 종자·종묘의 교환 등 기술교류, 합영농장 운영, DMZ 등 제3지역의 생태농업 공동개발을 추진한다.

북한 농림축산업 부흥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한 농업협력과 국제 콘소시엄 참여방안(KADO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민간차원의 연해주 및 만주지역 남북한 공동개발을 지원한다.

③ 통일 이후 식량의 안정적 확보 및 남북한 농업생산체제, 시장·유통, 농지제도 등의 조화로운 통합방안을 수립한다.

2. WTO 이행특별법

제5조(민족내부거래) 남북한간의 거래는 민족내부거래로서 협정에 의한 국가간의 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이 조문의 취지는 남북한간 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 규정함으로써, 第3國의 WTO 협정상의 최혜국대우(MFN - most favoured nation clause) 요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 ② 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4. 북한농업현황⁸⁾

농가인구('94) : 842만명(전체인구의 36.7%)

8) 文獻

- 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동향, 2권 2호(2000. 7.), 252 p.
- ②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남북농업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C 99-18-1(1999.12.), 191 p.
- ③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의 농기자재 수급 현황과 남북한협력방안, C 99-30(1999.12.), 189 p.
- ④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의 농산물 유통과 농민시장운영실태, C 99-29(1999.12.), 181 p.
- 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 농업 전보체계 구축방안, C 99-26-1(1999.12.), 173 p.

곡물수급('97) : 생산 3,700천톤,
수요 6,700천톤, 해외도입 940천톤, 부족 약 2,000천톤
비료생산('94) : 292천톤(남한 1,694천톤)
농약생산('94) : 11천톤(남한 30천톤)
남북한 농림산물교역('97) : 반출 7,744, 반입 10,402천불

第3章 農業構造改善

第1節 農業人力의 育成

第11條(家族農의 經營안정) 政府는 家族勞動力을 主軸으로 한 家族農의 生産性向上과 經營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農家의 特性에 맞는 規模化·專門化·協同化 등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이 條文은 우리 농업구조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가족농을 特性에 맞도록 育成하는 施策을 수립·시행한다는 것이다.

농업을 經營하는 最小단위는 農家인데, 이 조문은 농가(Agro-Family) 그 자체를 실정법상 권리·의무의 主體로 인정하는 길을 열어 놓은 데 큰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을 행하는 主體의 압도적 대부분이 농가인 것이다.

家族農의 형태로 經營하는 主體간의 法律관계는 民法상의 組合(민법 703-724조 ; partnership)이다.⁹⁾ 대개는 夫婦(와 親子)의 2인 내지 4인의 개인으로 構成되며, 이들 간에 家族經營協定이 체결되는 것이다.¹⁰⁾

家族農의 법률관계는

① 소득세법 - 家族農의 經營주체(남편 내지 家長)로부터 배우자 또는 子는 급여를 받는 관계로 되기 때문에 家長의 소득은 給與를 준 것만큼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② 相續稅法 - 家長으로부터 配偶者 또는 直系卑屬이 農地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特례가 인정된다.¹¹⁾

9) 宮崎俊行, 누구에게 農業을 해받는가, 농업법연구, 34(1999), 106면

10) 宮崎俊行, 激動의25年(1970年~1995年) と 日本農業法學, 朝日大學 法制研究所, 1996, 309면 이하

11) 宮崎, 日本 농업법학, 311p.

일본에서는 ①1964년 다음과 같은 「農地生前一括贈與」의 特례가 창설되었다(租稅特別措置法 70조의 4, 70조의 5). 즉 農地所有者가 農地를 後繼者에게 증여한 경우, 後繼者에게 대하여 과하는 贈與稅의 납세를 贈與者의 死亡시까지 유예해준다.

②또한 1996.4.1.에 「農業者 年金法」의 改正에 의하여 專業農家의 農業專業을 하는 家長의 夫人에게 農業者年金加入을 인정하였다.

資料 : 農地 等 - 相續稅·贈與稅의 納稅猶豫制度の手引 , 全國農業會議所, 1989. 7., 126 p.

第12條(後繼農業人の 육성) 農林部長官은 미래의 農業人力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農業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者를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後繼 農業人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한다.

이 조문은 담당할 주체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후계자를 선정 지원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농발법상 「농업인 후계자 등의 육성」 조항의 승계규정이다.

현재 농업인후계자 대상 연령이 40세 미만이고, 실질적으로 50세 이상인 후계자도 있으므로 농발법 제4조 1항의 「청소년」이라는 단어는 부적절하며, “농업경영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농업경영인”은 일반명사로서 사실상 모든 농업인을 포함하므로 부적절하다.

농업인후계자 선정 기준 등 시행규칙 제정이 필요하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농업인후계자 등의 육성)

- ①농림수산부장관은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림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청소년을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후계자, 어업인후계자, 임업인후계자(이하 “농업인후계자 등”이라 한다)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수산물 생산자단체는 농업인후계자 등의 육성·지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농업·농촌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후계농업인의 육성)

- ①농업·농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농촌에 정착할 뜻을 두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에 대하여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농업의 기술 및 경영에 관한 교육 기타 필요한 지도를 실시한다.
- ③후계농업인의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후계농업인에 대한 지원·교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에서 규정하는 後繼農業人の 육성은 넓은 의미, 즉 젊은 농업인을 육성·지원한다는 뜻이지만, 좁은 의미의 後繼農業人, 즉 어떤 農業人이 자기의 直系卑屬

에 농업을 물려주는 경우에는 農地의 一子相續制의 문제가 생긴다. 이에 관해서는 農地法에서 기술한다.

또한 후계농업인의 육성에 관하여 施行規則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후계농업인의 육성(시행규칙 제2조)¹²⁾

- ① 농업·농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농촌에 정착할 뜻을 두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에 대하여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농업의 기술 및 경영에 관한 교육 기타 필요한 지도를 실시한다.
- ③ 후계농업인의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후계농업인에 대한 지원·교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第13條(專業農業人の 육성) 農林部長官은 專門農業技術 및 經營能力을 갖추고 農業發展에 中樞的이고 先導的인 역할을 할 수 있는 農業人을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專業農業人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한다.

이 조문은 農發法상 「전업농업인 등의 육성」 조항을 승계한 규정이다.¹³⁾

農發法 ②항의 내용은 법(상속법 등)보다 정책으로 유도하거나 농업기본법 19조(농업경영의 세분화 방지)와 같이 모든 농업인력정책에 적용되도록 별도 규정함이 적절하다고 하여 현행 基本法 제13조와 같이 규정되었으나, 「一子相續制」의 개념은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後述 農地法 참조).

제13조의 제정과정에 있어서, 첫째, 농정발전기획단은 「경영혁신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법제화 방안」을 제출하고 專業農業人 대신에 “전문농업경영체”라는 명

12) 후계농업인의 육성에 관한 초창기의 資料로는

① 農漁民 後繼者 育成 세미나 報告書, 서울大 農科大學 農業開發研究所 刊, 1981, 169 p.

② 農民後繼者 育成事業을 위한 作目別 標準營農設計, KREI, 研究報告 72, 1983. 12., 157 p.

1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전업농업인 등의 육성) ①농림수산부장관은 농림어업의 경영규모의 적정화와 경영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농림어업의 경영능력과 의욕이 있는 농업인 등을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업농업인 등으로 육성한다.

②농림수산부장관은 전업농업인 등의 경영자산업 농림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상속인 또는 양수인에게 일괄하여 이전되도록 필요한 강구하여야 한다.

칭을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모든 법인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제13조와 같이 규정되었다.

둘째, 제13조의 표제를 「농업경영인 등의 육성」으로 하여 「농업인후계자」라는 명칭을 변경하려고 했으나 「농업경영인」이라는 말의 보편성·일반성에 문제가 있어 표제를 農發法 제3조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음 施行規則 제3조는 전업농의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전업농업인의 육성(제3조)

-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업인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농업인으로 한다.
-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업인에 대하여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③ 전업농업인의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전업농업인에 대한 지원·교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전업농 육성현황]

- 1) 2004년까지 전문화·규모화된 가족단위 전업농 12만호를 육성한다.
 - 쌀 6만, 축산 3만, 과수·화훼 등 3만
 - '97까지 71,229명 선정, 1조9,380억원 지원
- 2) 농진청, 특성화대학(전국 16개소) 등에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 농업 컨설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 3) 전업농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 전업농 육성대상자에 대한 D/B 구축
- 4) 전업농에 대한 지원확대로 규모화를 촉진한다.
 - 쌀전업농 영농규모화 자금 : ('97)34 → ('98)35백만원/호
 - 과수·화훼 등 전업농 : ('97)1,200 → ('98)1,300호

第14條(女性農業人の育成)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政策의 수립·施行에 있어서 女性農業人の 참여를 확대하는 등 女性農業人の 地位向上과 專門人力化를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여성농업인육성 및 여성복지향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선언적으로 표현한 조문이다. 여성농업인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여성농업인을 전문인력화하기 위한 시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은 매 5년마다 여성농업인육성계획을 수립하고(법 제14조, 영 제7조),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농촌정착을 위한 시책과 전문인력화를 위한 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반영하였다.

여성농업인의 육성에 관하여 현재 「여성농업인육성법」의 제정을 준비중에 있다. 제14조는 제1, 2초안에 없는 것으로 보아 최후단계에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육성에 관하여 施行순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제7조)

-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여성농업인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업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농업인력의 안정적 농촌정착을 위한 제도의 마련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업경영활동에서의 남녀차별적 요인의 해소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 기타 여성농업인 육성과 관련하여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여성농업인 현황]

(1) 농업노동력과 구조의 여성화·노령화

- ①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청장년층이 농촌을 떠남에 따라 농촌여성의 영농참여가 증가
'96년말 현재 전체 농가인구의 51.8%, 농업종사자의 51.1%를 여성이 차지
- ② 또한, 노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전체 농가인구 중 60세 이상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90년 17%(여성 19%)에서 '96년 28%(여성 30%)로 증가

(2) 농업생산에서 여성의 역할 증대

- ① 과거 여성은 농업생산에서 보조적 역할만 수행하였으나, 이제는 주도적 역할 수행

농림업 취업자 중 여성의 비율이 '80년 43.8%에서 '93년 48.6%로 증가

- ② 농업인후계자 중 여성의 선정비율 계속 증가 추세
('92) 2.4% → ('95) 6.1% → ('98) 12.9%

第15條(營農組合法人の 육성) ① 協業的 農業經營을 통하여 生産性を 높이고 農産物의

出荷¹⁾·加工·輸出 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農業人은 5인 이상을 組合員으로 하여 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營農組合法人은 法人으로 하며,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營農組合法人은 農業人과 農産物의 生産者團體 중 定款이 정하는 자를 그 組合員으로 하되, 組合員이 아닌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營農組合法人에 出資하고 議決權이 없는 準組合員으로 加入할 수 있다.

④ 營農組合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生産者團體의 組合員 또는 準組合員으로 加入할 수 있다.

⑤ 商法 第176條의 規定은 營農組合法人の 解散命令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農林部長官은 法院에 營農組合法人の 解散을 請求할 수 있다.

⑥ 營農組合法人の 設立·出資·사업·定款記載事項 및 解散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1) 共同出荷를 의미한다.

農發法상 「영농조합법인의 육성」 조항을 승계한 규정이다(다만, 기본법의 성격상 영농조합법인의 설립근거 등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출자 등 구체적인 사업은 대통령령에 위임).

1. 營農組合法人の 육성에 관한 農發法 第6조(현행 農發法에서는 삭제)와 基本法 第15조와의 차이점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영농조합법인의 명칭사용의무 : 農發法 第6조 5항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은 그 명칭 중에 영농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라고 규정하였으나, 基本法에서 규제완화차원에서 이를 삭제하였다.

2) 農發法 第6조 6항은 설립에 필요한 행위라고 하여 「⑥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농업인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기타 설립에 필

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基本法에서는 이를 삭제하였다.

3) 農發法 제6조 7항은 창립총회 의결 후 설립등기를 하도록 하여 「영농조합법인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고 규정하였으나 基本法 제15조 2항은 단순히 「그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였다.

4) 農發法 제6조 9항은 영농조합법인은 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이를 삭제하였다.

5) 영농조합법인의 농지 소유 : 農發法 제6조 10항은 「영농조합법인은 그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基本法에서는 이를 삭제하는 대신 農地法 제2조 3호 및 제7조 2항에 의하여 營農組合法人は 農地를 소유할 수 있다.

6) 해산사유 : 農發法 施行令 제14조는 일반적 해산사유(합병·파산 등)만 규정하였으나 基本法 제15조 5항에서는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會社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한 해산명령제도를 규정한 商法 제176조를 준용하여 농림부장관의 法院에 대한 해산청구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법령 정비협의회에서 객관적인 제3자적 입장의 사법(司法)기관이 아닌 정부(농림부장관)에 의한 해산명령제도는 기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은 자유이지만 해산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권한이 다소 강화되어 있다.

2. 영농조합 법인의 성격

영농조합법인은 실체는 조합이나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법 15조 2항) 상법상 합명회사와 유사하다.

3. 영농조합법인 육성사업

1)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공동출자 및 가공·수출 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도모한다. - '98 현재 4,241개소 설립 운영 중이다.

2) 주요지원 내용

① 정책지원

- i) 농림수산정책사업대상자로 선정시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 지원
- ii)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구입자금, 농가영농규모 적정화사업 지원

② 금융지원 : 농기업경영자금 지원

③ 세제지원 : 법인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등 면제

4. 조합, 합명회사, 영농조합법인 비교(현행)

구 분	조 합	합명회사	영농조합법인
근거법	민법	상법	농발법
최소구성원	2인 이상	무한책임사원 2인 이상	농업인 5인 이상
내부관계규범	계약	정관	정관
법인격유무	법인아님	법인	법인
설립시기	계약시	설립등기시	설립등기시
재산소유형태	조합원의 합유	법인단독소유	법인단독소유
부채초과(파산)시	무한책임	무한책임(상세한 규정 있음)	민법 중 조합 규정 준용
조합원 책임	-	내부관계에 대해 서는 민법 중 조합규정 준용	민법중 조합규정 준용(시행령 제16조)
규정흡결시 보완방법	-	-	-

1) 결론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은 실체상 상법상 합명회사와 유사하므로 영농조합 법인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기본법(안)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상법상 합명 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이 때 영농조합법인 파산시 조합원은 무한책임 분담한다.

2) 만약 유한책임을 희망할 경우 농업회사법인 중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하면 해결이 가능하다.

5. 농림부장관의 영농조합법인 해산청구에 대한 검토

1) 상법 제176조는 특정한 사유(설립목적 불법 등)가 있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 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2) 상법 제176조가 공익보호를 위해 검사를 해산청구권자에 포함시킨 입법취지를 감안하고, 영농조합법인의 업무성격 등을 생각할 때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청구권자에 농림부장관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6.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

이에 관하여 시행령 제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승 제8조)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는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의 신청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8호 및 제13호에 기재한 사항
2.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3. 영농조합법인의 임원(이사 및 감사를 두는 영농조합법인에 한한다)의 성명과 주소
4. 2인이상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 총출자좌수와 납입할 총출자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사록
2. 정관
3. 출자자산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4.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이전 및 변경등기(승 제9조)

① 영농조합법인이 그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각각 2주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1항 각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④ 사무소의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는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하는 조합원이 신청하여야 하며, 그 등기신청서에는 사무소이전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준조합원의 자격(승 제10조)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농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2.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3.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입·유통·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

(4) 생산자단체에의 가입(令 제11조)

법 제15조제4항(법 제1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는 농업협동조합·산림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으로 한다.

(5) 생산자단체에 가입한 영농조합법인의 지도(規則 제4조)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생산자단체 및 생산자단체의 중앙회의 장은 당해 영농조합법인이 효율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6) 조합원의 출자(令 제12조)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현금 기타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7) 영농조합법인의 사업(令 제13조)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2.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3.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8) 정관기재사항(令 제14조)

① 영농조합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시의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8. 출자액의 납입방법, 출자액의 산정방법 및 조합원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 의 최고 한도에 관한 사항
9. 이익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2. 총회 기타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3.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② 농림부장관은 영농조합법인의 효율적인 설립을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정관례를 정하여 이를 정관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9) 영농조합법인의 해산(令 제15조)

영농조합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2. 영농조합법인이 합병한 경우
3. 영농조합법인이 파산한 경우
4.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5. 조합원이 5인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인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10) 해산등기 등(令 제16조)

- ① 영농조합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이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청산이 종결된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92조·제193조 및 제197조 내지 제20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1) 관할등기소(令 제17조)

- ① 영농조합법인의 등기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당해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
- ② 관할등기소에는 영농조합법인등기부를 비치한다.

(12) 다른 법률의 준용(令 제18조)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第16條(農業會社法人의 육성) ① 企業的으로 農業을 경영하거나 農産物의 流通·加工·

販賣를 하고자 하는 者 또는 農業人의 農作業을 대행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業會社法人을 設立할 수 있다.

② 農業會社法人을 設立할 수 있는 者는 農業人과 農産物의 生産者團體로 하되, 農業人이 아닌 者도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의 범위안에서 農業會社法人에 出資할 수 있다.

③ 第15條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은 農業會社法人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④ 農業會社法人의 設立·出資 및 附帶事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 農業會社法人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商法 中 會社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農發法상 「농업회사법인의 육성」 조항을 승계한 규정이다. 다만, 기본법의 성격상 농업회사법인의 설립근거 등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설립절차·부대사업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1. 農發法에는 있으나 基本法에서 제외된 내용

1) 農發法 제7조 4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규정되어 있었으나¹⁴⁾ 기본법 제16조에서는 이것이 삭제되었다.

2) 農發法 제7조에는 농업회사법인의 해산명령제도가 규정되지 않았는데, 기본법 제16조 3항은 상법 제176조를 준용하여 농림부장관의 농업회사법인의 해산청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2. 농업회사법인 육성사업¹⁵⁾

1) 목적 :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생산성향상과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및 농작업의 대행으로 노동력 부족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도모한다.

- '98 현재 1,595개소 설립 운영

2) 지원내용

① 정책사업 지원

i) 농기계 구입자금, 시설설치자금(농기계보관창고 등) 등

ii) 농가영농규모 적정화사업 지원

iii) 농림수산정책사업대상자로 선정시 소요자금을 지원

14) 農發法 7조 4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5) ① 農業의 法人經營 分析과 發展戰略에 관한 事例 調査 研究 — 慶南의 事例를 中心으로, M28-5, KREI, 1992, 119 p.

② 農業法人에의 挑戰, 實踐을 배우는 法人化 推進의 포인트, 農業法人養成시리즈 No.1, 全國農業會議所, 1993, 246 p.

③ 新政策의 展開와 農業法人의 課題, 農業法人養成시리즈 No.2, 全國農業會議所, 1993, 268 p.

② 금융지원 : 농기업경영자금 지원

③ 세제지원 : 법인세 감면,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면제

3.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1) 농업회사법인의 설립(令 제19조)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2) 비농업인의 출자한도(令 제20조)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이 아닌 자가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합계는 그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부대사업(令 제21조)

농업회사법인은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4.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4) 정관례의 작성(令 제22조)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농업회사법인의 정관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 「농업회사법인」이 株式會社형태도 가능한가?

기본법 제16조 5항에서는 「商法 중 會社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施行令 제19조 3호에서는 株式會社를 들고 있으므로, 施行令 제20조는 비농업인의 출자한도를 총 출자액의 2분의 1로 제한하고 있고 株式會社 규정의 준용은 肯定的으로 새긴다. 獨逸法상으로는 株式會社형태의 농업회사법인도 가능하나, 日本에서는 안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5. 일본의 농업생산법인제도

구 분	내 용
창 설	1962년 농지법 개정으로 창설(농지법 제2조제7항)
성 격	농업인과 동등하게 농지취득이 가능하고, 농업경영을 행할 수 있음
종 류	농사조합법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구성원	농업인 및 법인에게 농지를 제공한 자 또는 법인의 상시 종사자 *최근 '93년 농지법 개정에서 법인에 현물출자를 행한 농지보유 합리화법인, 농협, 농협연합회, 일정범위내에서 법인의 사업을 이용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신기술을 제공하는 자는 구성원으로 인정
사업범위	농업 및 이에 부대한 사업 *최근에 농축산물의 가공, 저장, 운반, 판매 농작업의 수탁 등도 행할 수 있도록 함.
현 황 ('95년현재)	농사조합법인(1,335), 유한회사(2,797), 합자회사(14), 합명회사(4) *유한회사수만 증가추세이고 나머지는 정체상태

第17條(農業人の經營革新 및 資金支援)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人이 지속적인 經營革新을 통하여 所得을 높일 수 있도록 農業經營의 相談·諮問, 敎育訓練 및 情報提供 등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農業經營體에게 그 事業計劃, 技術水準 및 經營能力 등을 고려하여 農業分野의 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① 제4조의 3(농림어업전문경영자교육과정의 설치·운영 등) ② 제25조(농림어업의 취업의 훈련지원 등)

또한 「고용정책기본법」 ③ 제20조(고용촉진훈련의 실시) 등의 條文의 취지와

④ 농정발전기획단이 제출한 「경영혁신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법제화방안」을

검토·반영하여 종합적으로 규정하였다.

이 條文은 두 가지를 骨子로 하고 있다. 첫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쟁력 강화의 主體로서 農業經營體(농업인 및 법인경영체·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가 자율적인 경영혁신을 할 수 있도록 경영상담(Consulting)과 농업인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지원방침을 천명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1항)16), 둘째, 農業經營體에 대한 종합자금제를 도입하였다.

[종합자금제 도입방안]

- 개요 :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발전단계에 맞추어 수요자 중심으로 적기에 객량을 종합지원한다.
 - 2002년까지 단계별로 도입 추진

※ 현행정책자금과 종합자금 지원방식 비교

구 분	현행사업별 지원	종합지원제도
지원 방식	개별사업별 분산지원	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른 종합지원
대상자 선정	시장·군수(농발심의회)	대출취급기관(금융기관)
자금 지원	연1회 일괄선정·지원	수시 선정·지원 사업평가 후 추가지원
사후 관리	채권관리 중심	경영·기술컨설팅 중심

* 일본의 종합금융제도

- ① 농업경영기반자금(Super-L자금) : 농업경영자 시설 자금
- ② 농업경영개선촉진자금(Super-S자금) : 인정농업자 운전자금

[농업인의 교육훈련의 내용]

1) 전문경영체에 대한 경영교육실시

농업법인경영체, 전업농육성대상자, 후계자 등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현장교육

16) 경영상담과 자문은 한국농업기술센터, 교육훈련은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업전문학교, 연구·정보제공은 KREI 및 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담당한다.

등 집중경영교육을 실시한다.

2) 일반농업인에 대한 기초 경영교육을 실시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98년부터 15시간이상 농업인 교육과정에 필수과목으로 반영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각 교육기관의 농업경영교육을 전담할 교육요원을 집중 교육하고 있다.

3) 농업인교육체계 개선

① 농업인교육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교육계획 수립하고

② 교육프로그램을 D/B화하여 제공하므로써 필요한 교육 선택 가능하게 한다.

제2항의 資金支援에 관하여 제2초안에서는 轉業(이농) 지원(1항)과 귀농지원(2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나 基本法 제17조 2항에서는 이러한 구별을 하지않고 있다.

또한 제 1·2 초안 제16조 2항에서는 資金支援에 관하여 표제도 「종합자금지원」이라고 하고 條文 내용에도 「자금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종합자금제도입」을 條文상 나타냈으나 基本法 제17조 2항에서는 「종합적」이라는 말을 삭제하였다.

第18條(農業關聯團體의 육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人의 權益을 보호하고 經濟活動을 촉진하기 위하여 生産者團體 및 農業人團體등 農業關聯團體의 設立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초안 제17조에서는 표제가 「농업회의소」로 되어 있었고, 會議所 설치에 反對意見이 있어서 이 案은 좌절되었다.

우리나라에서 1988. 10. 31 「전국농민단체협의회」가 창립되었으며, 2001. 2. 26에 확대개편대회가 열렸다. 현재 회원단체도 22개이고 회장은 김남용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이다. 전국의 농림부 인·허가 비영리법인은 총 159개이다.¹⁷⁾

제2초안 제17조(농업회의소)의 취지는 다음과 같았다.

17) 농림부, 농림부 인·허가 비영리법인 현황. 2000. 10. 466 p.

1) 농업회의소 지원근거 마련 필요

- ① 농업인 단체를 건전하게 육성하여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 ②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정부정책의 대응성 (responsiveness) · 일관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한다.

2) 시행령에 규정할 필요는 없고 농업회의소 정관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 추후 농업회의소 설립동향을 감안하여 융통성있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각국의 농업회의소 설립 예]

구 분	일 본	프 랑 스	독 일
명 칭	전국농업회의소	Les Chamber d' Agriculture	Landwirtschafts- kammer
설립법적 근 거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1951)	농촌법(1935)	주법(州法)
기 능	농지관리+농정활동	지도+객관적 조언기능	지도기능
성 격	행정기관+이익단체	이익단체	농림부산하기관화
계통조직	시·정·촌→현→전국	꼬뮌→도→지역→전국	군→주→전국
재 원	국고보조+회비	토지세부담금+ 국고보조+서비스수수료	주정부보조금+서비스 수수료
회 장 의 임 기	3년	3년	3년

농업회의소의 설치문제도 앞으로의 연구과제이다.

第2節 農地의 이용 및 보전

第19條(農地에 관한 基本理念) 農地는 國民食糧의 안정적인 供給 및 環境保全을 위한 基盤이며 農業과 國家經濟의 調和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귀중한 資源으로서 소중히 이용·보전되어야 한다.

이 조문은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선언한 규정이다.¹⁸⁾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면서(헌법 121조), 농지의 소유 및 거래에 관한 사전적 규제는 완화하되, 농지취득 후의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이 條文 施行法은 농지법으로서 이것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농지면적현황]

1) '97말 농지면적은 192만ha로 최고 232만ha('68)대비 40만ha감소

- 최근 5년간('93~'97)농면적은 타용도 전환, 유휴지 증가 및 밭전환 등으로 매년 약 34천ha씩 감소(여의도의 110배)

(단위 : 천ha)

	'85	'90	'95	'96(A)	'97(B)	증감(B-A)
계	2,144	2,109	1,985	1,945	1,923	22(△1.1%)
논	1,325	1,345	1,206	1,176	1,163	△13
(벼재배면적)	(1,230)	(1,244)	(1,056)	(1,050)	(1,052)	(2)
밭	819	764	779	769	760	△9

2) 현재의 감소추세가 지속될 경우 쌀 자급유지에 필요한 적정면적 110만ha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 쌀자급을 위한 2004년 소요 농지목표

- 논지 180ha, 논 110만ha, 벼재배면적 92만ha

- ※ 생산량 3,070만석(단수 480kg)

第20條(農地의 所有와 이용)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憲法상 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農地의 所有등에 관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地가 農業과 國家經濟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農地의 利用增進에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18) ① 農地法制定白書, KREI, 1995. 12, 513 p. ② 獨逸의 農地制度와 農場相續制度. 海外農地資料 92-3, KREI, 1992. 10. 194 p. ③ Grossman & Brussaard, ed., Agrarian Land Law in the Western world, Essays about agrarian land policy and regulation in twelve countries of the western world, C.A.B International, UK, 1992, 279 p.

제1항에 관한 자세한 규정은 農地法 제2장 農地의 所有(6~12조)에 규정되어 있다.¹⁹⁾

제2항의 農地의 利用에 관해서는 農地法 제3장 農地의 利用(13~29조)에 상세한 규정이 있다.²⁰⁾

1)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지법상 수립하여야 하는 「농지이용계획」의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

2) 농지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는 규정이 없다.

[농지 이용계획]

1) 개요

① 경종농업, 시설농업, 과수, 축산, 농업보호, 농업유지, 다목적지구 등 7개 용도지구로 구분한다.

② 수립대상 : 148개기관(군지역과 농지면적 3천ha 이상 시·구)

'95. 10. 계획수립에 착수하여 '97. 6. 30 수립 완료

사용예산 : 시·군 505백만원, 농진공 30백만원

2) 수립결과 및 활용계획

[수립결과]

농지면적	경종농업지구	시설농업지구	과수지구
2,278	1,557	53	154
(100%)	(68.4)	(2.3)	(6.8)

19) 이에 관한 資料는

① 朴珍道, 농지개혁과 농촌사회의 변화, 韓國情神文化研究院, 1991, 102 p.

② 農地所有理念과 現況과 改善方案, 政策討論 시리즈 31 KREI, 1986. 8. 151 p.

③ 農地所有理念과 現況과 改善方案, 地方公聽會 및 座談會 討議內容, 政策討論 시리즈 32 및 KREI, 1986. 12. 158 p.

20) 農地賃貸借法에 관한 資料는

① 農地賃貸借法制 定立을 위한 調查研究, 研究報告 135 1986. 12. 208 p.

② 安秀洪, 慣行農地賃貸借法에 關한 研究, 釜山大 碩士論文, 1979. 2. 58 p.

③ 農地賃貸借法 管理法白書, KREI, 1987. 418 p.

④ Carter, G. B., Agricultural Tenancy and Arbitration Law in New South Wales, Blackstone Press Pty Ltd., Australia, 1990, 326 p.

축산지구	농업보호지구	농업유지지구	다목적지구
35 (1.5%)	69 (3.0)	323 (14.2)	87 (3.8)

농지이용계획의 면적은 도면을 구적한 것이므로 일부 비농지가 포함되어 있어 공식통계와 차이가 있다.

[활용계획]

- 1) 농어촌발전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계획 수립시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
 - 2) 농업관련 정책자금 등 지원시 심사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예) 경종농업지구에 축산단지 조성등 신청시 우선순위에서 제외

第21條(農地의 보전)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地가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農地의 보전에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수립·施行함에 있어서 農業生産基盤이 整備되어 있거나 集團化되어 있는 優良農地가 우선적으로 보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i) 농지의 보전에 관한 기본원칙을 선언적으로 규정하였다.
- ii) 농지법 제4장 농지의 보전 등(30-45조)에 규정되어 있다.²¹⁾

[농업진흥지역제도의 도입·운영] ²²⁾

- 1) 절대·상대농지제도를 폐지하고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1992), 타용도 전용을 엄격히 제한한다.
 농업용시설, 도로, 철도 등 SOC를 제외한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21) 이에 관련된 資料는

① 농지의 保全 및 利用合理化方案研究 農地保全方式 전환을 위한 接近, 研究報告 166, KREI 1988. 12. 198 p.

② 農地保全·利用行政實務教育教材, 農林水産部, 農漁村振興公社, 1990. 8. 111 p.

22) 日本의 農業振興地域制度, 農地保全 關係資料集(제2집) D-50-2, KREI, 1988, 93 p.

2) 농업진흥지역 해제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제된 면적이상을 농업진흥지역으로 대체 지정한다.

'97말 농업진흥지역 면적 : 1,055천ha(이중 농지 988천ha)

[연도별 농지전용실적]

	진흥지역 지정전				진형지역 지정후			
	'85	'90	'91	'92	'93	'95	'96	'97
진흥지역안 (절대농지)	482	5,727	5,444	4,962	2,063	2,831	2,734	2,802
진흥지역밖 (상대농지)	1,640	4,866	6,417	9,293	11,144	13,448	13,877	12,593
계	2,122	10,593	11,861	12,253	13,207	16,279	16,611	15,395

농지전용 면적은 매년 증가추세이나,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부터는 진흥지역밖 중심으로 전용됨.

이상 基本法 제3장 2절 農地의 이용 및 보전(19-21로, 3조문)에 관해서는 農發法에는 관련조문이 없었다.

農地의 擴大에 관해서는 「農地擴大開發促進法」(1975. 4. 11, 法律 2767호)이 있었으나 이것은 農漁村整備法(1994. 12. 22, 法律 4823호)에 의하여 폐지되었다.²³⁾

이러한 法律 이외에 또한 「오리개발촉진법」(1988. 12. 31, 法律 4060)이 있다.

第3節 農業生産構造의 高度化

第22條(農業生産基盤의 整備)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産業生産力이 확보될 수 있도록 農業生産基盤의 整備를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23) 農地의 擴大에 관한 資料는

① 山地開發 및 利用擴大方案, 研究報告 139. 1987. 5, KREI, 378 p.

② 山地의 合理的 開發方向, KREI, 1982. 11. 84 p.

③ 草地의 造成과 管理改善 政策協議會시리즈 16, KREI 1983. 12. 90 p.

山地(限界農地)에 관해서는 農林家育성과 山林振興에 관한 事例研究-韓國山林農業 實態와 林業·山林問題 研究報告 97. KREI, 1985, 12, 282 p.

1) 농업생산 기반정비에 관한 선언적 조항이다.

2)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법2조(정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 농어촌용수개발사업, 농업생산기반개발사업, 농지확대개발사업, 영농시설확충사업 등

② 제3장 농업생산기반정비(5조~21조)에서 세부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시책은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언적 조항만으로 족하고 별도 시행령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농발법 46조 「농촌용수계획」은 개별조항별로 농어촌정비법에 반영되었다. 農村의 構造改善에 관해서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이 있다.

또한 생산기반정비에 관해서는 「농어촌도로정비법」(1991. 12. 14)이 있다.

[생산기반사업 추진성과]

1) 그동안 꾸준한 투자의 실시로 기본적 영농기반은 완비단계에 있다.

농촌용수개발²⁴⁾ : 907ha(전체논면적대비 수리답율 75%)

경지정리 : 713천ha(경지정리율 61%)

2) '94년 이후 계속된 가뭄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평년작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였으며, '96, '97년 대풍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3) 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한 「농촌용수 10개년 계획」('95~2004)이 수립 되었다.

① '94년 남부지역의 극심한 가뭄을 계기로 중장기 가뭄대책 마련하였다.

② '95년~'97년 기간중 2조 6천억원을 투자하여 계획대로 추진중이다.

24) 21世紀 農漁村 地域 用水 需給 및 開發·保全 세미나, 農漁村振興公社, 1991, 246 p.

[주요 생산기반정비사업 현황]

구 분	목 표	'97까지	'98계획	'99이후
농촌용수 개발사업	96천ha 44,500억원	13천ha 8,422억원	6천ha 4,111억원	77천ha 31,967억원 *2004년까지
지하수 개발사업	57천ha 3,920억원	37천ha 2,082억원	1천ha 80억원	19천ha 1,758억원 *2004년까지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70천ha 14,526억원	9천ha 1,355억원	1천ha 372억원	60천ha 12,799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7,208개소 46,771억원	6,244개소 9,145억원	562개소 2,967억원	10,402개소 34,659억원
간척농지 개발사업	208천ha	74천ha	1.5천ha	132.5천ha
대단위농업 종합개발 사업	21개소 266천ha 50,321억원	14지구 141천ha 24,680억원	7지구(계속) 125천ha 3,335억원	7지구 125천ha 22,306억원 *2004년까지
배수개선 사업	207천ha 27,700억원	81천ha 7,807억원	4천ha 1,645억원	122천ha 18,248억원 *2010년까지
밭기반 정비사업	110천ha 25,794억원	21.6천ha 4,305억원	8천ha 1,987억원	80.4천ha 19,502억원 *2004년까지
경지정리 사업	(일반경지정리) 800천ha (대구획경지 정리)200천ha	658천ha 41천ha	23천ha 14천ha	119천ha 145천ha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22,000km 28,600억원	3,508km 3,477억원	2,100km 2,130억원	16,392km 23,003억원 *2004년까지

第23條(農業經營規模의 적정화 및 農業經營資産의 流動化의 촉진)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의 生産性を 향상시키고 農業人의 所得이 안정될 수 있도록 農業經營規模의 적정화 및 農業經營資産의 流動化를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1) 영농규모확대 및 경영자산 유동화에 대한 선언적 조항이다.
 - 동 조항의 시행을 위하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공포)이 시행되고 있어 시행령에는 규정이 없다.
- 2) 농발법 9조의 「경영자산을 이전한 농업인 등의 지원」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서 반영되었다.
 - 규모화촉진 직접지불제를 '9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영농규모화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다.

[영농규모화 사업현황] 25)

1)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ha)

	계	'90~'97	'98계획	'99~2004
계	154,240 (47,114억원)	55,963 (22,498)	15,208 (3,598)	83,069 (21,017)
농지매매	63,228	39,675	4,480	19,073
임대차	87,620	15,321	10,464	61,835
교환·분합	3,392	967	264	2,161

2004년까지 5ha규모의 6만호, 3ha규모의 4만호의 쌀전업농을 육성한다.

2) 사업성과

- ① 쌀전업농 경영규모 확대('95~'97 : 20,703명)
 - 호당면적 : (지원전) 2.1ha → (지원후) 3.6ha (1.5ha 증가)
 - 3ha이상 농가 : (지원전) 21.1% → (지원후) 52.5%

25) ① 農業振興公社 經營 및 制度改善研究 研究報告書, 1983. 10. KREI, 299 p.
 ② 研究適正化事業業務指針, 賣買 510-40호 (1990. 11. 12 制定), 農漁村振興公社, 348 p.
 ③ 農家營農規模適正化事業 實施要領, 農林水産部 例規 151호(1990. 10. 29 制定) 115 p.
 ④ 農業構造 再編과 地域農業과 發展 方向-農業擔當主催의 育成을 中心으로 忠南大 地域開發研究所, 1993. 380 p.
 ⑤ 프랑스 SAFER의 組織과 機能, 外國 農地制度 資料集 4집, D-51-4, KREI, 1988. 68 p.
 ⑥ 構造改善局 關係資料, 日本農林省 構造改善局 總務課 1989. 411 p.

② 농업인의 청장년회 : 규모확대 농가 중 50세 미만이 80%

第24條(産業機械化 등의 촉진)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營農費用을 절감하고 農業의 生産性を 높일 수 있도록 農業機械·農業資材·農業施設의 研究·開發·普及과 그 活用을 위한 教育訓練 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이 條文은 농업기계화 및 시설현대화를 위한 총괄규정이다.

- 1) 농업기계화에 대해서는 개별법으로 「농업기계촉진법」이 있으므로 농발법 5조의 2항 및 3항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으로 이관하여 규정되었다.
- 2) 시설현대화에 대해서는 개별법이 없어 농업·농촌기본법에서 시설현대화와 유리온실관련규정을 함께 규정하려고 하였으나 농업용 고정식 온실과 같은 너무 세부적인 사항을 기본법(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 체계상으로도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상과 같이 제24조를 규정하였다.

제24조도 농발법 제5조 중 기본원칙에 관한 것도 기본법 제24조에 규정하고, 세칙적인 농발법 제5조 2·3항은 농업기계화촉진법으로 이관하였다. 그러므로 중장기적으로 시설현대화에 대한 개별법을 제정하거나,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농업구조현대화촉진법」(안)으로 확대 개편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발법 제5조의2 삭제 사유]

농업용 고정식 온실은 건축법 제5조의 의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농발법 규정이 없어도 농업용 고정식 온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고만으로 이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농발법 제5조의2는 기본법(안)에서 삭제하였다.

[농업기계화 기본방향] ('97~2001)

벼농사중심의 농업기계화를 밭농사·축산분야로 확대

- 1) 작목별로 전문경영체 중심으로 일관기계화 추진하고 있다.

① 벼농사는 2004년까지 건조작업을 포함한 저비용 대형기계화 일관체계를 확

립한다.

관리작업의 생력화와 산물 수확·건조의 일관기계화를 실시한다.

② 발작물의 작목별 기계화영농 종합 공정시스템 추진한다.

발작물의 기계화재배양식 표준화 및 관리기술을 개발 보급한다.

③ 축산은 축사의 현대화와 사양관리작업의 일관기계화를 추진한다.

축사의 환경제어 및 분뇨처리시설의 기계화를 추진한다.

2) 작목별, 경영체별 저비용의 기계화 표준모델 개발 보급으로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한다.

① 지역별 주요농기계의 적정공급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한다.

② 작목별로 경영체중심의 기계화 모델을 개발보급한다.

3) 농기계 지원체계를 이용을 증대 및 사후관리위주로 전환한다.

① 농기계부품의 규격표준화와 공용화를 추진한다.

② 농기계, 조작, 수리, 및 이용 능력을 제고한다.

4) 수립결과 및 활용계획기계 우선 개발 실용화한다.

노령자·부녀자에 맞는 경량화, 자동화된 농기계를 개발한다.

第25條(農業科學技術의 振興)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의 先進化·尖端化를 촉진할 수 있도록 尖端農業科學技術 및 實用農業技術의 研究·開發·普及 등 農業科學技術振興을 위한 綜合的인 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計劃의 수립·施行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이 條文은 농발법 제10조(농림수산과학기술진흥)을 옮겨서 규정한 것이다.

1) 농업과학기술진흥에 대한 선언적 규정이다.

개별법이 없으므로 원칙을 기본법에 규정하고 농업과학기술진흥계획 수립 및 그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한다.

2) 기본계획 포함사항(시행령에 규정)

① 농업과학기술연구개발 중장기목표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 ② 중점개발대상기술의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
- ③ 특정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농업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업과학기술진흥계획의 수립(영23조)

영 제23조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분야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목표를 설정하고, 민간 및 공공연구 개발의 활성화와 농업과학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각각 소관농업과학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와 그 보급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농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개발한 기술의 활용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3. 기타 농업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시행계획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농업기술개발사업 주요내용]

1) 현장애로기술사업

농업인의 피부에 와닿는 영농현장 중심의 기술을 개발보급함으로써 농림업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제고한다.

①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

- i) 기술개발수준이 첨단기술에 비하여 단기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기술
- ii) 지역농업인들이 원하고 있으며 비교적 저비용으로 해결이 가능한 기술
- iii) 기술개발시 농림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 시킬 수 있는 기술

② 농업인개발과제

- i) 농가소득증대와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기할 수 있는 실용기술
- ii) 농업인(단체)이 직접 참여하여 개발할 수 있는 실용기술
- iii) 저비용으로 단기간에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는 기술

2) 첨단기술개발사업

생명공학, 신소재, 전자정보 등 주변 첨단기술을 농림업에 응용하여 농림업의

첨단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한다.

① 첨단기술개발과제

- i) 기술개발 수준으로 보아 비교적 장기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과제
- ii) 개발보급시 농림업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
- iii) 저비용, 고효율 농업실현 기술
- iv) 산업화 및 실용화가 가능한 기술

② 기획연구과제

정부정책상 긴요한 농림분야 기술개발 과제

- 체계적인 연구기획에 바탕을 둔 과제지정을 공모한다. 방식에 의한 품목별 일관 기술을 개발한다.

3)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농림기술개발사업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기술로서

- i) 신규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 인정되는 기술
- ii)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실용성이 높은 기술
- iii) 하이테크기술, 수출산업화가 기대되는 기술, 수입대체 효과가 큰 기술, 에너지절감 기술 등

第26條(벤처 農業 등의 육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분야의 尖端科學技術 및 營農·經營技法의 開發을 獎勵하고 이를 普及하며, 農業과 農業關聯産業의 有機的인 連繫를 통하여 農業의 附加價値를 높이기 위하여 벤처産業 등을 지원·육성할 수 있다.

농업기본법·농발법에는 관련조문은 없다.

1) 벤처 농업육성에 대한 선언적 규정을 마련하였다.

최근 생산체제 등 경제활동의 중심이 대량생산을 목표로 하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에서 특정분야의 창조적·전문적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로 이전하고 있다.

중소기업분야에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벤처기업의 농업분야의 지원조항을 마련하였다.

2) 농업경영체 등 지원대상

그러나 기본법 施行令에 기술지도·자금지원 등 지원방법에 관하여 규정이

없고 농업에 관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 동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0호가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벤처농업 현황]

1) '97. 6 현재 농업관련자재산업중 벤처기업화가 가능한 업체수는 38개로 추정한다.(「농경과 원예」 선정)

- 설립년도 : '90년대 이후
- 평균매출액 : 약 26억원(최소 : 2천만원, 최대 : 130억원)
- 연간 R & D 규모 : 매출액의 17.3%

2) 주요 연구·활동 분야

- ① 기초과학 : 「농업용 토양, 수질분석 및 시비처방 소프트웨어」 등
- ② 생명공학 : 「미생물 및 무공해 농약», 「합성유전자」 등
- ③ 에너지 및 환경관리 : 「농업용 태양열 집중난방시스템」 등
- ④ 신소재 및 바이오 : 「바이오 원적외선을 이용한 농업용 세라믹」 등
- ⑤ 복합환경제어 및 프로그램 : 「양액자동공급장치」 등
- ⑥ 각종 자동화자재 및 로봇 : 「무인방제기», 「선별 포장 설비」 등

3) 벤처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농림기술개발사업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기술로서

- ① 신규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 인정되는 기술
- ②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실용성이 높은 기술
- ③ 하이테크기술, 수출산업화가 기대되는 기술, 수입대체 효과가 큰 기술, 에너지 절감기술 등

[미국의 벤처농업 지원현황]

1) 농업벤처연구 및 상업화 공사(AARC : Alternative Agricultural Research and Commercialization Corporation)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다.

- ① 농림산물, 축산부산물 등을 이용하여 식품·사료이외의 생산물을 제조하여 상업화하려는 농촌지역의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농촌 모험자본(Venture Capital Firm)인데 독립기관이었으나 '96 농업법에서 100% 정부소유로 전환하였다.

② 투자는 대응투자형식으로 개인과 공사 투자비율이 최대 1 : 1 이상이며 투자자금 회수는 6~8년 이내에 자산을 취득하거나 판매액에서 로얄티를 받는다.

2) 신규농가(Beginning Farmers) 지원 정책

- ① 시설자금 : 최대 지원규모 20만불
- ② 운전자금 : 최대 지원규모 20만불
- ③ 농지구입자금 : 최대 지원규모 25만불

第27條(知的財産權 등의 보호) ① 政府는 農業遺傳資源, 營農技術, 商標 등 有·無形의 農業關聯分野의 知的 權利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地域特化産業의 特성과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地域의 固有한 特性을 가진 農産物 및 그 加工品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1) 유전자원, 영농기술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선언적 조항 신설하였다.

국제협상동향도 지적인 권리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는 추세이다.

2)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등 관련법에서 규정하였으므로 시행령 제정 필요하지 않다.

[地理的 表示(Geographical Indication)제도 도입 필요성]

1) WTO/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상 정의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다른 특질이 근본적으로 지리적 원인에서 기인하는 경우 그 상품이 회원국의 영토 또는 회원국의 지역이나 지방에서 생산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

* TRIPs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

2) 배경

WTO 출범과 함께 지적(산업) 재산권이 하나인 지리적표시 보호를 위한 국제 규범을 강화하고 있다.

- ① 1996년부터 지리적표시 보호를 위한 TRIPs 협정을 부활하고
- ②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 인정받아 2000년까지 협정이행을 유예 받았으나, EU와의 쌍무협상에 따라 '98년 7월 1일부터 협정을 이행하고 있다.

3) 도입필요성

- ① TRIPs 규정상 자국의 지리적 표시상표를 보호받으려면, 먼저 국내적으로 보호제도를 마련하여 보호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국제기구에 등록시켜야 한다.
 - ②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상표법 및 관련법상 지리적 표시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국내외적으로 지리적 명칭을 도용한 상표가 난무하고 있다.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5호 및 제8조(地理的表示의 登錄) 참조

第28條(農業 및 農村地域의 情報化) ① 國家 및 地方自體團體는 農業 및 農村地域에 대한 情報化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 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效果的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農業 및 農村地域 關聯情報를 제공하는 者들에게 필요한 支援을 할 수 있다.

농발법 제10조의3(농림수산물경영정보의 제공)을 승계 규정하였다.²⁶⁾

- 1) 정보화를 통한 경영혁신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측면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선언적 규정 신설하였다(1항).
- 2) 정보화사업 추진기구로서 「한국농림수산물정보센터」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고 이에 대한 지원규정 신설(2항 및 3항)

[농업정보화의 필요성]

- 1) 소규모 영농구조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보화가 필수적이다.
 - 2)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생산·유통·소비 등 단계별 혁신이 가능하다.
- ① 정보화를 통해 생산비 및 유통비용절감으로 경영효율 증대가능

26) 農業 데이터 베이스 構築의 發展方向, 統計 데이터 베이스의 觀點에서, 統合農業 情報 시스템 6, 研究報告 148, KREI, 1988. 53 p.

- ② 인터넷 홈페이지개설 등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시장을 늘릴 수 있는 등 시장의 외면적 확대가 가능하다.
- ③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불필요한 유통단계를 축소하는 등 유통혁신이 가능하다.

[농림수산정보센터 현황]

1) 일반현황

- ① 설립목적 : 정보의 개발·연구 및 보급을 통하여 농업·농촌정보화 촉진 및 기반조성,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의 활력제고에 이바지
- ② 주요연혁
 - 1992. 2 :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설립(출연금 390백만원)
 - *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농·수·축협 등 10개 농업관련단체가 출연
 - 1994. 10 : 「농림수산정보(AFFIS)」대농업인 정보 서비스 개시
 - 1996. 11 :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http://www.affis.or.kr>)
- ③ 조직 및 인원 : 1본부 1부. 1원 7과(1개 부설기관), 정원 50명
- ④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92	'93	'94	'95	'96	'97	'98
사업비	2,399	3,914	4,197	4,518	5,482	4,793	4,028

2) 주요업무

- ① 농림수산종합정보망 구축 운영 및 농림수산정보 개발·보급
- ② 농업용 S/W 개발·보급·관리
- ③ 농업생산·경영·유통지원 컨설팅사업
- ④ 농업경영인 등에 대한 농정정보화교육 사업

[추진 실적]

사업명	실적	내용
1) 종합정보망운영 - 통신망연결 - IP접속 - 가입회원수	29회선 112기관 47,703명	농림부, 농유공 등 기관단체간 통신망구축 농업관련 정보제공기관확보 AFFIS DB/통신서비스 이용 농업인
2) 국내외 DB개발	118종	정책/유통/기술 등 농업관련 DB개발
3) S/W 개발 - 개발 - 보급	16종 6,895건	낙농·양돈·채소 등 농업경영 S/W 개발 PC통신 및 CD-ROM 등을 통합 보급
4) 정보통신교육 - 정보화교육 - 경영교육 - 특별교육	7,924명 4,959명 2,378명 587명	농업인과 농고교사, 공무원 등 정보화교육 영농법인 등 농업경영체 전문교육 농적모니터요원 등 특별과정 교육
5) 순회교육	6,004명	작목반, 지방농업교육기관 등 순회교육

第29條(農業技術開發事業의 추진) ① 政府는 實用農業技術, 農業關聯 生産技術 등을 신속하게 開發·普及하기 위하여 農業開發 研究機關 또는 團體 등으로 하여금 農業技術 開發研究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技術開發研究課題를 수행하는 農業關聯 研究機關 또는 團體 등에게 이에 필요한 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

- 1) 농발법 10조의 2 「농림수산특정연구사업의 실시」를 승계규정
동 조항은 현장애로기술개발의 시행 및 지원근거에 대한 규정이므로 농업·
농촌기본법에도 그대로 규정하였다(개별법 없음).
- 2) 시행령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대상자와의 계약(약정체결)
 - 출연금 지급내용 등

농업기술개발사업

영 제24조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술개발사업을 다음 각호의 분야별로 나누어 추진할 수 있다.

1.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 : 농업생산·유통 및 가공과정 등에 직접 이용되는 실용 기술 연구
 2. 첨단기술개발사업 : 환경공학·신소재개발기술 및 자동조작기술 등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농업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연구
 3. 기타 벤처형 중소기업지원기술개발 등 농업과 농업관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 ② 농림부장관은 관계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술개발사업의 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 등 자금을 지원받은 농업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농업기술개발기술 추진현황]

1) 연차별 증장기 투자계획 : 4,650억원

	'94	'95	'96	'97	'98	'99 이후	계
계	150	613	550	510	434.5 (385.0)	2,392.5 (2,100.4)	4,650 (4,150)
첨 단	-	313	300	260	255.8 (227.0)	1,871.2 (1,631.4)	3,000 (2,678)
현 장	150	300	250	250	178.7 (158.0)	521.3 (469.0)	1,650 (1,472)

주) '94~'97까지는 수산분야를 포함한 농림수산기술개발 사업비이다.

- ① '98년부터 수산분야 기술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여 추진
- ② ()는 농림분야 기술개발 사업비임

2) 그간의 추진현황

① '96~'97말까지 총 1,060과제 선정 지원

- 첨단기술개발 : 414과제
 - ┌ 기획연구과제 : 11과제
 - └ 첨단기술개발과제 : 403과제
- 첨단애로기술개발 : 646과제
 - ┌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 : 516과제
 - └ 농업인개발과제 : 130과제

② '95~'97년까지 완료된 294과제에 대해서는 실용화·산업화를 적극 추진

	'95완료	'96완료	'97완료	계
계	17	93	184	294
○산업체 기술이전	2	22	22	46
○산업체 기술이전 추진	7	27	75	109
○현장적용 및 정책자료 활용	8	44	87	139

* 특허출원 : 60과제(136건)

3) 기업화 사례

- ① 온라인 컴퓨터 건조제어기 개발(안동대 박세현)
- ② 축산분뇨 및 액비처리를 위한 연속시스템 개발(우진 강석진)
- ③ 고추공동집하 및 자동화 처리시설 개발(상주산업대 김재열)
- ④ 식이버섯 자실체 및 균사체를 이용한 가공제품 개발(포천 종균배양소 정덕균)

第4章 農産物の需給安定 및 流通改善

第30條 (農産物の需給 및 價格의 安定) ① 政府는 農産物の 원활한 需給과 價格의 安定을 위하여 農業觀測, 生産調整, 收買備蓄 및 生産者團體의 自助金造成 등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할 수 있다.

② 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효율적으로 施行하기 위하여 農業經營體, 生産者團體 또는 農産物流通業을 영위하는 者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條文은 농발법 제12조(농업관측과 생산조정), 제13조(자조금의 적립지원)을 옮겨서 규정한 것이다.

1)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대하여 政府의 의무를 부여하는 선언적·방침적 규정이다.

-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농안법”²⁷⁾에서 규정하고 있다.

농안법은 2000. 1. 28. 法律 제 6223호로 전문 改正되었다.

2) 농산물의 생산 및 출하조정에 관한 사항은 농안법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4조(주요 생산지의 지정 등), 5조(농업관측), 6조(계약 생산), 7조(自助金의 積立 지원), 8조(가격에서), 9조(과잉생산시의 생산자보호), 10조(유통협약 및 流通調節命令), 13조(備蓄事業 등), 15조(農産物의 輸入 推薦 등), 16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를 새로운 농안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① 다만, 농업관측시행에 관한 규정과 이에 따른 생산조정규정은 없으므로 농업·농촌기본법에 규정하였다.

② 농업·농촌기본법에는 포괄규정인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만을 규정하고 “농업관측 및 생산조정을 농안법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필요하여 2000년 농안법 개정에 농업관측을 제5조에 규정하였다.

③ 시행규칙이 필요하다(농업관측단체는 농안법 제5조2항 농업관측 위원회(농안법시행규칙 5조) 등).

27) ① 전환기 양정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전환기, 양정개선을 위한 토론회결과보고서, D58, 1991. 5. KREI, 82 p.

②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방향, D87, 1993. 12, KREI, 185 p.

③ 각국의 농산물 거래법, 법제자료 55집, 법제처, 1972, 291 p.

④ 戰略的 農産物의 選擇과 生産調整方案研究, 研究報告 168, 1988. 12, 96 p.

基本法 제30조에 관련된 법률은 양곡관리법, 농산물유통공사법, 양곡증권관리기금법 등이 있다.

[유통협약/유통조절명령제(농안법 10조) 도입]

1) 개념 : 농산물유통을 통제, 조절함으로써 가격을 안정시켜 농민들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 유통협약(Marketing Agreement) : 농민, 유통업자, 정부간의 자발적 협정이다.
- 유통명령(Marketing Order) : 농민, 유통업자가 법적으로 구속되는 정부의 명령

2) 연혁(미국에서의 도입배경)

① 1930년대 농산물 산지가격 폭락에 대응하여, 농민들이 협동조합운동 전개

- 유통협약 → 자발적인 유통규제 및 생산규제, 품질기준 설정 → 비참여자로 인한 무임승차자 문제로 실패

② 1937년 농업유통협정법(Agricultural Marketing Agreement Act)제정

- 법적 구속력을 가진 유통명령제 도입
- 유통명령제 적용 주요 품목 : 과일 및 채소류(품질차이 및 계절별 공급량 변동이 큰 품목)

- 1980년도 실시현황 : 산지가격 기준 520억불(총 농업수취액의 8%)

3) 유형

- 물량통제(Quantity Control)
- 품질통제(Quality Control)
- 수요촉진조항(Market Facilitating Provisions)

4) 도입검토

① 유통협약 : 법에 별도 규정 없어도 시행 가능하나, 농산물수급 및 가격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강조하는 의미에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다.

- '98년 5월 8일 양파에 대한 「농·소·상·정」 유통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② 유통명령 : 법에 그 시행요건, 절차, 효과 등을 상세히 규정해야 하므로 기본 법에는 근거만 두고, 상세한 규정을 농안법에 신설하였다.

5) 자조금 조성·운영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

6) 다른 법률에 자조금 제도에 대하여 규정된 규정이 없으며, 각 개별법에 모두 자

조금에 대한 규정을 설치하는 것도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농업·농촌기본법에 자조금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되,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7) “농안법”에 반영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 필요하다.

또한 「보조금의 豫算 및 管理에 관한 法律」이 있다.

8) 농안법 시행령 제8조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대상 농림수산물, 보조금의 지급 등

9) 시행규칙 제8조

자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1條 (農産物의 流通改善)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生産者團體를 중심으로 한 生産地流通의 活性化를 적극 도모하고, 農産物의 生産地와 消費地에 都賣市場, 共販場, 物流센터등 다양한 流通施設의 확충과 그 운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産物의 포장·規格化등 物流의 標準化¹⁾를 촉진하고 다양한 流通情報의 蒐集·제공 및 流通教育 등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이 條文은 농발법에도 없었다.

농산물 유통개선에 대한 종합적 방향을 규정하였다²⁸⁾.

구체적인 내용은 농안법에서 규정한다.

1) 「農産物의 포장·規格化」 등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일본에는 「農林物資의 規格化 및 品質表示의 適正化에 관한 法律」(農林物資規格法)이 1950. 5. 11.(법률 175호)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농림부의 Guideline으로 규격이 구속력 없는 권장사항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법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28) 地方主要都市 農水産物 流通現況分析-全國圈 農水産物流通改善基本計劃을 위한 豫備調査, 1982, KREI, 281 p.

[농산물 유통개혁방안]

- 1) 직거래제도화 등 유통경로를 다양화한다.
 - ① 다양한 형태의 농산물직거래를 활성화
 - ② 물류센타 조기확충으로 새로운 직거래망을 형성
 - ③ 소매단계의 유통마진 절감 및 소비자정책을 강화
- 2) 공영도매시장 개혁
 - ① 거래제도 및 관리·운영을 개선
 - ② 공정거래질서 정착 및 유사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
 - ③ 도매시장 고비용구조를 개선
- 3) 산지유통을 혁신하고 고품질·안전농산물을 공급
 - ① 생산자조직 중심의 산지 유통을 혁신
 - ② 산지유통시설을 거점으로 대량의 규격 농산물을 출하
 - ③ 고품질·안전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
- 4) 농산물 물류 및 정보체계를 개선
 - ① 효율적인 농산물 수송체계를 구축
 - ② 농산물 유통정보를 개선
- 5) 농산물 수급안전 지원체제를 확립
 - 생산자 조직 중심의 농산물 수급을 안정

제32條 (農産物의 品質管理등) ① 政府는 農産物의 商品性提高와 消費者確認을 위하여 原産地表示 및 品質管理등을 위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國民의 건강과 農業環境의 보호를 위하여 輸出入 農産物과 動植物에 대한 檢疫 및 衛生檢査등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농산물품질관리에 관해서는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1993. 6. 11 법률 4553)이 있었는데, 「농수산물품질관리법」(1999. 1. 21. 공포, 법률 5667호)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품질관련부문은 이 法에 흡수되고, 농산물 검사법은 폐지되었으며, 종래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

물가공산업육성법」(1993. 6. 11 공포, 법률 4553호)과 농산물의 검사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4장(19-28조)에 규정되고 있다. 法の 이름이 개칭되게 되었다.

基本法 제32조는 농산물 유통에 대한 포괄적 내용을 규정한 선언적 조항이다.

- 농산물 유통에 대하여는 “농안법”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 농산물 품질관리에 대하여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농산물품질향상 시책]

1) 안전성 조사

- ① '98 : 70개 품목 5천점에 대하여 농약잔류, 중금속 등 조사
- ② 대상품목 : 곡류(3), 채소류(47), 과일류(11), 기타(9)
 - * 축산물 : 위해요소 중점관리제(HACCP system)을 도입

2)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 ① 대상품목(총 428개)
 - 수입 175, 국산 148, 가공품 105
- ② 원산지표시 이행율 : ('94)62→('95)82→('97)91%

第33條 (農産物加工産業의 육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과 食品産業의 調和로운 발전과 農産物의 附加價値를 높이기 위하여 農産物加工食品 및 傳統食品의 研究開發, 加工施設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이 條文은 농발법 제15조(국내산 농림수산물의 가공지원)을 옮겨서 규정한 것이다.

이 조문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선언적·방침적 조항이다.

가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²⁹⁾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문에서는 포괄적인 내용만을 규정한다.

29) 靑果物加工産業의 現況과 發展方向, 研究報告 118, 1986. 10, KREI, 179 p.

[농산물가공산업육성지원]

1) 목 적

우리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제고에 의한 농가소득증대가 목적이다.

2) 지원실적 및 '98계획

구 분	'69~'97			'98계획	비 고
	지 정	취 소	운 영		
업체수(개소)	1,349	150	1,199	69	○ 지원조건 - 보조 30% 융자 50%
지원액(억원)	2,979	206	2,773	190	

3) 대상사 선정

사업희망자가 사업을 신청하면 유통공사와 농협중앙회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가공산업육성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선정한다.

4) 향후 개선대책

① 경영능력이 있는 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99년부터 보조지원을 중단하고 융자로 전환하였다.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시설에 대한 자동화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및 운영자금을 중점 지원한다.

② 가공업체 운영내실화 방안 마련

· '98.8.10까지 가공공장 경영실태를 조사하여 9월말까지 운영내실화 방안을 마련한다.

·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을 통한 경영기술지도를 강화한다.

③ 가공식품 판매활성화 적극 추진

· 농·수협 등 직판장, 물류센터, 직거래장터 등에 전담판매장을 설치한다.

· 가공식품 상설전시판매장을 활성화 및 우리 식품대 축제 행사를 실시한다.

· 정부지원업체의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으로 수출을 확대한다.

第5章 農産物の交易 및 國際協力

第34條 (對外通商 및 國際協力) ① 政府는 우리나라의 權利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綜合的인 農業通商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農業分野의 國際協力增進을 위하여 農業政策에 관한 情報 및 農業人力·技術의 交流, 農業關聯 國際機構活動에의 참여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政府는 海外依存度가 높은 農産物의 安定적 供給을 위하여 農業投資環境調査 등 海外農業開發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에 관하여 농업기본법·농발법에는 관련조문은 없고,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에 관련된 조문이 있다.

차기 Round 및 농업부문 기술·인력교류, 수출입동식물검역, 해외농업개발투자에 대한 규정이다.

WTO 이행특별법의 취지를 기본법에서 수용하였다. 특히, 식량안보 차원의 해외 농업개발투자에 정부지원이 가능함을 규정한 것이다.

['98 농업통상여건]

1) WTO, OECD에서는 지속적인 농업지지 축소, 추가 교역자유화를 논의

① '98. 3. OECD 농업각료회의의 '98. 5. WTO 각료회의를 통해 농업지지 축소, 추가 교역자유화 원칙을 재확인

② OECD 농업각료회의에서는 농업지지와 보호의 실질적이고도 점진적인 감축이라는 WTO 농업개혁 장기원칙을 확인하면서도 농업의 다기능성과 식량안보, 구조개선, 농촌개발의 중요성도 인정한다.

2) WTO에서는 '분석 및 정보교환작업'을 본격화함으로써 차기 협상과 한발짝 더 가까이 연계한다.

① 새롭고 다양한 관심사항들을 다루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국들의 조직적이고 전략적인 공세가 예상된다.

② 미국은 포괄적인 다자간 협상에는 소극적이거나 농산물분야 만큼은 수출국들과 적극 동조하여 시장개발확대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③ 고율관세의 삭감, 수출국영무역과 수입국영무역의 규제, 국내보조의 규제 등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3) APEC에서는 미국, 호주 등을 중심으로 농산물의 조기 자유화가 지난해에 이어 계속 거론될 것이나 동북아 4국의 심한 반대가 예상된다.
- 4) 한·미간 기존통상현안이 미해결된 상태에서 새로운 통상현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① 기존 통상현안 중에서 MMA 쌀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나 현 제도에서는 확실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가 어렵다.
 - ② '98년에는 쇠고기 소비의 감소로 쿼터량 수입이 어려울 경우 새로운 통상마찰이 예상된다.

[해외농업개발]

1) 지원방향

- ① 해외 의존도가 높은 사료곡물 등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민간의 해외농업개발 투자를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한다.
- ② 투자사업은 민간 주도로 추진하고, 정부는 투자환경조사 등 간접지원 위주로 실시한다.

2) '98년도에는 IMF지원체제하에서 국내 민간기업의 해외 투자의욕 축소에 따라 단기적인 해외 투자 환경이 악화된다.

민간기업의 해외 농업투자 수요를 파악하여 최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第35條 (農産物의 輸出振興)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産物의 輸出振興과 우리 食文化의 傳播등을 위하여 海外市場開拓, 貿易情報의 募集·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效果的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農業經營體, 生産者團體 및 農産物을 輸出하는 者 등에게 國際規範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條文은 농업기본법 제15조(수입조절과 수출진흥) 및 농발법 제16조(농림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옮겨 규정한 것이고, 관련된 법률은 농수산물유통공사법(1986. 12. 31 法律 3887호)과 WTO 이행특별법이다.

1) 國際規範이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규를 말한다.

우리농산물의 해외수요창출을 통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산물수출촉진과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생산자단지의 조성지원”은 WTO 협정상 수출보조로 논란소지가 있어 규정하지 않았다.

농수산물 수출진흥법은 폐지되었다.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 제정된 법률로써 수출관련 규제조항이 주요내용을 구성한다.

정부주도의 수출정책 추진은 WTO농업협정의 기본정신에도 위배된다.

[농산물수출촉진대책]

1) 수출동향 : ('90) 14.1 → ('95) 17.5 → ('97) 18.5억불

2) 수출촉진 대책방향

① 고품질 수출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한다.

- 전문생산단지 확대지정으로 우수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
- 20대 수출전략 농산물의 선정 및 전담팀을 구성(돼지고기, 김치, 백합, 밤, 인삼, 사과, 배 등 20개 품목)
-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품질개선과 기술개발, 지도강화

② 해외시장개척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국제박람회 참가(11회), 해외특별판촉행사를 개최(2회)
- 옥외전광판, 전문지광고 등을 통한 해외홍보를 강화
- 물류비 절감지원과 포장디자인 개발을 지원

③ 수출애로요인의 적극적인 해소와 지원체제를 강화한다.

- 농산물무역확대 대책팀 회의를 개최
- 수출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및 우수업체 인센티브제를 실시
- 주문정보제도, 팩스신문 실시 등 수요자 중심의 무역정보를 제공
- 수출애로상담실 운영 및 수출보험제도를 개선
- 「농수산물 무역진흥센터」 건립을 추진

第36條 (農産物の輸出管理) 政府는 農産物の 輸出増加로 인하여 國內의 農業發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國際規範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條文은 농업기본법 제15조(수입조절과 수출의 진흥), 농발법 제17조(수입자유화예시), 제18조(수입자유화에 따른 보완대책), 제19조(심의회의 설치)를 옮겨서 규정한 것이다.

1) 농산물수입관리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가능하나 선언적·방침적 조항으로 규정하였다.

- 관련법률 : WTO 이행특별법, 대외무역법 등

2) 현행 농발법에 규정된 수입자유화 예시, 수입자유화 보완대책 등은 WTO 협정 이행계획 및 보완대책추진으로 큰 의미가 없다.

- 농발법상 규정된 수입자유화 보완대책 심의회는 현재 개최되고 있지 않으며 농림부장관 훈령으로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기본법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농산물수입관리 대책]

1) 수입개방 현황

구 분		'95		'96		'97		2001		제 한
총 품목수	1,420	166 (당년)	1,344 (누계)	15	1,359	37	1,396	8	1,404	16
자유화율(%)		94.6		95.7		98.3		98.9		
주요품목		옥수수, 대두		포도, 사과주스		돼지고기, 오렌지		생우, 쇠고기		쌀

'97. 7. 1 돼지고기, 닭고기, 오렌지 등 37개 품목개방으로 쌀과 쇠고기, 생우를 제외한 전품목을 개방하였다.

2) 시장접근물량 현황 및 수입방식

UR농산물 협상 결과에 따라 64개품목(193개HS)에 시장접근물량을 설정하고 있다.

① 국영무역 : 쌀, 보리,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등 19개품목(83개 HS)

② 수입권공매 : 분유, 참기름, 대추 등 6개품목(16개HS)

③ 실수요자 배정 : 옥수수, 종우, 종돈, 전분류 등 39개품목('94개 HS)

3) 수입관리 대책

①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철저

· 수입시기 조절을 통한 수입영향 최소화(고추, 마늘, 양파 등)

· 수입방식을 여건변화에 따라 보완하여 수입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예) 국영무역 → 수입권공매 → 실수요자 배정

· 수입물량의 탄력적 운영 : 농업용원자재와 가공용원료는 수급안정을 위해 증량 운영

* '98증량 : 종돈, 종계, 옥수수, 대두, 맥주맥, 맥아, 참깨 등 20개품목

② 수입개방 영향 최소화

· 주요 품목에 대한 수입동향 수시점검 및 필요시 대응책 강구 → 산업피해구제제도와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등 탄력관세제도를 활용

· 동·식물검역을 강화하여 유해 병원체 및 식물 병해충 유입을 차단

第6章 農村地域開發 및 所得支援

第37條 (農村地域開發施策의 수립)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村住民의 삶의 질향상과 國土의 균형있는 開發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農村地域開發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開發施策을 수립하는 때에는 環境保수를 고려하여 開發과 보전이 調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條文은 定住生活圈開發³⁰⁾에 관한 農發법 제32조(농어촌정주생활권의 개발), 제33조(정주생활권 개발대상지역), 제34조(정주생활권개발계획의 수립), 제35조(개발계획의 내용), 제36조(사업의 시행), 제37조(정주생활권개발사업비의 지원 등), 제38조(정주생활권개발위원회), 제39조(기획기술지원단의 운영)을 농어촌정비법 제5장 농어촌 생활환경정비(29~42조)로 옮기고 그 내용을 한 條文으로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1) 현재 WTO/OECD 등 국제적인 농업에 대한 논의 동향의 중심은 지역개발(Rural Development) 이다.

이는 종래의 가격지지 등 전통적인 농업보호정책이 계속 축소됨에 따라 지역의 창의력 고취, 교통·통신 등 SOC차원의 투자, 농외소득원 확대와 같은 포괄적·지역적인 개발에 대한 투자수요는 오히려 증대되고 이를 통한 직·간접적인 농업·농촌에 대한 파급효과를 제고하려는 측면에서 강조한 것이다.

2) 특히 지역개발에 대해서는 개발을 통한 농촌지역의 쾌적성(amenities) 증대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외국의 정책도 개발부문으로 집중된다.

- 일본 : 중산간지역 지원대책
- EU : 농업·농촌의 구조조정을 위한 구조기금을 확충한다.

30) ① 2000年代를 向한 農村定住生活圈 開發基本構想(慶南固城事例研究), 1984. 7, KREI, 637 p.
②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촌사회정책의 방향정립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227, 1990. 12, KREI, 107 p.
③ 地方自治制와 地域農業開發, 심포지움資料, 1991. 6. 21, 韓國農業經濟學會, 127 p.
④ 村落 및 農家實態調查 結果, M27-2, 1991. 12, KREI, 172 p.
⑤ 唐津農村定住生活圈 開發計劃案 1983-1991, 1982. 12, KERI 全南 唐津郡, 81 p.
⑥ 臺灣과 韓國의 農村開發에 關한 比較研究, 農協大學 農協發展研究所, 1986, 76 p.
⑦ 農村醫療傳達體系의 問題點과 새로운 構想, 研究報告 83, 農村地域 綜合開發에 關한 研究 3, 1984. 12, KERI 207 p.

3)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농업·농촌기본법에서도 농촌지역 생활환경개선, 농촌지역 산업진흥, 복지향상·소득지원 등을 「농촌지역개발」로 총괄적으로 규정한다.

이에 대응하여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법령을 대폭 정비한다.

· 농발법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농어촌정비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4) 따라서 농발법 34조를 「농촌생활환경개선」보다 넓은 개념인 「농촌지역개발」로 하여 Rural Development에 관한 시책을 총괄적으로 규정하였다.

시책내용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규정 필요하다.

농발법의 정주권 개발조항(32~39조)는 농어촌정비법(29~42조)으로 이관하였다.

[농촌지역개발사업현황]

구 분		목 표	'97까지	'98계획	'99~2004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일 반 정 주 권 개 발	771면 30,338억원	219 13,134	60 2,082	492 15,122
	문 화 마 을 조 성	771개소 38,655억원	51 3,329	21 787	699 34,539
	마 을 하 수 도 설 치	771개소 3,108억원	51 200	17 68	703 2,840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5,000개소 8,500억원	1,464 2,530	400 680	3,136 5,290
	농촌휴양자원개발사업 (관광농원, 휴양단지민박마을)	1,176 3,055	601 1,355	59 169	516 1,531
농공단지조성사업 (부지조성비지원)	400개소 19,013억원	292 10,344	4 237	104 9,432	
한계농지정비사업	'96년부터 추진 (농어촌정비법제정)		현재 5지구 시범사업 추진중 * 지구당 46억원 수준 지원		

第38條 (農村地域産業의 振興 및 開發)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村住民의 所得增大와 農村經濟의 生活化를 위하여 産業團地造成¹⁾, 地域特産品生産團地의 육성²⁾, 農産物加工業³⁾을 비롯한 農業關聯産業의 육성등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都市民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都·農間의 交流擴大 및 農村

住民의 所得增大을 위하여 地域의 特色을 살린 絶色觀光 및 休養資源의 開發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③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2項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地域文化施設의 設置·운영과 地域의 文化行幸開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8조의 성립경위

1) 농발법 第4章 農外所得源의 開發促進(20-31조)에 주로 農工團地³¹⁾(22-27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들 條文은 2000. 1. 28. 農漁村整備法 第7章 農漁村休養資源開發 및 限界農地 등의 整備, 「第3節 農工團地의 開發」이라는 제목으로 農漁村整備法 제85조의 2~5에 옮겨지고, 農業·農村基本法 제38조 1항에는 「産業團地의 育成」이라는 用語로 다만 宣言的으로만 규정하게 되었다.

農工團地(産業團地造成) 농발법 22~27조 → 농어촌정비법 85조의 2~5조

2) 基本法 제38조 1항의 「地域特産品 生産團地의 육성」은 원래 농발법 제29조(農漁村特産品生産團地의 지정과 육성)의 조문이 있었는데, 농발법 條文이 農業·農村基本法으로 옮겨 오고, 農漁村整備法이 2000. 1. 28. 개정되는 과정에서 「特産團地의 지정과 육성」은 없어지고,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13조(特産品の 品質認證制度)에 규정되어 있다.

농어촌특산물생산단지 농발법 29조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13조

3) 基本法 제38조의 農産物加工業은 원래 농발법 제15조(國內産 農水産物의 加工支援)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法 제3~5조에 옮겨가고,

31) ① 農村工業과 農工地區開發의 效率의인 推進方案, 研究報告 133, KREI, 1986, 100 p.

② 農工地區開發의 효율적인 推進方案, 政策討議시리즈 30, KREI, 1986, 41 p.

③ 農漁村工業開發效果의 調查研究

1. 農工地區開發의 效率의 推進을 위한 政策課題, C88-1-1, KREI, 1988, 179 p.

2. 忠南公州郡長岐農工地區事例, C88-1-2, KREI, 1988, 116 p.

3. 全北南原郡東面 農工地區事例, C88-1-3, KREI, 1988, 65 p.

4. 全南咸平郡 鶴橋農工地區事例, C88-1-4, KREI, 1998, 104 p.

5. 慶南密陽郡府北農工地區事例, C88-1-6, KREI, 1988, 193 p.

④ 農工地區開發事業의 波及效果分析 및 事後評價研究(2次 年度)

1. 江原橫城郡 墨溪農工地區事例, 研究報告 178, KREI, 1988, 107 p.

2. 忠北鎭川郡新井農工地區事例, 研究報告 178, KREI, 1988, 85 p.

3. 慶南咸陽郡 吏隱農工地區事例, 研究報告 178, KREI, 1988, 194 p.

⑤ 農工技術, 特輯 定住生活圈開發, 農漁村振興公社, 1991. 4.

農工地區開發의 方向과 政策課題, 研究報告 82, KREI, 1984, 139 p.

基本法 제38조 1항에 다만 宣言的인 규정만 두게 되었다.

농산물가공업 농발법 15조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3~5조

4) 農漁村休養資源(Green Tourism)은 농발법에는 없었는데, 農漁村整備法 제7장 1절 農漁村休養資源開發(66~75조)에 규정되었다.

농어촌휴양단지 농어촌정비법 66~75조

5) 제38조는 지역개발의 관점에서 본다면 굳이 농외소득³²⁾, 농업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농촌의 지역개발 및 농업인의 영농다각화, 농업의 복합산업화 등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필요하다.

6) 이러한 의미에서 농공단지, 특산단지, 휴양단지, 산지가공공장 등을 농업인 소득증대에 관한 시책으로 보아 농어촌정비법에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정하고(농발법 제20~31조) 농업·농촌기본법에는 「선언적 조항」만을 규정하였다.

[Green Tourism]

1) 개요

- 국민소득증대, 관광 Pattern 변화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광형태에 대한 수요 증대가 예상된다.

농촌주민의 주도로 농촌의 쾌적성을 상품화하여 자연환경의 훼손없이 농촌지역에서의 체제·체험을 통하여 도시민들과의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지역 진흥전략이 필요하다.

2) 日本의 경우 '95년 「농산어촌체제형 여가활동촉진을 위한 기반정비 촉진법」(Green Tourism법)을 제정, 지원을 실시한다.

① 우리나라는 '84년부터 「관광농원개발사업」을 실시('97 현재 467개소 지정, 382개소 운영)하고 있으나 숙박·식당시설 위주로 운영되어 지역특색을 살리는데 미흡하다.

② 앞으로 지역특색을 살린 새로운 농촌관광형태(문화체험, 농촌체험 등) 개발에 대응하여 개념규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한다.

외국의 사례

① 유럽 : 2~300년전부터 市民農園이 발생하여 도시민의 자연회귀 욕구, 농민의

32) 農外所得源 開發事業의 評價와 發展方向, KREI, 1991, 185 p.

소득증대를 연결시키는 사업으로 시작

- 영국 : 캠핑장, 공동판매장 등 지역불거리 개발
- 프랑스 : 레크레이션과 민박 위주의 장기체류형 숙박사업 연계

- ② 미국 : 신대륙 개척당시의 농업방식을 재현한 농촌공원 개발과 농촌관광을 연계(SOC투자, 보조, 세금우대 등)
- ③ 일본 : 지역간 자매결연, 지역박물관, 역사관, 고향체험농원 등을 설치

第39條 (農業人에 대한 所得支援) 政府는 農業人の 所得 및 經營안정을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지원을 한다.

1. 零細農 등을 위한 지원
2. 土壤 등 環境의 보전을 위한 지원
3. 農業災害에 대한 지원
4. 農業經營의 規模化 등 構造調整을 위한 지원
5. 條件不利地域에 대한 지원
6. 기타 農業生産과 직접 連繫되지 아니하는 所得補助

이 條文은 주로 WTO 이행특별법 제11조(국내지원정책의 시행)과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및 同施行規程과 관련된다.

- 1) WTO협정상 허용된 직접지불제도 실시에 대한 농업·농촌 기본법상의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

다만, WTO이행특별법보다 직접지불제도를 확대 규정하여 정책도입여지를 확장하였다.

- 2) WTO이행특별법상 직불제와 농업·농촌기본법과 직접지불제도의 비교
생산통제를 목적으로 한 직접지불(WTO협정이행특별법 11조 2항 1호)은 삭제하였다.

즉, EU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휴경보상 등에 대한 지원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하지 않고, WTO협정상에도 Blue Box(감축대상이나 감축의무를 면제)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① 영세농등을 위한 보조(이행특별법 11조2항2호) → 영세농, 고령농 등을 위한 지원(기본법 1호)

- ② 토양 등 환경보전을 위한 유기농, 경종농에 대한 보조(특별법 3호) → 토양 등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기본법 2호)
- ③ 농림수산업 재해에 대한 지원(특별법 4호) →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기본법 3호)
- ④ (신설) 농업경영의 규모화, 영농은퇴에 대한 지원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직접지불(기본법 4호)
- ⑤ (신설)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기본법 5호)
현재 간이경지정리, 한계농지정리 등 시행중
- ⑥ 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특별법 5호) → 기타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 보조(기본법 6호)

이상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 직불항목은 WTO이행특별법을 근거로 '97 제정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WTO이행특별법 시행령)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직접지불제도 개요]

1) 직접지불제도(Direct payment)의 개념

- ① 농업에 대한 보조방식의 한 방법으로 “정부가 시장기능을 통하지 않고 재정에 의하여 농가에 직접 소득보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가격지지 생산기반지원 등과 같이 지원의 효과가 간접적·집단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집단의 농가개개인을 대상으로 직접 소득보조를 하는 정책이다.

- 유사용어 : i) 직접소득지지(direct income support)
 ii) 직접소득지불(direct income payment)
 iii) 디커플링(decoupling)
 iv)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소득지지(decoupled income support)

2) UR 협정상의 허용된 직접지불제

- ① 생산중립적, 소득보조, 재해보상 지원, 이탈농지원, 조건불리지역지원, 환경농업지원 등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직접지불(Green Box조항, 부속서 2의 5~13항)
- ② 예외적으로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Blue Box)과 개도국의 농업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UR 농업협정문에 따른 국내 보조의 분류]

보조형태	분류	관련규정	관 련 정 책	비 고
광의의 직접지불	허용대상 (협정의 직접지불)	부속서2의 5~13항 (green box)	· 생산중립적 소득보조 · 재해보상지원 · 이탈농 지원 · 조건불리지역 지원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직접지불 (관련 조건을 만족시켜야 함) EU의 보상지불제 농업 및 농촌개발 투자
		6조1항 (blue box)	· 환경농업 지원 등 · 생산제한하 직접지불 · 개도국의 농업투자	
	감축대상	6조1항 (amber box)		최소허용보조(deminimis)
간접보조	감축대상 허용대상	6조1항부속서 2의 2~3항		비율 내에서의 보조는 허용(협정문 6조4항)

[UR 협정과 우리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지불제 비교]

UR 협정내용	우리의 WTO 이행법(11조)
1. 생산제한을 전제로한 직접지불	생산통제를 목적으로 한 직접지불(1호)
2. 생산중립적 소득보조	
3. 소득보호 또는 소득안정계획에 대한 지원	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5호)
4. 자연재해 구호지원	농림수산업재해에 대한 지원(4호)
5. 탈농지원	
6. 휴경지원	
7. 구조조정 투자지원	
8. 환경보전 지원	토양 등 환경보전을 위한 유기농, 경종 농에 대한 보조(3호)
9. 낙후지역원조	
10. 기타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영세농 등을 위한 보조(2호)

第40條 (農業災害에 대한 施策) 政府는 自然災害로부터 안정적인 農業經營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農産物生産을 위하여 旱害·水害·風害·冷害 등 産業災害에 대한 豫防·應急對策·復舊와 農業災害保險, 共濟制度 등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농업재해대책에 대하여 정부가 시책을 마련토록 의무를 부여하는 선언적·방침적 규정이다.

관련되는 法律은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작물재해보험법³³⁾(2001. 1. 22., 法制6386호)이다. 이 3法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는 원래 風水害對策法(1967. 2. 28. 法律 1894호)이 있었고, 農漁業災害對策法(1990. 8. 1. 法制4250호)(公法)이 있는데, 前者는 自然災害對策法(1995. 12. 6. 法律制4993호)로 代替되게 되었고(이것이 가장 자세하다 — 72조문, 同施行令이 64조문)(公法), 이것에 추가하여 2001. 1. 22. 「농작물재해보험법」(私法)이 제정되었다.

[농업재해대책]

1) 우리나라의 주요 농업재해 발생상황

① 풍수해 : 주로 농작물 생육시기인 5~10월 사이에 발생하며 피해면적은 매년 감수추세이나 아직도 연평균 5~6만ha정도 발생

피해면적 : ('86~'90)176 → ('91~'97)54천ha/년(△69%)

② 한 해 : 5~6월에는 논(모내기철), 7~8월에는 밭(고추, 참깨 생육시기)에서 주로 발생

연평균 피해면적(최근 10년간) : 17천ha

최근 10년간 한해 발생면적 : ('92)18, ('94)140, ('95)9, ('97)3천ha

③ 우 박 : 주로 초여름(5~6월)과 초가을(9~10월)에 국지적으로 발생

연평균 피해면적(최근 10년간)10천ha

④ 냉 해 : 7~8월에 찬 성질을 가진 오호츠크해기단이 세력을 남으로 확장함에 따라 저온형상이 나타나 농작물 피해 발생

최근 10년사이 '88년(12천ha)과 '93년(234천ha) 2차례 피해발생

최근 10년동안 풍수해, 한해, 우박, 냉해 등 농업재해가 연평균 117천ha 발생

33) 農業災害保險制度樹立에 關한 公聽會, 政策討議시리즈 37, 1988. 12, KREI, 101 p.; 농림법률 해설, 농림부, 2000. 12, 62면 참조.

2) 농업재해대책 추진체계

자연재해관련법령 및 운용부칙 : 농어업재해대책법(농림부), 자연재해대책법(내무부)

· 복구지원대상 농업재해(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우박, 서리, 조해, 설해, 동해, 병충해로 인한 농업용시설, 농경지, 농작물 및 가축의 피해

복구지원대상 규모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특별시의 구 : 20억원이상 광역시의 구 : 11억원이상 기타 시·군 : 7억원이상	○ 수해, 한해, 냉해 등 : 시·군당 50ha이상 ○ 서리, 우박, 설해 등 : 시·군당 30ha이상 ○ 농업시설·농경지·가축 : 시군당 5억원 이상 * 중앙지원대상 피해 시·군과 연결한 시·군은 규모 미만이라도 동일하게 지원

보조 및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의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규정」을 준용한다.

- ① 피해농가 : 이재민구호, 생계지원, 중고생수업료면제, 영농자금상환 연기 및 이자감면(과 과거의) 농조비 감면 등
- ② 농업시설복구 : 농경지, 비닐하우스, 축사, 잠실, 인삼 재배시설 등
- ③ 공공시설복구 : 양·배수장, 용·배수로, 저수지 등 수리 시설

第41條 (農地轉用負擔金) ① 農林部長官은 農村등의 構造改善事業에 대한 投資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農地法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造成費를 納入하여야 하는 者에 대하여 轉用負擔金을 賦課·徵收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轉用負擔金의 金額은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해당 農地의 個別公示地價(해당 農地의 個別公示地價가 없는 경우에는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示地價를 基準으로 하여 算定한 金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賦課基準을 적용하여 계산한 金額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農地의 個別公示地價의 수준, 轉用に 따른 이익의 발생 정도등을 참작하여 差等賦課할 수 있다.

③ 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轉用負擔金을 納入하여야 하는 者가 納入 期限내

에 이를 納入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農地轉用的 許可·協議·同意 또는 승인을 取消할 수 있다. 이 경우 農林部長官은 農地轉用的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때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農地法 第4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用途變更承認을 얻어야 하는 者중 轉用負擔金の 賦課가 減免되는 施設의 敷地로 轉用된 土地를 轉用負擔金이 減免되지 아니하거나 減免比率이 보다 낮은 다른 施設의 敷地로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轉用負擔金を 납부하여야 한다.

⑤ 第1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하는 轉用負擔金중 第6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를 제외한 금액은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에 納入하여야 한다.

⑥ 農林部長官은 農地法 第53條 또는 農業基盤公社 및 農地管理基金法 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 權限의 위임 또는 委託을 받은 者에게 轉用負擔金の 賦課·徵收와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지급할 수 있다.

⑦ 第1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轉用負擔金の 賦課·徵收 및 過誤納金の 반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⑧ 第1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위하여 轉用負擔金を 納入하여야 하는 者가 納入期限내에 이를 納入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國稅滯納處分 또는 地方稅滯納處分の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이 條文은 원래 농발법 제6장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위한 투자재원 등(45조의 2 및 46조, 1996년 당시 2조문) 제45조의 2(轉用負擔金)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1997년 11월 農業·農村基本計劃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檢討意見으로서 農地法으로 옮기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農村構造改善事業에 대한 投資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農業·農村基本法에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조문

施行令 제25~32조, 施行規則 제5~9조 참조

[농지전용부담금 감면범위의 확대]

농업투자재원확보에 차질없는 범위내에서 공공성이 강하거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 감면범위를 확대하였다.(영제25조)

- 사회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교육시설,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사립과학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주택 등

1. 농지전용부담금

1) 근거법률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45조의2)에 의거하다가 현재는 기본법 제 41조에 의거한다.

2) 도입목적

농지 전용에 따른 이익금을 환수하여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에 대응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징수한다.

- 시행일 : '92. 1. 1

3) 제도의 내용

① 부과기준 : 농지나 산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 공시지가의 20%를 전용부담금으로 징수한다.

② 부담금 활용 및 징수현황

- 부담금 수입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에 전입하여 경지정리사업·농기계구입지원사업 등에 사용한다.

- 징수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94	'95	'96	'97
농 지	2,441	2,521	3,150	3,735
산 지	879	772	586	579

2. 「농지전용부담금」 제도개선 방안

1) 존치 필요성

①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전용”에 따른 이익금을 환수하여 특별히 농업투자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액 산정시 「전용부담금」 납부액을 전액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므로 개발부담금과 중복 부과되는 것이 아니며,

* 개발이익 = 개발완료시점의 공시지가 - (개발사업개시시점의 공시지가 + 정상지가 상승분 + 개발비용)

② 농특세 폐지(년간 1조 5,000억)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농지전용부담금」을 폐지할 경우 매년 3,500억원 수준의 농어촌구조개선 투자재원이 감축되어 농촌

지원이 크게 위축되고, 농어촌구조개선에 대한 정부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져 농촌여론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 ③ 좁은 국토면적하에서 매년 농업의 용도로 전용되는 농지면적이 15~16천ha에 이르는 등 농경지 면적의 감소가 심각한 실정이므로 국민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적정농지 확보차원에서 대체농지 조성비 부과는 불가피하다.
- ④ 또한, 기본법 부처협의시 재경부, 예산청에서도 「농지전용부담금」 존치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조치계획

대체농지조성비와의 일원화동 「전용부담금」 제도개선방안은 농어촌 구조개선 투자재원 확보, 타부담금의 제도개선 방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되 중요산업시설, IMF체재 극복을 위한 기업의 부담경감, 외국인 투자 촉진분야 등에 대하여는 감면폭을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최대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농지현황(농지전용 면적 등)

(단위 : 천ha)

구 분	'90	'95	'96	'97	비 고
농 경 지	2,109	1,985	1,946	1,924	
- 논	1,345	1,206	1,176	1,163	
- 밭	764	779	769	761	
농지전용면적	11	16	17	15	

- 1. '90~'97년간 농지면적 년평균 증가율 : △1.3%
- 2. '90~'97년간 농지전용 면적 년평균 증가율 : 5.5%

3.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과의 비교

구 분	대체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목 적	· 농지전용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농지를 대체조성(개간, 간척)하여 식량자급 기반유지에 필요한 재원 마련	·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위한 투자 재원확보 · 농지전용에 따른 전용이익 확보
부과연혁	· 농지보전법('75. 12. 31) (폐지됨)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91. 11. 22)
부과근거	· 농지법 제40조 제1항	· 농업농촌기본법 41조
납입대상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등	· 대체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
부과금액	· 부과대상농지의 지목별 농지조성비 고시단가를 기준 - 고시단가(m ² 당) 최저 : 3,600원, 최고 : 11,840원 - 부과금액 : 부과면적(m ²) × 고시단가 · 농지조성비 고시단가는 농림부장관이 농지별로 결정, 고시(농지법 제40조 제4항)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 공시지가의 100분의 20
관 리	· 농지관리기금(농지조성계정)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최근징수현황	· '96 : 2,005억원 · '97 : 2,609억원	· '96 : 3,150억원 · '97 : 3,735억원

第7章 農業・農村發展計劃의 추진

- 第42條 (農業・農村發展計劃) ① 農林部長官은 農業의 발전과 農村地域의 균형있는 開發을 위하여 農業・農村發展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廣域市長 및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과 그 管轄地域의 特性을 고려하여 廣域市・道 農業・農村發展計劃(이하 “市・道計劃”이라 한다)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③ 市長・郡守 및 自治區의 區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市・道 計劃과 그 管轄地域의 特性을 고려하여 市・郡・區 農業・農村發展計劃(이하 “市・郡・區計劃”이라 한다)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發展計劃의 수립・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48조 1항은 농발법 제48조(농어촌발전 기본방침)를, 2항은 농발법 제49조(도농어촌발전계획)를, 3항은 농발법 제50조(시·군 농어촌발전계획)을 규정하였다.

달라진 것은 농발법 제48조 3항에서는 基本方針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내용을 열거하였으나 새로 제정되는 基本法 제42조 1항에는 細部的인 사항을 열거하지 않고 있다. 基本法 제42조는 基本計劃 → 市・道計劃 → 市・郡・區 計劃으로 區分

○ 농발법과 기본법의 비교

구 분	농 발 법	기 본 법	비 고
발전계획 수립주체	농림수산부 장관	농림부장관	
	도지사	광역시장, 도지사	광역지구나 자치구에 있는 농촌지역도 발전계획 수립 필요
	시장·군수	시장, 군수, 구청장	
발전계획 수립절차	도계획은 도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수립하고,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시·도계획, 시·군·구 계획 구분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 지방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승 33조)	
	시·군계획은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수립하고 도시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第43條 (農政審議會) ① 農業·農村의 發展에 관한 基本計劃, 市·道計劃 및 市·郡·區計劃 기타 農業·農村의 發展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農林部에 中央農政審議會를, 市·道에 市·道農政審議會를, 市·郡·自治區에 市·郡·區農政審議會를 각각 둔다.

② 각 農政審議會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이 條文은 농발법 제52조(농어촌발전심의회)의 내용에 해당된다.

농발법상 규정되어 있으나 운영이 부진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명칭을 바꾸어서 규정하였다.

근거법	명칭	비고
농발법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장 : 농림부장관)	'96서면심의 후 개최 실적이 없음
기본법	농정심의회	중앙농정심의회 시·도 농정심의회 시·군·구 농정심의회

농정심의회에 관하여 시행령 제34~41조에 자세한 규정이 있다.

第44條 (農業·農村發展計劃의 효율적 추진) ① 農林部長官은 基本計劃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豫算編成時 基本計劃에 포함된 事業費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農林部長官은 각 地方自治團體의 農業·農村發展計劃에 대하여 基本計劃과의 連繫性, 推進實績 및 成果 등을 評價하여 그 결과에 따라 豫算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 條文과 관련이 있는 것은 舊 農業基本法 제7조(재정 및 금융조치)이다.

- 1) 중장기 농업·농촌발전계획과 예산의 연계성을 규정하여 발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 2) 사업추진실적을 발전계획에 환류(feed back)시킴으로써 각종 농업·농촌정책 수립 시 반영토록하여 시행착오를 없애며,

3) 각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을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추진실적 등으로 평가하여 예산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지자체간 경쟁과 발전계획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이다.

[농업분야 차등지원]

1) 현황 및 문제점

- 시군간 재정력 격차 최고 15배(용인, 영양)
- 획일적인 국고보조사업 추진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추진과 지방농정의 자율성 확보가 어려움.

2) 차등지원 계획

- '99년에 시범사업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차등보조를 적용한다.
- 포괄보조형태의 실적가산금 사업지원 규모를 확대
- 인센티브사업에 대해 지방비 부담을 하향 조정(50% → 30%)

第45條 (農政에 관한 年次報告書) ① 政府는 매년 農業·農村動向과 農政施策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中央農政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國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市·道知事 및 市長·自治區의 區廳長은 매년 당해 地域의 農業·農村動向과 農政施策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해당 農政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해당 地方議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서에는 각종 農業施策 등에 대한 評價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條文은 農業基本法 제4조(농업시책에 관한 문서의 제출) 및 제5조(농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내용을 바꾸어서 규정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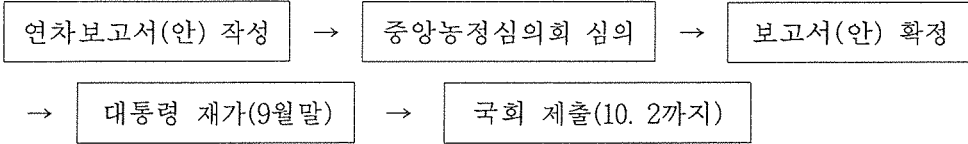
농업기본법상 연차보고서 작성의무를 승계 규정하였다.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당해지역에 대한 연차보고서 작성 및 지방의회 제출의무 신설

[연차보고서 작성]

○ 주요내용 : 매년 주요 농업동향 및 농정시책 총괄정리

○ 제출절차



第8章 補 則

第46條 (準農村地域에 대한 지원) 第3條 第5號의 規定에 의한 農村외의 地域으로서 農地法에 의한 農業振興地域과 都市計画法에 의한 開發制限區域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農村으로 보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 농발법 제66조를 승계 규정한 것이다.
- 2) 농촌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도 농촌지역에 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원근거 규정을 존치하였다.
농산물가공·유통사업, 인력육성사업, 농업인복지에 관한 사업 등을 시행할 경우 지원이 필요하다.
- 3) 施行令 제42조(준농촌지역에 대한 지원)
준 농촌지역에 대하여 지원해야할 사업 및 대상 등을 규정

第47條 (租稅의 減免)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農村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租稅特例制限法과 地方稅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를 減免할 수 있다.

이 條文은 農業基本法 제8조(조세감면조치) 및 농발법 제72조(조세의 감면)을 승계하여 규정하였다.

농업관련산업의 조세감면을 위한 총괄 규정이다.

[농업인관련 조세감면 현황]

1) 국세부문

① 소득세

- 농업인관련 양도소득비과세(농지의 교환·분합)
- 농업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2,000만원 이하 상호금융예탁금)
-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 면제 등
- ② 상속세
 - 영농상속인에 대한 추가 기초공제
- ③ 증여세
 - 자영농어업의 증여세 면제
- ④ 인지세
 - 농어업인 등의 작성하는 농업관련 증서 및 서류 등의 인지세 면제
- 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농업용지자재, 임업용지자재, 축산용지자재
- ⑥ 부가가치세 면제
 - 농업용석유류, 농업인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기자재
 - 농업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 용역
- ⑦ 특별소비세, 교통세
 -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제

2) 지방세 부문

- ① 어업인 지원을 위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
 - 자영농업인, 농가주택개량, 개간농지 등
- ② 취득세 비과세 : 상속으로 인한 농지취득 등
- ③ 영농업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
 - 농기계류, 축사, 고정식 온실 등
- ④ 등록세
 - 농업법인 설립등기의 등록세 면제
 - 협동조합으로부터 담보대책수 저당권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 ⑤ 자동차세
 - 농업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 ⑥ 사업소세
 -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 ⑦ 재산세
 - 농가주택에 대한 감면

第48條 (權限의 위임 등) ① 이 法에 의한 農林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 市長, 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農林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業基盤公社 및 農地管理基金法 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管理基金의 運用·관리업무를 委託받은 者로 하여금 第41條第1項 및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轉用負擔金의 徵收業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이 條文은 農發법 제74조(권한의 위임·위탁 등)을 승계하여 규정한 것이다.

- 1)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을 근거규정으로 마련
 - 대상사무 : 농지전용부담금 징수 등
- 2) 위임·위탁사무에 대한 시행령 제정 필요
 - 施行令 제43조(권한의 위임 등) 참조

III. 農業 · 農村基本法の 問題點

이상 농업·농촌기본법의 법자체의 성립경위와 다른 법률과의 관련을 서술하였다. 그 法律의 시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 舊法の 자세한 條文이 축소되었다.

농업·농촌기본법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농발법이라 약함) 중 중요조문이 농업·농촌기본법과 그 시행령으로 옮겨 오고, 일부는 농어촌정비법으로 옮겨졌는데, 농발법에서 기본법으로 옮긴 조문은 기본법인 성질상 자세히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경우 선언적인 조문으로 축소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는 기본법 제30조(農産物の 需給 및 價格의 安定)이다. 이 條文은 농발법 제12조(農業觀測과 生産調整)을 승계하여 규정한 것인데, 농발법 제12조는 1항에서 8항까지 農業觀測과 生産調整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였는데, 이 條文이 기본법 제30조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지극히 간단한 조문으로 축소되었다.

2. 농업·농촌기본법 條文의 施行法이 없는 것이 있다.

우리나라 농업·농촌기본법의 構成을 보면 농업발전에 관계되는 것은 모두 열거하여 규정했기 때문에 기본법에는 원칙만 규정하고 이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법률은 전혀 없는 것이 있다.

예컨대 기본법 제26조(벤처農業등의 육성)에 관련되는 法律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7. 8. 28. 法律 5381호)가 있고 동 施行令 제2조 3항 20호에 「농업·농촌기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을 「벤처기업의 범위」에 넣고 있기 때문에 농업벤처도 일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되는 벤처기업으로 볼 수 있기는 하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동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우선 中小企業이어야 하는데, 中小企業基本法 제3조에 관련되는 中小企業은 별표 4호에는 「종자 및 생산업(표준산업분류부호 01123)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로 되어 있고, 별표 6호에는 「농업 및 임업」(표

준산업분류부호 A)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로 되어 있다.

그러나 농업벤처의 경우에는 이러한 상시근로자수나 매출액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농업·농촌기본법 제26조와 제29조가 규정한 대로 벤처농업 내지는 농업기술개발사업이 육성·촉진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처럼 「농업벤처연구 및 상업화공사(AARC)와 같은 역할을 하는 法人 또는 團體 등이 새로 설립이 되어야 하고 「농업벤처육성법」과 같은 새로운 立法이 행하여져야 할 것이다.

3. 農業會議所의 문제

「농업·농촌기본법」의 草案에는 제1초안(1998. 6. 29.)과 제2초안(1998. 7. 14.)의 두 개가 있는데, 제2초안 제17조에는 농업회의소에 관한 규정이 있었다.

제17조 (농업회의소) ① 정부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농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 연구, 조사 등의 업무를 농업회의소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이유로 농업·농촌기본법에서는 삭제되고 현행 제18조의 내용으로 바뀌었다³⁴⁾.

1) 현재 존재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 설립 및 운영지원 등의 조항을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행정자치부, 전문가토론회 등).

2) 또한 농업회의소는 현재 의원입법으로 「농업회의소법」을 제정·추진 중에 있으므로 기본법에 규정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하다.

34) 김동희, 「농업·농촌기본법」 시안 검토(1998. 6. 29. 농림부 농업정책과장에 대한 의견서). "농업행정에 대한 농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상업농시대에 범농업법적 이익을 대변, 대표할 수 있는 농업회의소를 설립발전시키기 위하여 상공회의소법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토록 함."

따라서 1999. 2. 5.에 제정된 「농업·농촌기본법」을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이 나아갈 방향설정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제는 「농업회의소법」의 제정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4. 農地의 利用增進(농지법 제13~18조)

농지의 利用增進에 관한 農地法の 규정(13~18조)은 일본의 農業經營基盤強化促進法(1993. 6. 8. 전문 37조문)의 취지를 규정한 것인데, 그 일본법에 의하면 特別市·광역시·道(都道府縣) 단계에서 「基本方針」을 정하고(5조 1항), 市邑面(市町村) 단계에서는 「基本構想」을 정한다(6조 3항).

그리하여 이 促進法은 주로 두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農地保有合理化法人(市邑面·農協·民法 상의 공익법인의 3者)은 이농희망농가가 그 所有農地를 팔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信託을 받아 그 農家에 대하여 農地의 평가액의 7할 이내의 無利子貸付를 한다(農地信託 등 事業 - 4조 2항 2호)(農地의 流動化). 또는 農業會社法人에 대하여 合理化法人이 갖는 農地를 現物出資한다(農業會社法人出資育成事業 - 4조 2항 3호).

둘째 市邑面이 기본구상에 따라 市邑面에서 농업경영을 하려는 者는 農業經營改善計劃을 市邑面に 제출해서 認定을 받으면(12조)(認定農業人) 農地利用集積을 지원해 준다(13조). 즉 그 農業人의 주변에 있는 農地의 所有者에 대하여 利用權을 설정해 주도록 권장을 한다(13조 3항).

우리나라 農地法에서 규정하는 農地의 利用增進 등(13~18조)에 있어서는 첫째 「基本方針」은 都道府縣이 「基本構想」은 市町村이 세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구별없이 「農地利用計劃」이라고 하여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廳이 세운다(農地法 13조). 둘째, 日本에서는 農地所有合理化法 중에 農協과 民法 상의 公益法人의 3者인데, 市長·郡守·自治區廳長·農協 및 단체만이 農地利用增進事業者가 될 수 있고(農地法 14조, 시행령 18조), 일본에서 인정되는 「認定農業人」은 事業者에서는 배제되어 있다. 個人은 배제한 점에서 農地의 利用增進은 그만큼 非效率的으로 생각된다.

5. 一子相續制

농지의 一子相續制에 관해서는 농업·농촌기본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농지법 제21조 [農地所有의 細分化 방지]에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人 또는 農業法人의 農地所有가 細分化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農地가 1農業人 또는 1農業法人에게 일괄하여 相續·贈與 또는 讓渡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현재 한국농업법학회에서는 一子相續制를 연구하고 法案을 작성 중에 있다.

일본에서는 1975년에 租稅特別措置法이 제정되어 농업후계자에게 農地의 生前一括贈與를 한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신고하면 贈與稅의 納付를 유예해 주고 申告 후 20년간 그 農地에서 농사를 한 경우에는 유예세액을 면제하고, 상속의 경우에는 농지의 농업투자가액부분의 상속세만 납부하면 되는 相續稅의 納稅猶豫制度가 시행되고 있다.

6. 限界農地의 整備

이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農漁村整備法 제7장 제2절 76~85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일본의 特定農山村法(전문 23조문)의 취지를 따른 것인데, 우리나라 農業·農村基本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日本의 食料·農業·農村基本法 제35조에는 자세한 규정이 있다³⁵⁾.

일본의 특정농산촌법에 있어서는 市邑面(일본에서는 市町村)이 농림업등활성화 기반정비계획을 작성하면(14조) 이 계획에 부합하는 農業人의 團體가 이 事業을 하

35) (中山間地域 등의 振興) ① 「나라는 山間地 및 그 주변의 地域 기타의 地勢 등의 地理의 條件이 나쁘고, 農業의 生産條件이 不利한 地域(이하 「中山間地域 등」 이라 한다)에 있어서 신규의 작물의 導入, 地域特産物의 生産 및 판매 등을 통한 農業 기타의 産業의 振興에 의한 就業機會의 增大, 生活環境의 整備에 의한 定住의 촉진 기타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② 「나라는 中山間地域 등에 있어서는 適切한 농업생산활동이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도록 農業의 生産조건에 관한 不利를 補正하기 위한 지원을 행하는 것 등에 의하여 多面的機能의 확보를 특히 도모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겠다고 市邑面에 신청을 하면 市邑面은 그 計劃을 인정하고(5, 7조) 그 團體에게 국가 및 特別市·광역시·도가 融資를 도와주고(6조), 計劃에 필요한 농지의 所有權이전을 해주는 것이다(8 - 10조). 따라서 市邑面(하부 지자체)가 計劃을 하고 이에 따른 農業人의 團體가 필요한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計劃의 이니셔티브가 말단 이해관계자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農漁村整備法의 限界農地의 整備(76~85조)는 그렇지 않다. 그에 의하면 農林部長官이 基本方針을 수립하고(76조), 道知事가 限界農地整備地區를 지정하거나(79조 1항), 또는 道知事에게 限界農地整備地區의 지정을 신청하면(80조 1항) 市長·郡守·農業基盤會社 등이 整備事業을 시행하는 것이다(81조 1항). 그러므로 經營規模의 확대·農地의 集團化·利用權의 集積과는 무관하고 所有權이전과도 관계가 없다.

일본의 「食料·農業·農村基本法」 제21조에는 농업 경영의 규모의 확대, 제 23조에는 農地의 利用의 集積, 제24조에는 농지구획의 확대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 農業·農村基本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農漁村整備法에 규정되어 있는 限界農地의 整備(76-85조)에서는 이러한 취지가 전혀 들어 있지 않다.

7. 農産物의 規格化

농업·농촌기본법 제31조 2항은 농산물의 규격화를 촉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規格은 농림부의 Guideline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50. 5. 11. 법률 제 175호로 「농산물자규격법」(農産物資의 規格化 및 品質表示의 適正化에 관한 법률), 정문 26조문 4차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농산물의 規格化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농산물거래에 있어서 가격의 형성은 상품의 규격이 일치하지 않으면 서로 비교가능한 가격이 형성될 수 없고, 需給調整의 指標가 되는 표준적인 상품에 관하여 가격의 공표가 불가능하다. 또한 評價의 기준이 되는 品質 등에 관해서도 객관적인 表示가 없으므로 빈번히 거래당사자 사이에 힘이 센 편이 가격결정의 요인으

로 강하게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소규모의 생산자가 불리하게 되거나 또는 일반 소비자가 품질·量目 등이 보장되지 않은 상품의 구입이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므로 농산물의 유통이 적정하고 원활하게 거래되고 가격형성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또한 거래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농산물(가공품을 포함하여)의 규격이 통일적인 기준에 기하여 적정하게 결정되고 그 결과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유통이 행하여 지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농산물의 「규격」은 단순히 농산물 그 자체의 品質 뿐만 아니라 포장, 量目 등을 포함한 상품 전체의 조건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농산물의 규격 및 이에 바탕을 두는 검사에 관한 제도는 농산물의 유통합리화를 위한 기본적인 대책 중의 하나이다. 규격을 결정하는 主體는 거래당사자의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가급적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主體인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國家規格으로 되어야 하고 規格에 관한 제도는 공적인 性格이 강해야 한다.

농산물의 규격은 거래당사자에 대하여 평가의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유통과정에 있어서 농업인의 보호 및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하는 관점에서 중요하다³⁶⁾.

8. 土壤汚染防止

土壤汚染防止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法制가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農地汚染에 관해서 특별법은 없고 「土壤環境保全法」(1995.1.5., 法律 4906호 전문 32조문)과 동 施行令(1995.12.29. 대통령령 14848호 전문19조문)이 있고, 이에 의하여 土壤環境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일본에서는 「土壤汚染防止法」(正式명칭은 「農用地的 土壤의 汚染防止등에 관한 法律」(1970.12.25. 法律 139호, 전문 17조문))과 다음과 같은 부속법령이 있다.

① 農用地的 土壤의 汚染防止등에 관한 法律의 施行期日을 정하는 政令(1971.6.4.

36) 加藤 一郎, 農業法, 有斐閣, 1985, 405-6면; 關谷 俊作, 農林水産法, 行政, 1985, 226-229면

政令 175호). 上記 法律은 1971.6.5.부터 시행

② 農用地의 土壤의 汚染防止등에 관한 法律施行令(1971.6.24., 政令 204호)

③ 農用地土壤汚染對象地域의 指定등에 관한 節次를 정하는 總理府令(1971.7.1., 總理府令 43호)

④ 農用地土壤汚染對象計劃의 內容등을 정하는 命令(1971.7.1.)

⑤ 農用地土壤汚染對象地域의 指定要件에 관한 카도미움의 量의 檢定의 方法을 정하는 省令(1971.6.24.)

⑥ 農用地土壤汚染對象地域의 指定要件에 관한 銅의 量의 指定의 方法을 정하는 總理府令(1972.10.27)

⑦ 農用地土壤汚染對策地域의 指定要件에 관한 砒素의 量의 檢定의 方法을 정하는 總理府令(1975.4.8)

이상과 같은 차이점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은 農地의 汚染防止, 특히 카도미움, 銅, 砒素등 특정유해물질의 農地에 대한 규제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훨씬 엄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土壤環境保全法의 운영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황적인 편, 농업법, 삼지원, 1999, 605 p.

3. 女性農業人育成法案

1. 연구 개요

1. 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한 시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였다.

근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늘어나 농업분야에서도 농업주종사자 중 여성의 비율이 50%를 상회하고, 또 영농형태가 곡물생산위주에서 과일, 채소 등 원예작물생산이 급속도로 증가되면서 여성이 손쉽게 감당할 수 있는 농업분야가 늘어나 여성농업인의 비중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1999년의 농업·농촌기본법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여성농업인에 대한 육성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2. 그러나 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에 직접 연계되어 이 규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실현할 법률은 현재 없어서 입법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3. 근래에 (가칭)여성농업인 육성법안(이하 “법제실안”이라 함)이 성안된 것(국회법제실 작성)이 있고 이에 대하여 농림부의 검토의견(이하 “검토의견”이라 함)이 제시된 것이 있어 이 분야 입법에 길잡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4. 2001. 3. 9 일자의 제1차 보고에서는 법제실안과 농림부의 검토의견을 대상으로 본 학회의 검토의견과 법안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서술하였는데, 제2차 연구에서는 4월 3일자로 국회에 제출된 김영진 등의 법안 『여성농업인육성법안』을 대상으로 하고, 여기에 제1차 보고에 대한 농림부 여성정책담

당관의 검토의견을 참작하여 본 학회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서술하였다. (대조표는 부록 참조)

II. 학회의 법안

(가칭)여성 농업인 육성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증대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전문인력화 및 복지향상을 지원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을 육성하여 농업 및 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이라 함은 여성으로서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업” 및 “농촌”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 및 농촌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라 함은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전문인력화 및 복지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라 함은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전문인력화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 및 농촌에 관한 기술·경영 방법과 능력 등을 개발·보급·교육하고,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의 증대 등에 관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여성농업인의 역할)

여성농업인은 농업 및 농촌의 한 주체로서 스스로의 지위향상, 전문인력화 및 복지향상에 부단히 노력하여 남성농업인과 더불어 농업 및 농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 ① 농림부장관은 여성농업인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방안
 2.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방안
 3.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에 관한 방안
 4. 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의 확보방안
- ③ 농림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의 협조)

- ① 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 기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농정심의회에 여성농업인을 10분의 3 이상 참여시키는 방안
 2. 농촌의 각종 조직활동에 여성농업인을 10분의 3이상 참여시키는 방안

3. 농촌가정 및 농촌사회의 민주화와 양성평등화를 유도하는 방안
 4. 기타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에 관한 방안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잠정적인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여성농업인의 특성에 맞는 농업기술·농업경영 방법과 능력·농업기계와 장비 등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관한 교육·지원을 하는 방안
2. 여성농업인 단체의 조직 및 육성의 지원방안
3. 여성농업인의 농업 경영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4. 각종 여성농업인교육에 여성농업인을 10분의 3이상 참여시키는 방안
5. 여성농업인후계자양성에 관한 사항
6. 기타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에 관한 사항

제10조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쾌적하고 편리한 삶을 위한 생활환경개선사업
2.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보호를 위한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기타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방안

제11조 (여성농업인육성자문회의)

- ①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여성농업인육성자문회의 (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 ② 자문회의는 여성농업인단체의 대표와 농업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 ③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여성농업인관련 실태조사 등)

- ① 농림부장관은 여성농업인육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며, 이 실태조사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제13조 (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전문인력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업인관련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으로 본다.

여성농업인 육성법안

김영진 의원안과 학회의 대안의 대비표

2001. 05. 8

김영진 의원안	학회의 대안	비 고 (김의원안의 검토와 대안의 입법이유)
<p>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농업인의 역할 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1조 (목적) 이 법은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증대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전문인력화 및 복지향상을 지원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을 육성하여 농업 및 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1) 이 법의 목적을 농업·농촌기본법제 14조(여성농업인의 육성)와 연계시켜서 기본법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게 한다는 원칙 아래에서</p> <p>(2) 여성농업인의 역할증대를 입법배경으로 하고 (역할증대는 법의 목적이 아님)</p> <p>(3) 여성농업인의 ①지위향상 ②전문인력화 및 ③복지향상(기본법에는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만 있으나 이 법안에서는 복지향상을 추가하였음)을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하여 여성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농업 및 농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궁극의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려는 것임.</p>
<p>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여성업인의지위향상·전문인력화 및 복지증진을 통하여 건강한 농촌가정의 구현과 살기좋은 농업·농촌 사회를 이룩하며, 나아가 국가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p>		<p>(1) 이 법안의 내용은 기본이념을 선언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이념규정을 삭제하고</p> <p>(2) 그 대신 제2조의 취지를 위와 같이 제1조에 (목적) 규정 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음</p>

김영진 의원안	학회의 대안	비고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농업인”이라 함은 만 15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의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촌”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5호의 규정의 의한 농촌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라 함은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라 함은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p>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농업인”이라 함은 여성으로서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업” 및 “농촌”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 및 농촌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라 함은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전문인력화 및 복지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라 함은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전문인력화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p>(1) 제1호에서 「15세이상」으로 제한하는 근거가 불분명하고, 또 같이 연령을 명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농업·농촌기본법상의 농업인의 정의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음. (2) 제2호에서 “농업”의 정의를 추가함.</p>
<p>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지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p>	<p>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 및 농촌에 관한 기술·경영 능력등을 개발·보급·교육하고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사회참여기회의 증대 등에 관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p>	<p>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함.</p>

김영진 의원안	학회의 대안	비고
<p>제5조(여성농업인의 책무)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농업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발전에 이바지하는 물론 국민 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여성농업인의 역할) 여성농업인은 농업 및 농촌의 한 주체로서 스스로의 지위향상, 전문 인력화 및 복지향상에 부단히 노력하여 남성농업인과 더불어 농업 및 농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p>	<p>(1)여성농업인이 할 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달라서 책무라 하기 보다는 역할이라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고 (*참고:소비자보호법 제4조의 제목은 “소비자의 역할”로 되어 있음) (2)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공급이나 국민의 식량 자립기반구축은 남녀농업인 모두의 과업으로서 여성농업인만의 책무는 아니라고 생각되어 삭제했음</p>
<p>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여성농업인 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p>	<p>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p>	<p>『여성농업정책』은 너무 광범위하여 이를 『여성농업인 육성』으로 수정함</p>

김영진 의원안	학회의 대안	비고
<p>제7조(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부 장관은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p>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농업인육성정책의 목표 2. 여성농업인육성정책의 기본방향 3. 핵심정책과제 4. 과제별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천방안 5. 여성농업인육성정책과 관련한 제원의 조달방법 	<p>제6조(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농림부장관은 여성농업인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p> <p>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방안 2.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방안 3.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에 관한 방안 4. 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제원의 확보방안 <p>③농림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p>	<p>(1)김영진 의원안 제7조에는 현행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7조 여성농업인육성계획의 수립·시행과 흡사한 규정으로서 이규정을 그대로 둔 채 제7조를 다시 규정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p> <p>(2) 그림에도 불구하고 제 7조를 굳이 둔다면 먼저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 7조를 삭제하고 그 내용과 이 법안의 제 7조를 좀더 정리·보완하여 학회의 대안과 같이 하는 것이 좋겠음</p>

김영진 의원안	학회의 제안	비고
<p>제8조(기본계획수립 및 시행의 협조)①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이하 “기관 및 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제7조(기본계획 등 및 시행의 협조)①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기타 법인 또는 단체는 공공기관이 아니어서 협조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겠음</p>

김영진 의원안	학회의 대안	비고
<p>제9조(여성농업인정책자문회의)①여성농업인정책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여성농업인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p> <p>②자문회의에는 여성농업인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 및 대표가 참여하여야 한다.</p> <p>③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여성농업인육성장문회의)①여성농업인육성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 지방자치단체에 여성농업인육성장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p> <p>②자문회의는 여성농업인단체의 대표와 농업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p> <p>③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비고</p> <p>(1) 조문의 순서는 김의원안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대안 순서는 이와 다름. 그 이유는 대안 제8조 비고난에 적혀 있음</p> <p>(2)자문회의는 중앙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둘 필요가 있다.</p>
<p>제10조(여성농업인관련 실태의 조사 등)①농림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농업인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의 농촌생활 실태 및 농업노동실태 등 여성농업인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업인 관련실태 조사의 시기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제12조 (여성농업인관련 실태조사 등) ①농림부장관은 여성농업인육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②농림부장관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p> <p>③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며, 이 실태조사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p>	<p>제 2항을 신설삼입하고 제 2항을 제 3항으로 함</p>

김영진 의원안	학회의 대안	비고
<p>제 11조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강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강화를 통하여 전문적인 농업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농업인의 특성에 맞는 농업기술 및 농업경영관련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 농업후계인력의 육성 3. 여성농업인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건개선 4. 독자적인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경영상담과 자금의 지원 	<p>제9조(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농업인의 특성에 맞는 농업기술·농업경영 방법과 능력·농업기계와 장비 등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관한 교육·지원을 하는 방안 2. 여성농업인 단체의 조직 및 육성의 지원방안 3. 여성농업인의 농업 경영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4. 각종 여성농업인교육에 여성농업인을 10분의 3 이상 참여시키는 방안 5. 여성농업인후계자양성에 관한 사항 6. 기타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에 관한 사항 	

김영진 의원안	학회의 대안	비고
<p>제 12조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종 농업정책 및 여성농업인과 관련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농업인의 참여 확대 2. 여성농업인의 노동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 마련 3.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4. 공동농업경영자로서의 지위 확보를 위한 가족간 경영협정의 추진 <p>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정책 결정 및 각종 교육기회의 제공·지원 등을 함에 있어 여성농업인의 인권 및 양성평등 문화 진작을 위하여 균등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8조(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농정심의회에 여성농업인을 10분의 3 이상 참여시키는 방안 2. 농촌의 각종 조직활동에 여성농업인을 10분의 3 이상 참여시키는 방안 3. 농촌가정 및 농촌사회의 민주화와 양성평등화를 유도하는 방안 4.기타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에 관한 방안 <p>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참정적인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수정안 제8조 제9조 제10조의 순서는 제 1조 목적규정에 나오는 기본정책의 순서에 따른 것이며 이 규정은 자문회의나 실태조사 보다는 당연히 앞에 와야 할 조문이라므로 그 순서를 원안과 달리 하였음.</p>

김영진 의원안	학회의 대안	비고
<p>제 13조(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각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농업인에 대한 평생교육 실시 2. 모자(母子)농업경영가정에 대한 지원 3. 노인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 4.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예방과 보호지원 5.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원 6.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 7. 그밖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p>제10조(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쾌적하고 편리한 삶을 위한 생활환경개선사업 2.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보호를 위한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기타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방안 	
<p>제 14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제13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김영진 의원안	허회안	비고
<p>제15조(여성농업인관련시설의 설치·운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의 권익 및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업인관련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p>	<p>제14조(여성농업인관련시설의 설치·운영)</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전문인력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업인관련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p>	
<p>제 16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이 법안에는 농림부장관의 권한으로 명시된 것이 별로 없어 권한위임규정을 둘 필요가 없음.</p>

김영진 의원안	학회의 제안	비고
<p>부 칙</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업·농촌기본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으로 본다.</p>	<p>②(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업·농촌기본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으로 본다.</p>	

4. 農業協同組合法

I. 농협법 시행령 제4조

지역농협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에 다음을 추가

1.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자

[이 유]

1.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에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 자’가 포함되어 있으나 농협법 시행령 제4조에는 이 기준이 제외되어 있음
2. 고령농가의 증가와 함께 위탁영농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합원의 자격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II. 농협법 제108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

제108조(목적) 품목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목이나 업종의 농업 또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이 유]

1. 품목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품목(업종)을 축산업에 대하여는 법과 시행령에서 일정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경종농업에 대하여는 정관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경종농업 품목조합의 남설립이 우려됨

2. 정관예에서 열거한 경종농업의 품목조합을 설립하는 기준은 종전의 원예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기준과 거의 일치하고 있음(정관에서 정한 품목은 단순열거가 아니라 이 품목에 한해서만 조합원자격을 인정하는 제한열거로 보고 있음)
3. 그러나 정관예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이라도 농림부장관의 인가만 받으면 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약 경종농업의 대표작물(예:쌀조합)이 품목조합으로 설립되어 독자사업을 전개할 경우 현재의 지역조합의 사업기반이 붕괴될 위험이 있고 이는 현재의 농협법 체계를 유지할 수 없게하여 법적 안정성면에서 바람직 하지 못함
4. 품목조합의 설립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소규모조합으로서 독자의 유통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등 기존의 협동조합체제에 위협을 주지 않는 범위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고 이는 '신규진입금지'에는 해당한다 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품목조합의 설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통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III. 농협법 제115조 제2항(회원가입승낙의무) 개정

中央會는 …… 그 申請日부터 30日內에 加入여부를 통보하되, 加入을 不許할 때에는 그 事由를 釋明해야 한다.

[이 유]

1. 중앙회 정관 제10조 제2항에는 조합이 중앙회에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이사회에 부의하여 가입을 승낙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 제115조 제2항에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 회원가입신청을 하면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입을 승낙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2. 조합의 중앙회에 대한 가입은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면서, 중앙회의 회원조합 가입승낙을 의무화한 것은 영세한 비회원조합을 중앙회에 가입시켜 보육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나, 자칫 중앙회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3. 비회원조합의 중앙회 가입의무화는 정관으로 위임한 사항을 다시 법에서 강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IV. 농협법 제126조(임원),제128조(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 제131조 제2항(인삼관련 집행간부)의 전면개정

[이 유]

1. 농협법 제126조는 사업전담대표 이사를 3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제128조에서는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신용대표이사로 확정하여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제131조 제2항에서는 인삼사업관련 집행간부를 두도록 되어 있음
2. 이와같이 현농협법에서 축산경제대표이사과 인삼관련사업을 전담하는 집행간부에 관하여 명문으로 직무범위를 정하여 설치토록 한 것은 구 농축인삼협의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과 갈등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과도기적 규정이라고 볼 수 있음
3. 현재의 회장이 전담집행토록 되어있는 교육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이사회멤버인 대표이사가 아닌 집행간부가 이를 분담하고 있어 각대표이사간의 업무협조 및 조정이 어려우며 대외활동에도 한계가 있음.
4. 어느 조직이나 이사의 수나 집행간부에 관한 사항 등 조직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은 총회나 이사회 등에서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신농협법에 따라 새로운 중앙회가 설립된 현시점에서는 통합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인정하였던 과도기적 특례조항은 이를 정상체제로 환원할 필요가 있고, 대표이사 및 집행간부의 명칭과 직무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환원할 필요가 있음

5. 위와같이 중앙회의 조직구조에 관하여 전면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의 농협법은 일반기업이나 상법의 규정과 비교하여 볼 때 지나치게 상세한 부분까지 법률로 정하고 있어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중앙회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조항을 전면 재검토하여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인원의 상하한선 정도만을 법률로 정하고 세부적인 업무분담사항은 하위법령이나 자치법규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함

V. 농협법 제132조(축산경제사업의 특례)

본 조항의 삭제

[이 유]

1. 농협법 제132조에서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선임방식과, 재산관리의 특례, 잉여인력조정원칙을 규정한 것은 구 농축인삼협의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과도기적인 법규정으로 볼 수 있음
2. 그러나 동일 조직내에서 대표이사별로 선임방식이 상이하고 재산관리방식이 다르며, 인력조정에 법이 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특별히 법률이 관여할 필요가 있다면 정관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농협법에 따라 신농협중앙회가 설립된 이상 과도기적 조항은 이를 삭제하는 것이 마땅함

VI. 중앙회의 부가의결권제도의 도입

[이 유]

1. 농협법 제26조의 규정은 농협법 제161조에 의거 중앙회에 준용되어 회원조합은 그 조합원 수 및 사업규모의 크기에 관계없이 중앙회에 대해 1조합당 1개의 의결

권을 보유하고 있음

2. 조합원은 1인1표로 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운영원칙은 ICA 7대원칙으로서 인적결합체로서의 성격이 강조되는 기초단위 협동조합에서는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할 원칙임
3. 그러나 회원농협간의 합병등으로 조합간 조합원의 수, 사업규모, 출자금액 등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동일한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중앙회의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4. 조합의 경우에는 1인1표주의가 민주적운영에 합치한다고 할 수 있으나, 연합체의 경우에는 회원조합이 규모화 광역화됨에 따라 회원조합의 조합원수나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1조합1표로하는 것이 실질적인 평등에 위반되며, 중앙회의 자기자본확충이나 사업이용도 제고를 위해서도 부가의결권제도가 필요함
5. 일본농협의 경우에도 조합의 경우에는 부가의결권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나 연합회의 경우에는 부가의결권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일본농협법 제16조제2항), 1995년의 ICA원칙 개정시에도 조합은 1인1표로 하되 2차·3차 연합회 단계에서는 의결권의 차등부여가 가능하도록 융통성이 부여되었음
6. 따라서 협동조합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대규모 조합원 보유조합에는 1표이상의 의결권을 추가로 부여하는 부가의결권제도를 도입하되, 그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한국농협의 당면과제인 회원조합의 합병촉진과, BIS비율 충족을 위한 자기자본의 확충, 사업이용도 제고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VII. 제138조(품목조합연합회)

대폭 개정하여 법적 성격을 명확히하고 사업중복이나 업무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 유]

1. 우선 농협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합 연합회는 그 법적성격이 불명확한 점이 있음
 - (1) 중앙회의 회원이면서도(제115조), 중앙회편(제5장)에 규정되어 있어 연합회가 중앙회의 일부로서 2단계조직인지 연합회를 경유하여 중앙회에 가입하는 3단계조직인지가 분명치 않음.
 - (2) 또한 연합회는 품목조합의 권익증진과 공동의 사업개발을 목적으로 하면서도(제138조 제1항 본문), 직접적인 사업기능(동조 제2항)을 가지고 있어 연합조직(정치조직)인지 사업조직인지가 명확치 않음
2. 사업면에서도 물자의 공동구매, 공동판매 및 운반 가공사업 등 연합회의 사업(법 제138조 제2항 제2호)과, 중앙회의 사업(제13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3호 가목)과 중복되고 있어 연합회와 중앙회간의 사업중복에서 오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3. 또한 연합회는 5 이상의 품목조합을 회원으로 설립이 가능하여 지역단위연합회와 전국단위연합회가 중복 설립될 경우 출자의 중복 및 업무경합에 따른 기능조정이 필요하게 됨
4. 연합회는 그 설립근거가 농협법상의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민법상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함으로써(제138조 제4항) 법인운영에 있어서 협동조합적 법원리가 적용되도록 법체계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5. 따라서 제138조의 품목조합연합회는 회원의 권익증진과 사업개발등 연합회적인

사업만을 수행하고 직접적인 사업기능은 이를 폐지함으로써 사업중복에 따른 기능조정이 필요함

VIII. 이사회 구성 과 권한 및 기능의 재정립

[이 유]

1. 현재 중앙회의 이사회는 대다수 회원조합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사회의 막중한 권한과 기능에도 불구하고 경영의 전문성이 취약하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으며, 특히 농협중앙회의 경우 업무범위가 넓고 기구가 방대하여 이사회에서 세부업무 처리 방향을 결정하기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이를 상임인 집행간부가 결정처리하고 있으나 집행간부는 어디까지나 각 사업전담대표이사를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므로 책임소재를 묻기도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일반 시중은행과 같이 관리이사회(General board)와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로 구분하여 상호역할 분담을 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가 있음
 - (1) 중앙회의 사업방향이나 회원조합 지도·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방향에 대하여는 관리이사회가 결정(주로 회원조합장 중심의 이사회에서 결정)
 - (2) 관리이사회내에서 구체적인 집행결정은 전문성을 갖춘 집행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이에 상응한 책임을 지도록 함(주로 상임인 집행간부가 결정)

IX. 농업·농촌기본법 관련부분 개정의견

1. 농업·농촌기본법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

제2호 및 제5호를 삭제

제3호를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로 개정

[이 유]

신농협법 제정 및 산림조합법 개정에 따른 내용수정

2. 농업·농촌기본법 제11조(생산자단체에의 가입)

본문중 ‘축산업협동조합’을 삭제하고 ‘임업협동조합’을 ‘산림조합’으로 개정

[이 유]

관련법률 개정에 따른 내용수정

5. 農 地 法 등

5-1. 농지법

1. 농지이용증진사업의 범위 재정립

(1) 현행조문

농지법 제3장 농지의 이용

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

농지법 제14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 생략

(2) 개정

농지이용증진사업의 범위는 「농지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농지의 소유권이전촉진사업, 농지의 임차권설정촉진사업, 위탁경영촉진사업, 농업경영체육성사업 등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농지이용도의 제고와 휴경지의 경지화 등을 위한 제반 사업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함.

이를 위해 「농지법」 제2조(정의)에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정의 삽입

(3) 근거

① 「농지이용증진사업」은 「농지법」 제3장 제1절에 농지이용증진 등, 농지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 표기되어 있음.

② 「농지이용증진사업」은 「농지법」상의 용어로서 “농지이용계획에 따라 「농지법」에 규정한 사업자가 농지의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

하는데, 구체적으로 농지의 매매·교환·분합 등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촉진하는 사업, 농지의 장기임대차·장기사용대차에 의한 임차권(사용대차권 포함) 설정을 촉진하는 사업,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위탁을 능력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수탁하는 사업, 농업인(농업법인)의 농지공동이용(집단이용)을 통한 농업경영개선을 지원하는 사업(농업경영체육성사업) 등을 의미함.

③ 이와 같은 농지이용증진사업의 개념설정은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우수경영체로의 농지이용의 집중과 농지의 집단화를 통하여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제한하는 문제를 야기함.

④ 또한 현실적으로 농지이용증진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① 농지의 소유권, 이용권(임차권, 위탁경영 등) 등 제도적 개념이외에 ② 농지의 개량, 형질변경(농지기반조성 등) 등 물리적 개념까지 도입하여 광의로 해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임.

(4) 농업·농촌기본법과의 일치 여부 : 일치

2. 「농지법」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사이의 관계 정립

(1) 현행조문

농지법시행령 제18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생략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농지매매사업) 생략

제19조(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생략

제22조(농지의 교환·분합사업) 생략

(2) 개정

농지법시행령 제18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에 농업기반공사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자로 추가

(3) 근거

- ① 「농지법」의 농지이용증진사업 중 소유권이전촉진사업, 임차권설정촉진사업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농지매매사업), 제19조(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제22조(농지의 교환·분합사업)에 규정된 사업과 유사한 데도 별도의 사업처럼 운용되고 있음. 따라서 동일목적의 유사사업이 2가지 법에 중복 규정되어 있어 관련법들간의 관계정립이 요구됨.
- ② 농지의 매매·교환·분합 등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촉진하는 사업, 농지의 장기임대차·장기사용대차에 의한 임차권(사용대차권 포함)설정을 촉진하는 사업에 대한 법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보다 「농지법」이 상위법이 되고 이에 따라 농업기반공사는 「농지법」에 규정된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추진하는 형태가 바람직함.
- ③ 「농지법시행령」 제18조의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자 가운데 농업기반공사는 제외되어 있음.

(4) 농업·농촌기본법과의 일치 여부 : 일치

3. 농업인의 범위 확대 조정

(1) 현행조문

농지법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6.8.8>

1.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2) 개정

농지법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 3항에 "누에, 지렁이 기타 약용 곤충을 0000 이상 규모로 사육하는 자"를 추가 삽입

(3) 근거

① 현행 법에서는 곤충을 재배하는 자 가운데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자만 농업인으로 인정받고 있음. 따라서 누에, 지렁이 등을 약용으로 생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농지를 이용하여 이들 약용 곤충을 사육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농지취득이 불가능함. 꿀벌을 사육하는 자와 약용의 누에, 지렁이 등을 사육하는 자 사이에 형평의 문제가 발생함. 그러므로 농지를 이용하여 누에, 지렁이 등 약용 곤충을 사육하여 판매하는 자도 농업인의 범주에 포함시켜 농지취득이 허용되어야 함.

② 이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약용곤충사육 실태조사 및 관련부서와 협의가 필요

함(축산법 개정과 연계하여 검토할 사항).

③ 현재 곤충을 사육할 목적의 농지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취득이 가능함.

(4) 농업·농촌기본법과의 일치 여부 : 일치

4. 농지의 형질변경제도 개선

(1) 현행조문

농지법시행령 제3조의2(농지개량의 범위)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의 범위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당해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배수·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객토·성토·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본조신설 96.12.31>

(2) 개정

- ① 농지법시행령 제3조의2조의 조문표제를 “농지개량의 범위”에서 “농지개량의 범위와 신고”로 개정
- ② 농지법시행령 제3조의2(농지개량의 범위)의 3항을 신설하여 “경지정리된 논 또는 일정높이(50cm) 이상을 성토시 신고하여야 한다”는 신고제 도입

(3) 근거

- ① 농지개량행위가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지전용을 희망하는 소유자가 농지개량을 빙자하여 공사장 토사, 도시지역의 쓰레기 등으로 농지를 매립하는 행위가 성행하여 우량한 농지를 훼손하여 농지에서의 농업생산력을 저하시키는 사례가 많음.
- ② 따라서 농지개량을 빙자한 농지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지개량의 범위 구체화하고, 경지정리 된 논이나 기타 농지를 일정한 높이(50cm) 이상으로 성토 등의 방법으로 농지개량을 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여 우량농지를 보호하여야 함.

(4) 농업·농촌기본법과의 일치 여부 : 일치

5.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제도 개선

(1) 현행조문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 ①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99.3.31>
 1. 제6조제2항제1호·제3호·제5호·제7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농지의 분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2인 이상으로부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받아 시·구·읍·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취득대상농지의 면적

2. 취득대상농지의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의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개정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현재 ‘농지취득자가 농지관리위원 2인의 확인을 받아 시·구·읍·면에 발급 신청’하는 기존 절차외에 ‘농지취득자가 시·구·읍·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면 시·구·읍·면장이 농지관리위원 2인의 확인을 받아주는 절차’를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신설

(3) 근거

① 농지취득자가 농지를 구입하기 위한 절차로 농지관리위원 2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 농지관리위원 2인을 만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일부 농지관리위원의 경우 농지소재지에 지역을 위한 도로개설 등 부당한 요구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②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농지취득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의 편의도 동시에 고려하여 현행 절차와 병행하여 농지취득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4) 농업·농촌기본법과의 일치 여부 : 일치

6. 불법전용농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제도 개선

(1) 현행조문

농지법시행규칙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등)

- ①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②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계획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 ③ 제1항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12.31, 98.6.25, 99.12.7>
 1.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농지원부등본(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농업인의 경우로서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의하여 농지원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삭제 <99.12.7>
- ④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이나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을 제외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99.5.21>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 등

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4.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5.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6. 신청자의 연령·신체적인 조건·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7. 신청자의 영농의지
- ⑤ 영 제10조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96.12.28, 98.6.25>
1. 별지 제5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⑥ 시·구·읍·면장은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7호 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며, 그 통지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반려통지서에 의한다.

(2) 개정

- ①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이지만 타용도로 불법전용된 경우 '농지로 복구 후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토록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농지법시행규칙 제7조에 ⑦항으로 신설하고,
- ② 농지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의 양식에 '복구계획'을 기재할 수 있는 공란을 삽입하여 [별지 제6호서식]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3) 근거

- ① 현행 농작물 재배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취득시 행정관행상 복구계획서를 제출토

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농지취득후 복구계획서의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음.

- ② 그런데 이 복구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바로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토지의 처분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함.

(4) 농업·농촌기본법과의 일치 여부 : 일치

7.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농지의 실태조사와 처분제도 개선

(1) 현행조문 : 법 제10조 및 예규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등의 처분)

- ① 농지의 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농지(제5호의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1.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제11조·제19조 및 제65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제2조제3호 각목의 1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후 3월이 경과한 때
 3.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당해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
 4. 제6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때
 6.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때
 7. 정당한 사유없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

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부령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대상농지·처분의무기간 등을 명시하여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농업경영에이용하지않는농지등의처분관련업무처리요령(예규204)

<자세한 내용 별첨 참조>

I. 총 칙

1. 목 적

.....(생략)

2. 업무처리기관

.....(생략)

라. 농업기반공사

①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수청구의 접수 및 매수

②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농지의 매도

.....(생략)

II. 농지이용실태등 조사

1. 조사대상

.....(생략)

2. 조사기준 및 조사기간

가. 조사기준 : 10월 1일

나. 조사내용 : 전년 10월 1일 ~ 9월 30일(1년간)중 농지이용실태

다. 조사기간 : 10월 1일 ~ 11월 30일(60일간)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조사할 수 있음

.....(생략)

III. 처분대상농지의 결정 및 통지

1. 처분대상 농지의 요건

가.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다음중 1에 해당하는 농지

①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한 농지

※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휴경하는 농지

.....(생략)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 또는 사용대한 농지

※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농지이용증진사업에 의하여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

.....(생략)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경영한 농지

※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농지이용증진사업에 의하여 위탁경영하는 경우

.....(생략)

2. 처분대상농지의 결정

.....(생략)

4. 이의제기 및 그 처리

가. 이의제기에 대한 재조사

.....(생략)

나. 이의제기의 처리

.....(생략)

다. 처분의무의 확정 및 효력

.....(생략)

IV.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생략)

V. 농지의 매수 및 처분

.....(생략)

VI. 처분의무 부과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생략)

VII. 보 고

.....(생 략)

부 칙(1999. 1.20)

.....(생 략)

(2) 개정

- ① 예규 204에 규정된 농지이용실태 조사시기를 현재의 매년 10월~11월을 실제 경작기간(7~10월)으로 조정(예규)
- ② 농지처분명령시 농업기반공사에 농지매수청구가 가능한데 현재 「농림사업시행지침」에는 경지정리된 논만 매수가 가능한 것을 논이외에 밭도 매수 가능하도록 농업기반공사의 매수농지범위를 확대하여 「농림사업시행지침」 개정
- ③ 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를 농림부 예규 204에 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정당한 사유"를 농지법 제10조에서 농지법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타당함.
- ④ 처분의무통지전의 '이의신청절차'를 농림부 예규 204에 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이를 농지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3) 근거

- ①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농작물 재배기간이 아닌 10월~11월 사이에 시행함으로써 농지에서의 경작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곤란함.
- ② 처분의무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와 '이의신청절차' 등은 법령에서 정할 사항인데도 예규로 규정함으로써 규정의 투명성이 낮음.
- ③ 농지처분명령시 농업기반공사에 농지매수청구를 가능하도록 예규에 규정하고,

한편으로 「농림사업시행지침」에는 농업기반공사의 매수대상 농지를 경지정리된 논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당초 농지법에서 농업기반공사에 농지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제도상의 모순임.

- ④ 이러한 점은 농지의 사후관리제도의 투명성 확보와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함.

(4) 농업·농촌기본법과의 일치 여부 : 일치

8. 농업진흥지역내 공공시설의 대체농지 지정 의무화

(1) 현행조문

농지법 제34조(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 ① 농업진흥구역안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토지이용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시설의 설치 ……………(생략)
7. 도로·철도·전기공급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생략)

농지법시행령 제33조(농업진흥지역등의 변경)

- ①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4.19>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지역밖의 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법 제3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의를 하는 경우

2. 삭제 <99.4.19>

3. 당해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밖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
하는 경우

4. 당해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진흥구역으
로 편입하거나 농업진흥구역안의 1만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
으로 편입하는 경우

②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을 농
업진흥지역밖의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는 면적에 상응
하는 새로운 농업진흥지역을 대체지정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9.4.19>

③ 법 제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농정심의회의 심의와 농림부장
관의 승인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제1항제
4호의 경우중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개정 96.8.8, 99.4.19, 99.12.28 대령16646>

④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개정 96.8.8, 99.4.19>

(2) 개정

농지법시행령 제33조에 '일정규모이상의 농업진흥지역을 전용하는 공공시설'의
경우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대체농지를 지정'하도록 조문을 신설하거나 개정

(3) 근거

① 공공시설(특히 도로)은 농업진흥지역에 설치 가능(법 제34조제1항제7호)함.

② 대규모 공공시설의 경우 농업진흥지역내에 설치하더라도 용도지역이 변경되
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지역에 동일한 면적의 농업진흥지역을 대체지정하도록
할 수 없음. 따라서 농업진흥지역내 공공시설이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은 한

대체농지지정을 하지 않아도 됨.

③ 그러므로 공공시설의 설치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감소에 대한 보완책이 없는 실정이며, 전체 농지전용면적 중 공공시설이 차지하는 절대면적 및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임('98) 9,253ha(61%) → ('99) 6,481ha(54%).

④ 그러나 이 문제는 공공시설의 공익성과 농지보전의 공익성을 비교하여 판단한 후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4) 농업·농촌기본법과의 일치 여부 : 일치

9. 농업보호구역내 행위제한 면적규모의 축소 강화

(1) 현행조문

농지법 제34조(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농업진흥구역안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토지이용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관련 시험·연구시설의 설치

.....(생략)

9. 농어촌소득원의 개발등 농어촌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 농업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법5454>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

2.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4. 그 부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시설의 설치
- ③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당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등을 얻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당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에 대한 인가·허가·승인등을 얻거나 신고하고 사업을 시행중에 있는 자(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등을 얻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한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농지법시행령 제35조(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3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보호구역안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의 부지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12.31, 99.4.19, 99.10.11>

1. 공장 : 1천제곱미터이상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 2천제곱미터이상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에 한한다),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안마시술소 및 골프연습장에 한한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 : 100제곱미터이상
4. 기타시설 : 3천제곱미터이상

(2) 개정

‘농지법시행령 제35조(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4항 기타시설’을 현재의 ‘3천제곱미터이상’에서 ‘1천제곱미터이상으로 축소 개정

(3) 근거

- ① 현재 음식점·숙박업소, 위락업소(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등 포함) 등을 설치할 경우 1백제곱미터미만으로 전용을 허용함에 따라 전용허용면적이 작아 주변의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불법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 ② 준농림지역에서 음식점, 숙박업소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조례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향후 규제가 강화(포지티브방식으로 전환)되는데, 농림지역인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허용행위가 넓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③ 따라서 농가소득 증대와 관련있는 음식점과 숙박시설은 현행대로 설치 가능하도록 하지만, 농가소득과 관련이 적은 위락시설 등은 계속 설치를 제한하며, 농지법시행령 제35조 4항의 기타시설 허용면적은 현행의 3천제곱미터이상에서 1천제곱미터이상으로 축소하는 것이 타당함.

(4) 농업·농촌기본법과의 일치 여부 : 일치

10. 농업진흥지역 해제 근거 추가 마련

(1) 현행조문

농지법 제33조(농업진흥지역등의 변경)

-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시·도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와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개정 96.8.8>

(2) 개정

- ① 농지법 제33조의 표제 (농업진흥지역등의 변경)을 (농업진흥지역등의 변경 또는 해제)로 개정하고,
- ② 제1항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를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로 개정하며,
- ③ 제2항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으로 개정

(3) 근거

농지법 제33조에는 농업진흥지역의 변경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 데, 이 경우의 변경에는 농업진흥지역의 변경에는 해제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농지법 제33조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해제할 경우의 규정이 없음.

(4) 농업·농촌기본법과의 일치 여부 : 일치

11. 변경허가대상에서 경미한 전용허가사항 제외

(1) 현행조문

농지법 제36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 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

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6.8.8>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생략)

(2) 개정

농지법 제36조(농지의 전용허가·협약)에 전용허가를 받은 면적을 경미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허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문구를 삽입하여 개정

(3) 근거

① 농지법 제36조는 농지전용허가사항을 변경시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이미 전용허가를 받은 토지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새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야기하고 있음.

② 따라서 이미 전용허가를 받은 토지에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할 경우에는 이를 전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전용업무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야 함.

(4) 농업·농촌기본법과의 일치 여부 : 일치

12. 농지전용허가 취소사유의 구체화

(1) 현행조문

농지법 제41조(전용허가의 취소등)

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37조 또

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6.8.8>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등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4.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5.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6.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공사의 중지등 이 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개정

농지법 제41조(전용허가의 취소등)의 3항에 농지전용허가 취소사유 중 2년이상 전용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를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문귀 삽입 필요

(3) 근거

- ① 농지법 제41조(전용허가의 취소등)의 3항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2년이상 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아도 허가를 취소하지 않으나,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내용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침으로 운용되어 투명성이 부족함.
- ② 따라서 “정당한 사유”를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적 투명성과 전용관련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함.

(4) 농업·농촌기본법과의 일치 여부 : 일치

13.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신고전용 제한규정 신설

(1) 현행조문

농지법 제37조(농지의 전용신고)

- ① 농지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인주택, 농업용시설,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시설
 3. 농수산물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양식장등 어업용시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또는 설치자의 범위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개정

농지법 제37조에 '농업진흥지역에 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3) 근거

- ① 현재 농지법시행령에 의하여 농업인 주택등의 시설을 농업진흥지역밖에 한하여 신고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② 그러나 대법원은 농업인 주택을 농업진흥지역밖으로 제한한 농지법시행령 [별표 1]은 설치지역제한에 대한 법적 위임근거가 없어 무효임을 판시(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00. 10. 19)하였음.

③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의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신고로 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4) 농업·농촌기본법과의 일치 여부 : 일치

14.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권의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1) 현행조문

농지법 제38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등)

- ① '농지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6.8.8>
 1.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대상시설이 아닌 간이농업용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주목적사업(당해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현장사무소 또는 부대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매설하는 경우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석 및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 ② 농림부장관은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계획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을 할 때에 당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기간동안 당해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을 붙일 것을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다. <개정 96.8.8>
- ③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8.8>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출하되,

그 납부시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개정

농지법 제38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등)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권'을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도록 개정

(3) 근거

① 농지법 제38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등)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은 농지로 복구하여야 하고, 기간제한(3년이내의 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함) 등이 있는 조건부 허가임.

② 따라서 이러한 조건부 허가사항은 허가권자를 농림부장관으로 하는 것 보다 농지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함.

(4) 농업·농촌기본법과의 일치 여부 : 일치

15. 농지조성비 부과징수제도 개선

(1) 현행조문

농지법 제40조(농지조성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상당하는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농지조성비"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1.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제3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에 정지 안의 농지(동조동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대상에서 제외되

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3. 제3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5.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 ②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는 농지조성비를 납입한 자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농지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 ③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96.8.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④ 농지조성비의 단위당 금액은 농림부장관이 농지별로 결정·고시한다. <개정 96.8.8>
- ⑤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가 납입기한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⑥ 농지조성비의 납부시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개정

- ① 농지법 제40조(농지조성비)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부과징수 업무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② 농지법 제40조(농지조성비) ⑦항 신설
- ⑦ 농림부장관은 농지법 제53조 또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농지조성비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3) 근거

- ① 현재 농지조성비를 부과 징수하는 업무에 대해 수수료 지급 규정이 없음. 이에 따라 농지조성비 부과징수에 대한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음. 그 이유는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업무에 대해 중복 지급의 성격이란 점 때문임. 참고로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수수료는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 제6항에 지급의 근거 규정이 있음.
- ② 앞으로 농지전용부담금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지조성비의 부과징수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함.

(4) 농업·농촌기본법과의 일치 여부 : 일치

16. 농지조성비 이행보증금 징수

(1) 현행조문

농지법 제40조(농지조성비)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상당하는 농지의 조성예비용(이하 "농지조성비"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1.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제3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 안의 농지(동조동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3. 제3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5.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 ②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는 농지조성비를 납입한 자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농지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 ③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96.8.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④ 농지조성비의 단위당 금액은 농림부장관이 농지별로 결정·고시한다. <개정 96.8.8>
- ⑤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가 납입기한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⑥ 농지조성비의 납부시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개정

농지법 제40조(농지조성비)에 의하여 징수하는 농지조성비의 체납방지를 위하여 '농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납입을 연기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농지법 제40조 내에 신설

(3) 근거

① 농지법 제40조에 징수하는 농지조성비의 납입을 보장할 법적 제도적 수단이 없음. 따라서 현재 농지조성비의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여 2000년 11월 현재 체납액이 약707억원에 달하고 있음.

② 개정된 산림법(의원입법안으로 2000.12.21 국회통과)의 예에 준하여 이행보증금을 증권·예금증서 등으로 예치하도록 하여 농지조성비의 체납을 방지하여야 함.

(4) 농업·농촌기본법과의 일치 여부 : 일치

17. 농지조성비 환급제도 개선

(1) 현행조문

농지법시행령 제56조(농지조성비의 환급)

① 농림부장관은 납입의무자가 농지조성비로 납입한 금액중 파오납입한 금액이 있거나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파오납액 또는 환급금액을 농지조성비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지조성비납입자와 농업기반공사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9.12.28 대령16647>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환급금을 통지하는 때에는 농지조성비환급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지조성비환급금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1. 착오납입·이중납입 또는 납입후의 그 부과의 취소·정정으로 인한 농지조성비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입일. 다만, 그 농지조성비가 2회이상 분할납입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입일로 하되, 농지조성비환급금이 최후에 납입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납입일의 순서

로 소급하여 계산한 농지조성비환급금의 각 납입일로 한다.

2. 납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의 농지조성비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취소일
 3. 납입자의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농지조성비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변경허가일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의 결정일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환급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에서 이를 지급한다.
<개정 99.12.28 대령16647>

(2) 개정

농지조성비 환급은 ‘당해 농지가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회복 후 환급’ 하고, ‘환급결정은 환급사유발생후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지급’하도록 농지법시행령 제56조(농지조성비의 환급)의 내용을 개정

(3) 근거

- ① 농지법시행령 제56조(농지조성비의 환급)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환급은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환급결정일까지의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 ② 이러한 규정 때문에 정부가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농지훼손시에도 농지조성비를 우선적으로 환급해야 하며, 또한 환급사유발생 즉시 농지조성비를 환급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기간이 부족하여 추가적인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
- ③ 따라서 훼손농지의 원상회복의 확실성을 제고하고, 환급결정기간을 적절히 주어 불필요한 가산금의 지급을 방지하여야 함.

(4) 농업·농촌기본법과의 일치 여부 : 일치

18. 농지관리위원회 통합설치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1) 현행조문

농지법 제46조(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 ① 농지 및 그 임대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읍 또는 면에 각각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그 관할구역 안에 농지가 없는 시·구·읍 또는 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농림부장관은 지역의 특성과 농지분포의 실태를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로 인접한 2이상의 시·구·읍 또는 면에 하나의 위원회를 두게 할 수 있다. <개정 96.8.8>

(2) 개정

농지법 제46조(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2항을 '농지관리위원회 통합설치권한의 시·도지사 이양' 하는 것으로 개정

(3) 근거

- ① 농지법 제46조에는 '농림부 장관은 농지관리위원회 통합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합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② 이러한 농지관리위원회의 통합과 같은 사항은 사무의 성격으로 볼 때 지역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화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함.

(4) 농업·농촌기본법과의 일치 여부 : 일치

19. 농지관리위원회 기능과 업무 추가

(1) 현행 조문

농지법 제4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등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3. 삭제 <99.3.31>
4.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5. 기타 농지의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농지법시행령 제69조(위원회의 기능)

- ① 법 제48조제5호에서 "기타 농지의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99.12.28 대령16647>
 1. 농지 및 농지의 소유·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2.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관한 확인
 3.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선정에관한 심의
 4. 기타 농지의 관리에 관하여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 및 위원회의 위원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 및 시·구·읍·면이나 그 소속공무원에게 관계서류의 열람·복사 기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개정

농지관리위원회가 현재의 기능상 업무 이외에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불법전용조사'를 수행하도록 기능상의 업무를 농지법 제48조와 농지법시행령 제69조에 추가하는 법령 개정

(3) 근거

- ① 농지관리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농지전용시 확인, 농지이용실태조사시 확인 등 단순한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기능 중 실질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농지관리위원회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음.
- ② 따라서 앞으로 농지행정에서 농지이용실태 파악과 불법전용실태의 파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불법전용조사’ 업무를 농지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으로 부여하여 농지이용실태와 불법전용실태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활성화도 도모하여야 함.

(4) 농업·농촌기본법과의 일치 여부 : 일치

20. 농지처분 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제도 개선

(1) 현행조문

농지법 제65조(이행강제금)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간안에 당해 처분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게고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이의제기기관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처분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을 받은(은) 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한다
-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농업경영에이용하지않는농지등의처분관련업무처리요령(예규204)

<자세한 내용 별첨 참조>

I. 총 칙

1. 목 적

.....(생략)

2. 업무처리기관

.....(생략)

II. 농지이용실태등 조사

1. 조사대상

.....(생략)

2. 조사기준 및 조사기간

.....(생략)

III. 처분대상농지의 결정 및 통지

1. 처분대상 농지의 요건

.....(생략)

4. 이의제기 및 그 처리

.....(생략)

IV.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1. 처분명령

.....(생략)

2.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가.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농지의 처분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기간안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소유자

※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농지의 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농어촌진흥공사에 당해 농지의 매수를 청구 중에 있는 기간동안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보
- 처분명령기간 경과전에 당해 농지의 매매계약 등 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가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일 전에 농지를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명령기간 이내에 처분한 것으로 인정

나. 이행강제금의 산출

.....(생략)

다. 이행강제금부과의 계고 및 청문

.....(생략)

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생략)

마. 이행강제금의 귀속

.....(생략)

V. 농지의 매수 및 처분

.....(생략)

VI. 처분의무 부과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생략)

VII. 보 고

.....(생략)

부 칙(1999. 1.20)
.....(생략)

(2) 개정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를 농림부 예규 204에 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정당한 사유”를 농지법 제65조에서 농지법시행령으로 위임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근거 신설이 타당함.

(3) 근거

- 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서 정할 범규사항인 데도 예규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을 떨어트림.
- ② 따라서 ‘정당한 사유’를 범규사항을 법령에서 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함.

(4) 농업·농촌기본법과의 일치 여부 : 일치

21.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도 개선

(1) 현행조문

농지법시행령 제73조(포상금의 지급)

- ①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별표 3]의 포상금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법 제54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한 자에 대하여 당해 고발 또는 신고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2인이상의 자가 함께 받게 되는 경우의 배분

방법 기타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농지법시행규칙 제56조(포상금의 지급)

- ① 영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후에 별지 제56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해당 농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2.28>
-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한 검사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2월이내에 당해연도의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6.12.28>
- ③ 농림부장관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로를 참작하여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포상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96.12.28>

[별표 3] 포상금 지급기준(제73조 제1항 관련)

신고 또는 고발사항	근거법조문	포상금지급기준(건당)
1.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법 제54조 제3항	50만원
2.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법 제54조 제4항	10만원
3.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법 제54조 제4항	50만원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타용도에 사용한 자	법 제54조 제5항	30만원
5.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전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법 제54조 제6항	30만원
6. 법 제34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법 제54조 제2항	30만원
7.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법 제54조 제1항	10만원

(2) 개정

- ① 포상금의 지급 절차를 현재의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부장관의 확인절차를 거쳐 지급’하는 것을 ‘시·도에서 확인하여 지급’하도록 절차개선을 위해 농지법시행규칙 제56조(포상금의 지급)를 개정하고,
-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농지법시행령 제73조 1항의 별표 3에 의하여 건당 10만원, 30만원, 50만원으로 되어 있는 포상금 단가를 [별표 3]을 개정하여 상향조정하여 인상

(3) 근거

- ① 농지법시행규칙 제56조(포상금의 지급)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시·도를 거쳐 농림부에 제출하고, 농림부는 확인절차를 거쳐 지급을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농지법시행령 제73조 1항의 [별표 3]에 의하여 건당 10만원, 30만원, 5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단가가 낮은 수준임.
- ③ 이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에 있어 확인절차가 복잡하고 지급단가가 낮기 때문에 신고실적 미흡함.
- ④ 따라서 불법농지전용을 억제하고 우량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농지와 관련된 불법의 신고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4) 농업·농촌기본법과의 일치 여부 : 일치

5-2. 强制賃貸借

1. 프랑스 農業法의 農地强制賃貸借

1. 總說

우리나라의 休耕農地는 1995년까지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對策으로 現行農地法 제19조는 「代理耕作者の 指定」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지정하는 것이므로 官主導型이고, 이것으로는 休耕農地를 耕作하는데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경지이용 자료>

	국토면적 (전 ha)	경지면적 (전 ha)	경지면적 증감률(%)	경지중 임차 지비율(%)	휴경농지 (전 ha)	농지의 휴경율(%)
1987	9,922	2,143		31.1		
1988	9,924	2,138	△0.2	34.8		
1989	9,924	2,127	△0.5	36.5		
1990	9,926	2,109	△0.8	37.4	40.4	1.9
1991	2,091	2,092	△0.8	37.4	67.5	3.2
1992	9,930	2,070	△1.0	37.2	68.9	3.3
1993	9,931	2,055	△0.7	39.4	66.5	3.2
1994	9,939	2,033	△1.1	41.2	62.5	3.0
1995	9,927	1,985	△2.3	42.2	64.6	3.2
1996	9,931	1,945	△2.0	43.0	34.3	1.7

자료 : 농림부, '농림업주요통계' 및 '농가경제조사' 각년도.

연도	경지면적전망(전 ha)	휴폐경면적전망(전 ha)	휴 경 륜(%)
1996	1,945	34.3	1.7
2000	1,111	83.1	7.5
2010	1,044	154.2	14.8

권오상 드림.

그러므로 農民이 경작을 원하는 休耕地를 직접 強制賃貸借(法定賃貸借)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農家は 戶當 1,500 ~ 3,000 坪 규모의 零細農인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이 營農規模가 적은 경우에는 農家所得이 많을 수가 없으므로 戶當耕地面積을 늘려야 하는데 이것을 農地購買에 의해서만 늘리는 것은 財源이 부족하므로 앞으로 農地賃貸借의 活性化가 필요한 것이다. 農地賃貸借에는 「任意賃貸借」와 「強制賃貸借」가 있는 바, 前者의 경우에는 賃貸人の 同意가 있어야 하므로 賃貸料가 비싸지므로 우리나라에 「強制賃貸借」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2. 프랑스 農業法 상의 強制賃貸借

프랑스 農業法典 제125조의1 내지 15에 규정된 強制賃貸借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랑스 農業法 제125조의 1 ~ 15에 규정된 強制賃貸借는 農民이 3년 이상 休耕作 상태인 이웃 休耕地 또는 附近에 있는 休耕地를 賃貸코자 하는 경우에는 道知事에게 土地의 개간허락을 요구할 수 있다(125조의1)

II. 프랑스 農業法典 (Code Rural)

제 125조의 1

農地所有者가 農地를 遊休地化하면 이웃 農地所有者는 利用權을 갖는다.

제 125조의 3, 3항

農地賃借人이 農地를 賃借하고도 農地를 放置해 두면 賃貸人은 農地를 도로 찾을 수 있다.

제 125조의 4

國家는 遊休地化된 農地를 收用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조문을 農地法 제22조 이하의 農地賃貸借로 制定할 것을 제안한다.

III. 未耕作 또는 非效率的으로 利用되는 土地의 開墾

공권력이 構造 調整 政策을 집중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未耕作狀態에 놓여있는 (1992년 2 990 000헥타) 土地의 規模는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1942년 2월 19일 한때 立法化가 고려되었던 이후, 放置된 土地(위에 建物 등이 존재하지 않는 狀態)의 回收는 1960년 8월 5일 農業指導法 第 60-808 號에 의해 마침내 法制化 되었다.

(1962년 8월 8일 法 第 62-933호, 1963년 5월 16일 法 제 63-254호, 1978년 1월 4일 法 제 78-10호에 依해 改正).

그 발의는, 그들의 所有地에 지정된 적은 農土를 병합하기를 원하는 개인들과, 耕

작을 推進할 수 있거나 혹은 未耕作土地目錄에 포함된 행사되지 않는 財産을 一時的으로 讓渡 하는데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州知事에 의해 이루어졌다.

관련 법령은, 個人訴訟節次를 斷念토록하는 여러 規定(法廷 그리고 行政機構에 의한 占有는 開墾志願者에게 그 開墾을 수행토록 한다.)의 존재, 그리고 未耕作狀態에 대한 明確한 定義 缺如(單純한 勞動 혹은 서너마리의 羊이 그 土地 위에 있는 事實 등조차 이웃 耕作人의 主張을 無視하는데 充分하다.)되어 있다는 점에서 非效率的이었다.

發展 및 山林保護에 관한 1985년 1월 9일 制定된 法律 제 85-30호 및 農村土地整備에 관한 1985년 12월 31일 制定된 法律 第 85-1496의 連續的 表決은, 未耕作地 및 非效率的으로 이용되는 奧地까지 適用될 수 있도록 法律 적용을 擴張하고 所有者 및 怠慢한 賃貸人으로부터 所有權剝脫을 쉽게 할 수 있는 機會를 提供하였다.

한편, 버려진 地帶의 회복이 권장되는 동시에, 共同農業政策의 根本的 改革의 擴張에 대해 呼訴하며, 土地를 休閒地 狀態로 내버려두며, 環境 保護에 副應하는 技術을 實行할 것에 동의하는 開墾者를 도울 것을 提案하는 것이다.

總體的 調和가 필수적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중요한 사실이다. 生産過剩 문제와 荒蕪地의 擴張은 동시에 필연적으로 해결해야 할 두 저울대와 같은 것이다.

(J. MEGRET, MISE EN VALEUR DES TERES INCULTES)

제 125조의 1

(1992년 12월 11일 제 92장의 1283조; 1993년 7월 22일 제 93장의 934조 2장 3장)

農業開發의 構造 調整에 관한 農村法令集 제 321조의 1, 제 312조의 5, 제 313조의 1, 제 313조의 2, 제 313조의 3, 그리고 제 337조의 1 에서 제 337조의 16 까지의 條項 規定의 適用에 상관없이, 모든 自然人이나 法人은 州知事에게 農業 혹은

畜産業으로 利用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리고 부근에 위치한 비슷한 성격의 農業耕作地인 農土의 經濟性 및 耕作條件등을 考慮하여, 最小 3年이래 未耕作, 非效率的 利用土地의 開墾 許諾을 請求할 수 있다. 두가지 경우 어떠한 外部의 理由도 同 狀況을 正當化 할 수 없다. 上記 言及한 3년의 猶豫期間은 山間地方의 경우, 2年으로 短縮된다.

州知事는, 反對節次 후, 未耕作 혹은 非效率的 利用狀態에 대하여, 同 土地의 農業的 혹은 畜産業的 耕作 可能性에 대하여 發表할 地方 土地整備委員會를 召集한다. 同 決定은 偶發的 請求人, 所有者 혹은 州知事가 알 수 있도록 國家委員會令으로 公告한다.

* 未耕作 혹은 非效率的 利用이라는 概念은 地域別로 달리 解釋될 素地가 있다.

* 疾病, 事故, 死亡은 全體 혹은 一部 放置된 土地의 回收를 目的으로 하는 節次의 實施를 禁止하기에 充分한 理由가 된다.

* 小規模 土地의 認知된 建築 可能性은 未耕作 土地의 耕作을 助長하려는 明確한 規定의 適用을 妨害하지 아니한다.

제 125조의 2

州知事의 要請에 의하여, 法院命令의 主務 判事는, 未耕作 土地 및 非效率的 利用土地의 耕作에 관한 審理 進行 중에, 所有者나 身元 및 住所가 確實치 않을 수 있는 共有者들을 갈음할 代理人을 指名할 수 있다. 만약 한 명의 共有者를 代理人으로 指名치 못할 경우, 判事는 이를 다른 自然人이나 法人에게 맡길 수 있다.

제 125조의 3

만약 未耕作 土地 및 非效率的 利用 土地의 狀態가 알려지고 問題된 土地가 開墾이 許諾된 財産의 一部가 아닌 경우, 그 所有者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開墾權者는 州知事에 의하여 그 土地를 開墾하도록 督促을 받는다.

督促 告知를 받은지 2개월이 지난 후, 그 所有主나 開墾權者는 州知事에게 그가 未耕作 土地 및 非效率的 利用 土地의 耕作을 一年의 期間을 두고 約束한 事實 혹은 拋棄한 事實을 알려야 한다. 對答이 없음은 拋棄로 看做된다. 만약 그가 土地 開墾을 約束했으면, 再 耕作計劃書를 그의 答辯書에 添附해야만 한다.

同 土地가 賃貸되어 있을 경우, 所有權者는 만약 土地開墾權者가 명백히 혹은 默示的으로 拋棄한 경우 또는 上記 言及한 一年의 期間 동안 그가 效果的으로 土地를 開墾치 않은 경우, 補償金을 支給할 필요없이, 스스로 開墾키 위한, 혹은 第三者에게 賃貸하기 위한 措置를 다시 취할 수 있다. 所有者는, 이러한 再措置를 취하기 위하여, 그러한 權限이 주어진 날로부터 두달의 猶豫期間이 주어진다.

再取得된 土地는, 所有者에 의해 先取된 날로부터 一年내에 效果的으로 開墾되어야 한다.

上記 言及된 猶豫期間 동안, 모든 造林地는, 제 126조의 1의 規定이 適用되는 山林地域을 除外하고, 地方政府 許諾 下에 놓여있다.

所有者, 경우에 따라서는 開墾權者가 開墾을 拋棄했음을 告知했을 때 혹은 現 規定의 期間동안 土地가 效果的으로 開墾되지 않았을 때, 國家委員會令에 決定된 期間 內 豫定되었던 決定으로 州知事는 그를 確認해야 한다.

前述한 豫定되었던 決定은 所有權者, 開墾計劃을 提出함으로 그들의 要請을 분명히 한 要求者들과, 山岳地域의 경우, 地方機關 및 山林整備會에 알려져야한다.

제 125조의 4

州知事는 州政府 農業構造委員會(州政府 農業 指導委員會가 됨) 및 開墾計劃에 근거한 州政府 山林開發委員會의 意見에 따라 開墾許諾을 할 수 있다. 複數要請인 경우, 同 許諾은 居住하고 있는 農民에게 優先權이 있고, 上記 該當者가 없는 경우, 農業開墾者를 위주로 하는 者에게 주어진다. 州知事が 指目한 要請인과 所有主 사이에 妥協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결국 代理人이 제 125조의 2의 適用에 의하여

指目되었을 때, 地方支廳(註: 農村의 賃貸借 訴訟만 處理하는 特別法院)은 使用條件 및 完全한 權利에 適合한 새로운 農村法典 4권 1절의 規定들에 合致되는 小作料 總額을 確定하고, 原告의 資格을 가진 所有權者에게는 제 416조의 1에서 제 416조의 9까지의 規定들을 適用하도록 한다. 法院은 暫定的 押留를 命할 수 있다.

取消宣告下에서 土地는 決定이 執行된 날로부터 1年の 猶豫期間以內에 開墾되어야 한다.

開墾命令이 같은 所有者에 속하고 單一賃貸借契約 目的物의 開墾에 包含된 土地에 가해진 경우, 同 許諾은 兩者間의 合意의 境遇를 除外하고, 賃貸借契約을 超過할 수 없다.

만약 開墾許諾이 賃貸借契約中인 土地에 행해졌다면, 前記의 賃貸借契約은 補償金없이 開墾者에게 告知한 날에 종료된다. 賃貸借契約의 終了는 慣習法의 一般條件下에 履行된다.

開墾許諾의 取得者는 그가 發見한 土地狀態로 占有한다. 所有權者는 建築行爲의 모든 責任으로부터 免除된다.

제 411조의 32의 規定에도 불구하고, 公的으로 回復된 혹은 許可된 都市計劃에 따라 變更된 農業 用途의 土地에 가해진 開墾許諾인 경우, 剝脫된 賃借人에게 補償金이 合意된다. 그 撤回는 賃貸借契約의 3年 以前에 發生한다.

開墾 許諾의 對象인 財産이 共同相續인 경우, 각각의 共同相續人은 共同相續分 中, 所有權者에 의해 相續되거나, 土地臺帳上의 內容에 의해 혹은 그렇지 않은 경우, 모든 證憑에 依據하여 自己相續權에 該當하는 小作分을 받는다. 身元 및 居住地가 不確實한 權利者의 모든 小作料는 未成年者 財産 執行者에 의해 指名된 代理人에게 委託된다.

* 開墾치 않음으로 인한 賃借契約의 取消가 초래된 경우, 開墾權者가 그에게 주어진 1年の 猶豫期間동안 未耕作 狀態를 終了키위해 사과나무 뿌리를 뽑고 紛爭이 있

는 土地의 開墾을 施行하였다.(1990년 11월 21일 民事 3審)

제 125조의 5

一般委員會의 要求에 의해서던 혹은 그 自身の 發議에 의해서던, 州知事は 地方 土地整備委員會에게 重要한 理由없이 지난 3年 以上 未耕作 및 非效率的 利用 土地의 再開墾에 一般的 關心이 있는 地域調査를 명할 수 있다. 同 期間은 山岳地域의 경우 2年으로 줄어든다. 州知事は 一般委員會와 農業會議所에 意見의 形態를 빌어 地方 土地整備委員會의 報告書를 提出하고 未耕作 및 非效率的 利用 土地의 開墾過程이 開始될 範圍를 限定한다. 前述한 內容에 의하여 혹은 제 121조의 4의 規定에 의하여 範圍가 限定된 때, 地方(邑 또는 面 규모) 또는 地方間 土地整備委員會는 農業, 畜産業 혹은 山林業 開墾의 可能性 혹은 時機適切性を 판단한 土地狀態報告書를 작성한다. 地方(邑 또는 面 規模) 또는 地方間 土地整備委員會는 州知事に 의하여 同 土地에 명령되었으리라 여겨지는 山林木 種類의 播種 및, 栽培 禁止 혹은 規定에 대한 提案書를 書面으로 작성한다.

關聯者, 所有者, 耕作者는 農地整理에 의한 農土統合에 共通으로 包含된다.

州知事は 地方土地整備委員會의 意見書에 의거하여 이러한 상태를 명령한다. 이것은 매 3년마다 改定되며 關聯者 모두에게 公布된다.

草案은 關聯된 각 所有者, 만약 여유가 있을 경우, 각 開墾權者에게 通知된다.

同 草案의 通知는 제 125조의 3에 豫見된 조건 하에 놓여진다. 所有者나 共同 相續人의 住所나 身元이 不分明한 경우, 제 125조의 2의 規定들이 適用된다.

州知事は 國家委員會승에 의하여 決定된 條件을 考慮하여, 開墾許諾權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臨時受益者들이 告知할 수 있도록 公告를 시행한다. 만약 하나 혹은 수개의 權利要求들이 表明된 경우, 州知事は 同 事實을 所有者, 山岳地帶의 경우 土地整備 및 地方行政會에 알려야한다.

* 土地整備委員會는 2단계로 시행한다. 첫째, 地方 委員會는 회복할만한 일반적 가

치가 있는 未耕作 및 非效率的 利用 土地 項目들을 지목한다. 다음으로, 地方(邑 또는 面 규모) 또는 地方間 土地整備委員會는 耕作하는 것이 바람직한 土地의 리스트를 작성한다.

제 125조의 6

所有者 및, 만일의 경우, 開墾權者가 명백히 또는 암암리에 土地의 耕作을 斷念했을 때 혹은 제 125조의 3에 豫見된 期間 내에 그것이 명확히 시행되지 아니한 때, 州知事は 國家委員會 命令에 의하여 결정된 기간 내에 行政命令으로 同 事實을 確認하여야 한다.

州知事は 그러므로 州政府 建設委員會(州政府 農業 指導委員會가 됨)의 意見書에 根據해서 開墾計劃을 提出한 一人의 要求者에게 開墾許諾을 許容할 수 있다.

開墾許諾은, 풀이나 乾草의 收穫前 販賣 許諾과는 관계없이, 新 地方法典 4권 1절의 規定에 의한 全 小作權을 포함한다. 和議가 없는 경우, 調整法院(州 特別法院으로 一審判事가 主宰하며 賃貸人 代表側의 2명 陪席人과 小作人 및 半小作人 側의 2명의 陪席人, 기타 選出된 陪席人으로 구성됨)은 使用條件 및 小作料를 결정한다. 請求權을 가진 所有者에게는 地方法典 제 461조의 1에서 제 461조의 8까지를 적용한다. 근본적인 것은 取消條件으로, 1년 내에 開墾되어야 한다.

제 125조의 4의 3項에서 7項까지의 規定들이 適用된다.

* 開墾權은 調整法院(州 特別法院으로 一審判事가 主宰하며 賃貸人 代表側의 2명 陪席人과 小作人 및 半小作人 側의 2명의 陪席人, 기타 選出된 陪席人으로 構成됨)에 의하기 보다는 州政府에 의해 國家를 代表하여 附與된다. 判事의 仲裁가 訴願되는 경우는, 所有者와 開墾 支援者間 不一致가 있는 경우 뿐이다.

제 125조의 7

州知事は 合意로 이루어진 購買를 誘發할 수 있거나, 혹은 州政府 建設委員會(州

政府 農業 指導委員會가 됨)의 意見書가 없든 그 意見書에 根據해서든, 國家의 利益을 위하여, 특히 제 142조의 7 規定 내에서 農村 機構 및 土地管理會의 自由處分을 위하여, 제 125조의 6 첫 項에 언급된 土地의 開墾을 誘發할 수 있다.

제 125조의 8

山間地域에서 地域적으로 合法的인 農村 機構 및 土地管理會는 제 125조의 1에서 제 125조의 7에 豫見된 開墾許諾을 尤리하게 施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는 아래 項에 豫見된 期間 내에 다른 申請人이 없고 公共團體가 賃貸權者가 된다는 條件 하에서만 實行될 수 있다. 同 團體는 제 411조의 35의 規定들에도 不拘하고, 賃借權을 自由로이 二次 賃借人에게 讓渡할 수 있다.

만약 同 許諾이 合意된 경우, 同 會議는, 제 411조의 35의 規定들에도 불구하고, 제 142조의 4에서 제 142조의 5 規定에 豫見된 기간동안, 賃借權을 讓渡하여야 한다. 한편, 제 125조의 1에서 제 125조의 4까지의 規定들을 適用하면서 賃借가 결정된 경우, 讓渡 期間은 2年으로 還元된다.

賃借權의 讓渡 혹은 上記 언급한 二次 賃借는 優先적으로 既存의 農民 혹은 農業을 위주로 하는 者의 利益이 考慮되어야 한다.

* 形式書類의 과중함, 특히 放置된 土地의 開墾支援者와 所有者 사이의 人間關係는 立法者에 의하여 立法된 多様な 法條文들이 왜 그렇게 成功率이 적은지를 설명한다.

* 山間地帶에서는 仲裁役割이 SAFER에 맡겨진 것은 제 3자의 權利에 影響을 미칠 “시골” 特有의 자연적인 망설임을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構造改善이 任務인 同 組織은 共同作業을 遂行하고 새로운 分野를 設定한다. 公共團體에 의한 保證 하에, SAFER는 그들의 利得을 위해 開墾許諾을 訴願할 要素를 갖고 있다. 그들의 干涉은 그러므로 하나의 價値있는 例이다. 同 組織은 이웃한 開墾者의 利益이 發生하도록 하는 目的을 갖고 있다.

제 125조의 9

土地의 未耕作 및 非效率의 利用 評價 期間은 農村을 위하여 그리고 村落들과 連續하는 耕作性, 특히 地方政府 土地整備委員會의 意見에 의하여 命命된 리스트의 果樹 및 포도나무 등을 위하여 아마도 一年까지는 아니지만 줄어들 수 있다.

* 維持를 안함으로써 此後 開墾을 危殆롭게할 危險이있는 財産과 關聯하여, 土地가 未耕作 및 非效率의 利用으로 評價되어지는 一般的 期間은 아마도 줄어들 할 것이다.

제 125조의 10

土地가 耕作되지않고 明白히 낮게 評價되어지는 것으로 認定되는, 그리고 山林의 開墾이 可能하고 適切한 것으로 判定되는 작은 土地의 所有者는, 제 125조의 5에서 제 125조의 9까지의 規定들을 適用하면서, 地域委員會에 의하여 決定된 期間안에, 作業의 重要性을 고려하고, 山林所有權 地域센터의 意見에 根據해서 州知事의 承認에 의한 計劃에 따라, 開墾하여야 한다.

所有者에 의한 山林法典 제 101조에 言及된 健全한 經營保證書의 提出은 開墾義務를 充足한다.

開墾이 정해진 期間 內에 行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地方委員會는 所有者 혹은 權利者에게 告知, 身元이 不分明한 경우 市廳에 揭示하거나 公고로써, 그들이 開墾事業을 行하여야할 義務가 있음 혹은 暫定的 猶豫期間이 經過 後 最大 12月 內에 山林法典 제 101조에 언급된 健全한 經營保證書를 提出하여야 함을 알린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 山林法典 제 241조의 6과 제 124조의 1의 最終項에 規定된 條件에 따라 그 土地는 地方의 利益을 위하여 山林管理에 놓이든, 地方에 의하여 山林 團體에 수여되든, 山林管理 組合團에게 收用된다. 收用의 形態, 賠償金의 評價 規則 結局 支給 期間 및 條件은 公共利用 目的을 위한 收用法典의 規定들에 符合하여 決定된다.

* 山林 그룹에의 加入 혹은 山林管理 組合團 範圍안에의 包含은 開墾義務를 滿足시킨다고 보기에 充分하다.

* 地方을 위한 開墾은 狀況을 整理하려는 意志가 稀薄한 所有者에게 發送 後에야 비로소 介入될 수 있다.

제 125조의 11

國家 公共團體 및 公共機關, 農地整備 및 地方機構會는 제 515조의 36에서 제 515조의 38에 豫見된 條件 하에, 그들이 上記 勞動의 費用으로 都給받은 未耕作 土地를 開墾하는 作業을 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參與 시킨다.

제 125조의 12

제 125조의 1에서 제 125조의 4에 豫見된 未耕作 및 非效率的 利用 狀態의 確認과 關聯한 論爭은 調整法院(州 特別法院으로 一審判事가 主宰하며 賃貸人 代表側의 2명 陪席人과 小作人 및 半小作人 側의 2명의 陪席人, 기타 選出된 陪席人으로 構成됨)에 回附된다.

제 125조의 5에서 제 125조의 7의 規定들을 適用함으로써, 未耕作 및 非效率的 利用 土地 狀態와 같은 規定을 따라서 地方行政官에 의하여 認定된 開墾 許諾과 關聯한 論爭은 行政裁判所에 回附된다. 行政裁判所가 實行猶豫를 命令할 수 있다.

* 未耕作의 確認效力에 관한 宣告는 司法裁判部에 속하는 것이다. 行政審判은 버려진 土地의 回復과 關聯된 規定의 適用과 거리가 있는, 原來의 缺陷이 州政府 山林管理委員會 決定과는 反對로 要求된 경우에 諮問되어진다.(1984년 11월 14일 에라솔 社 對 마스 事件 民事 1審.....)

제 125조의 13

본장의 規定들은 國有地法典 제 27 乙章 및 제 27 丙章 規定들을 適用하므로서

國家에 歸屬되지 않고 所有者가 알려지지 않은 不動産에 適用된다.

제 125조의 14

特別登錄 및 印紙稅 制度는 아래 要約된 一般租稅法典 102章 첫 項에 의한다:
“讓渡契約, 證明書, 調書 및 一般的으로 段階區分과 地方法典 제 125조의 1에서 제 125조의 13까지 目的한 未耕作 및 非效率的 利用 土地의 移轉과 關聯된 모든 行爲는 印紙稅에서 免除되고, 1020장의 規定에 의한 경우, 登錄에서도 免除된다.”

제 125조의 15

제 125조의 1에서 제 125조의 14 까지의 適用 條件은 必要한만큼 國家委員會令에 의해 規定된다.

相續된 土地의 農業開墾의 單位 保護를 目的으로 한 法律의 一般的 內容으로서, 우리는 1982년 制定된 法 第 203호 49장 1절 및 2절을 回想할 수 있다. 결국, 本人에 의하던 그 家族에 의하던 直接 開墾 또는 耕作된 土地財産 所有者의 死亡의 경우, 相續과 함께 그 土地위에 直接行爲를 實行했고 實行한, 直接 開墾者 資格 혹은 農業 開墾을 主로한 資格으로, 相續人들은 다른 相續人의 部分도 包含하여 開墾을 繼續할 權限을 갖고 있고 相續이 開始된 날로부터 地方 賃貸借契約法에 依據하여 그곳의 小作人으로 여겨진다. 한편, 救濟策은 보잘 것 없다. 왜냐하면 一般 相續法에 따라 다른 公同 相續人에게 財産配當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지 必要한 條件에 符合하지 못한 公同 相續人들의 相續部分에 대하여 義務的 賃貸契約의 方法에 의한 開墾의 一時的 維持를 許諾한다.

제 331조의 12

제 331조의 2에서 제 331조의 4까지의 規定을 適用하면서, 開墾許諾申請이 接受되거나 혹은 必要한 豫備 意思表示의 表出이 되지않은채 土地가 開墾되었음이 立證되었을 때, 州知事는 關心者에게 開墾許諾申請 혹은 必要한 豫備 意思表示를 提出할 것을 督促한다. 督促에 의한 猶豫期間中 關心者에 의한 申請 혹은 意思表示가

없는 경우, 州知事は 제 331조의 14의 規定들을 適用하도록 檢事에게 同 書類를 移送한다.

決定的인 개간허가 拒否에도 不拘하고 土地가 開墾되었음이 立證되었을 때, 州知事は 違反行爲者에게 一定한 期間內에 同 土地의 開墾을 中止할 것을 督促한다. 同 期間이 지난 後, 關聯者가 督促에 대하여 認定치 않을 경우, 州知事は 제 331조의 14의 規定들을 適用하도록 檢事에게 同 書類를 移送한다. 土地가 不規則的으로 그 所有者에 의하여 開墾될 때, 州知事は 그에게 現行法 및 立法 規定에 合致되는 開墾保障을 할 것을 督促한다.

만약, 督促介入의 進行동안 그해 耕作期가 經過했다면, 새로운 開墾權者는 指名되지 않는다. 土地開墾에 關心이 있는 모든 自然人 혹은 農業 目的으로 登錄된 모든 會社는 調整法院(州 特別法院으로 一審判事가 主宰하며 賃貸人 代表측의 2명 陪席人과 小作人 및 半小作人 側의 2명의 陪席人, 기타 選出된 陪席人으로 構成됨)에 上記 土地의 開墾에 同意함을 要求 할 수 있다. 申請者가 多數인 경우, 同 調整法院은, 各各의 計劃된 作業의 利益과 關聯하여, 構造에 관한 州政府의 基準計劃에 決定된 優先權들을 考慮한 決定을 내린다.

同 調整法院이 土地 開墾 許諾에 同意 했을 때, 使用權 및 現行法典 4卷 제 1 表題의 規定에 副應하는 小作料 總額의 條件을 定한다.

* 州의 農業指導委員會에 의하여 認定된 開墾者로부터 不正한 狀態의 所有者에게로의 代替는 農土의 調和로운 發展을 助長하는 가장 確實한 方法을 構成한다. 農夫의 땅에 대한 執念, 그리고 더운 氣候 때문에, 適用의 어려움들은 排除될 수 없다.

* 틀린 所有主에게 負課된 賃貸借 金額은 小作料 狀態로 놓인다.

제 331조의 13

決定的 開墾許諾의 拒否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土地를 開墾 할 것인, 제 331조의 8에 豫見된 조건에 맞지 않을 것임으로, 또는 제 331조의 12에 副應하는 猶豫期間內에 豫備 意思表示를 提出 하지 않을 사람은 農業 과 關聯된 經濟的 性格의 어떤

公共支援의 惠澤도 누리지 못 할 것이다.

* 農村青年 定着 補助金, 器具改善計劃, 國境 農村 組織 範圍 內에서 實行되는 多様な 補助에 이르는 特別 信用機構에 의하여 認定된 利子が 割引된 貸付등에 의한 接近은 構造 調整과 關聯된 立法 違反者에게 禁止된다.

제 331조의 14

I. a) 開墾許諾 申請에 應募하는 것과 제 331조의 2에서 제 331조의 4의 規定들에 副應하는 豫備 意思表示를 提出할 것을 漏落할 모든 사람은 1000프랑에서 1500프랑까지의 罰金刑이 처해진다. b) 意識的으로 開墾許諾申請 혹은 豫備 意思表示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틀린 情報를 該當 機關에 提供하려는 모든 사람이나, 豫備 意思表示를 提出할 것인, 즉 計劃된 作業이 開墾許諾制度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2000프랑에서 100000프랑까지의 罰金刑이 處해진다.

II. 決定的 開墾許諾 拒否에도 不拘하고 開墾하려는 모든 사람 혹은 제 331조의 12에 豫見된 督促후 豫備 意思表示를 提出하지 않을 것인 모든 사람은 2000프랑에서 100000프랑까지의 罰金刑이 처해질 것이다.

III. 輕犯罪 裁判所는 現 章의 規定들과 함께 犯罪 行爲 狀態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不法 또는 禁止된 作業을 終了할 目的의 期間을 준다. 輕犯罪 裁判所는 一日 遲延時 50프랑에서 500프랑의 延滯料 決定을 더할 수 있다.

延期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 宣告된 延滯料는, 단지 아래 段에 豫見된 경우 修正될 수 있음, 命令이 完璧히 實行된 날까지의 期間 終了로부터 起算된다.

만약 期間滿了年에 그 實行이 發生하지 않았다면, 同 裁判所는, 檢事(集合的 의미)의 要請에 根據하여, 一個 혹은 數個의 先取權, 延滯料 總額을, 現 章 첫段에 豫見된 最高額까지도, 取할 수 있다.

同 裁判所는, 禁止되거나 不法 開墾의 讓渡가 實行될 것이고 債務者가 그에게 주

어진 期間을 지키는 것이 그의 意志와 無關한 狀況에 의하여 妨害받았음을 證明 할 때, 延滯料의 全部 또는 一部の 支給을 許諾 할 수 있다.

延滯料는 國庫利益으로 國家 收益의 徵收와 關聯된 規定에 豫見된 條件으로 徵收된다.

5-3. 農地의 一子相續制 (상속으로 인한 농지세분화방지제도)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 농지의 세분화방지를 위한 입법적 대비

농업에 있어서 그 경영규모가 적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필요조건인 하나 이고, 또 우리나라와 같이 농지 등 농업재산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기 어려운 자작농 중심주의 하에서는 농지소유규모의 적정화가 곧 농업경영규모의 적정화를 의미하게 된다.

그런데 현재의 상속법 하에서는 한 농업인이 사망할 때 그가 소유하던 농지를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같은 비율로 승계하는 균분상속을 하게 되므로 (다만,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의 상속분의 1.5배. 민법 제1009조)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농지는 상속에 의하여 세분화 될 수 밖에 없다.

여기에서 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세분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이 필요하게 되며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것이 이른바 一子相續制, 즉 자녀 중의 1인이 단독으로 농지를 상속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자녀간의 평등한 상속권을 침해할 요인이 있어서 선불리 채택할 것이 못된다.

이 연구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으로 인한 농지세분화 문제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입법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내용

이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먼저 농지상속과 관련된 우리나라 농업법의 내용을 검토한 후,
- (2) 이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독일, 스위스, 일본의 경우를 들어 살펴보고,
- (3) 끝으로 상속으로 인한 농지세분화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의 입법정책을 제시해 본다.

II. 상속으로 인한 농지세분화방지와 우리나라의 농업관계법

II. 상속으로 인한 농지세분화방지와 우리나라의 농업관계법

1. 1949년의 구 농지개혁법

우리나라 최초의 농지관계법인 농지개혁법에서는 그 제15조에서 「분배 받은 농지는 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가산으로서 상속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이 조문만 보면 분배받은 농지는 「가산으로서 상속한다」고 하였으니 적어도 분배농지인 경우는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자녀들에게 나뉘어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민법과 부동산등기법 등관계에서 「가산」제도를 뒷받침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분배농지를 비롯한 모든 농지는 농업인 개개인의 다른 재산과 똑같은 개인재산으로 인정되어 상속·증여·양도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결국 이 조문은 사문화되었고, 그 결과 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세분화는 사실상 일찍부터 방치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2. 1967년의 구 농업기본법

농업관계법의 헌법이라 불리웠던 구 농업기본법(1967-1999) 제19조에서는 「농업경영의 세분화 방지」라는 제목 하에 「정부는 농업경영의 적정규모를 유지하기 위하여 농지의 세분화를 방지함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었다.

이는 1961년의 일본 농업기본법 제16조를 모방한 것인데 그 내용은 조금 달랐다. 즉, 일본법 제16조는 「국가는 자립경영을 하거나 자립경영을 하고자 하는 가족농업경영 등이 세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산의 상속에 있어서 종전의 농업경영을 되도록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계승하여 담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농업자산의 一子상속을 촉진하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법 제19조는 농지의 세분화방지라고만 하였지 「상속에 의한」 농지의 세분화 문제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었다. 요컨대 우리 농업기본법은 상속제도를 농지세분화의 주된 요인으로 보지는 않은 것 같다.

3. 1994년의 농지법

1994년에 농지개혁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농지법 제21조에서는 「농지소유의 세분화방지」라는 제목 하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농지소유가 세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농지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일괄하여 상속·증여 또는 양도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하고 있다.

농지법 제21조의 규정을 구 농지개혁법 제15조와 비교해 보면

- (1) 시대의 변화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지만, 농지법에서는 분배받은 농지와 분배받지 않은 농지를 구별하지 않으며,
- (2) 분배 농지를 가산으로 보는 입장을 청산하였다.
- (3) 농지법은 또 농지소유의 세분화 방지를 정면으로 표방하고, 그 방법으로서 「일괄하여 상속·증여 또는 양도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다. 여기서 상속 이외에 증여 또는 양도를 아울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상속제도와 관계가 없는 농업법인을 주로 겨냥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자연인인 농업인의 경우도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 (4) 농지법에서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규정은 농지개혁법에 없던 것이다.

4. 1999년의 농업·농촌기본법

농업기본법 (이하 ‘구법’이라 한다)이 농업·농촌기본법(이하 ‘신법’이라 한다)으로 바뀌어지면서 구법 제 19조의 내용도 달라졌다. 즉, 신법 제 23조는 「농업경영규모의 적정화 및 농업경영자산의 유동화의 촉진」이라는 제목 하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농업경영규모의 적정화 및 농업경영자산의 유동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법에서는 구법과 달리 농지의 세분화 방지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농업경영규모의 적정화」라고만 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그 속에는 농지세분화의 방지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속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구법이나 신법의 태도가 동일하다.

5. 요약·평가 및 대책

<요약>

- (1)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법에 의하면 농지가 상속으로 인하여 세분화될 가능성

이 충분히 있다.

- (2) 이 문제를 우려하여 마련된 규정들이 1949년의 구 농지개혁법 제15조와 1967년의 구 농업기본법 제16조에 있었는데, 그 내용은 약간의 변화를 하면서 1994년에 제정된 농지법과 1999년에 제정된 농업·농촌기본법에서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
- (3) 즉 현재의 농업헌법격인 농업·농촌기본법의 제23조에서 정부는 「농업경영의 적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농지법 제21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소유의 세분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농지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일괄하여 상속·증여 또는 양도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다.

<평가>

- (1) 농업·농촌기본법 제23조는 선언적 성격을 띤 규정이다. 선언적 규정은 그 실천방법을 제시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수반되어야만 실효성을 띠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에 관한 뚜렷한 후속입법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또 기본법 제23조는 「농업경영의 적정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 개념이 너무 포괄적·추상적이라는 흠을 지적할 수도 있지만 이 법의 성격이 기본법이라는 점에서 이해를 한다면 여기에 농지상속문제도 포함될 수 있어서 큰 문제가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 (2) 농지법 제21조는 농지상속문제를 그 대상의 하나로 삼고 있으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데에 그쳐서 그 이상의 시책에 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일본의 농업기본법 제16조와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있다. 또 그 지원의 방법에 대한 후속입법이 마련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

<대책>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어떠한 형태로든 되어야 한다. 그 방법에 관하여는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본 후에 IV에서 제시하기로 한다.

Ⅲ. 상속으로 인한 농지 세분화방지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A. 독일의 법제

농지세분화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특별법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히 발달한 나라는 독일이다. 다음에서 이를 개관해 본다.

1. 일자상속법

가. 서 설

독일에는 고래로부터 농지에 상속에 관하여는 일자상속법(Anerbenrecht)과 분할상속법(Realteilung)의 두가지 관행이 행하여지고 있었다. 일자상속의 관행은 투링겐, 라인지방과 기타 약간의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독일 즉 독일전체의 약 5분의 4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행하여 졌다.

이러한 일자상속관행은 매우 오래된 관행이고 또 농지의 세분화방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으므로 이 관행이 시행되던 지방의 농민들은 19세기 말 독일민법을 기초할 때에도 (이 법은 1900. 1. 1부터 시행됨) 이를 민법 중에 규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학자들 중에도 이에 찬성하는 자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 일자상속제를 인정하기로 하였지만 그렇다고 이를 확일적으로 시행하기도 어려워 민법시행법 제64조에서 각 주(Land)는 토지소유자의 유언처분권을 제한하지 않는 한 임의로 일자상속법을 제정하는 권능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일자상속법이란 피상속인인 자작농민이 사망하거나 은거를 할 때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일자상속인으로서 그 농지를 몰아서 상속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는 일자상속인이 상당한 보상을 하는 것을 규정하는 「농지에 관한 특별상속법」이다.

일자상속법에는 두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상속을 법정상속으로 하고 피상속인이 생존 중 또는 사망시에 하등의 유언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직접 또는 법정일자상속법(dilektes oder obligatorisches Anerbenrecht)이라 한다.

다른 하나는 당사자가 일자상속법의 적용을 희망하고 미리 그 농장을 일자상속농장으로서 일정한 公簿(Höferolle)에 등기를 해두고 별단의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

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간접 또는 임의(任意)일자상속법(indilektes oder fakultatives Anerbenrecht)이라 한다. 전자보다는 후자를 따르는 경향이 강하였다.

나. 일자상속법의 주요 내용

(1) 적용범위

가) 일자상속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장은 농지 자체는 물론이고 그 위에 있는 건물(주택포함), 경영자본재 등을 포함한다.

나) 농장의 규모에 관하여는 입법례가 구구한데 일반적으로는 독립의 생계를 유지하기에 족한 면적의 농장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그 이하의 과소농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면적의 상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거대농장(騎士농장)에도 적용되었다.

(2) 일자상속인의 자격과 상속순위

가) 피상속인은 공동상속권자 중에서 일자상속인을 자유로 선택할 수 있다.

나)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이 규정하는 상속순위에 따른다. 법정상속인은 단지 피상속인의 자손인 직계비속에 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법의 효과를 한층 더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 존속친과 형제 및 그 자손에게까지 확장하고 가끔 잔존하는 배우자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 女系는 이를 배제하지는 않지만 동일 친등 내에서는 남계를 우선하고 있다.

직계비속의 경우는 보통 장자가 우선하지만 末子가 상속하는 예도 가끔 있다.

(3) 농장가액의 평가

가) 농장가액의 평가에 관하여는 독일민법 제20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통례이다. 즉 보통의 경영방법으로 농장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순수익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는 데 예컨대 베스트파펜에서는 순수익의 25배, 하노바에서는 20배를 농장가격으로 한다. 이와같이 순수익을 기준으로 농장가액을 산출하게 한 것은 일자상속인의 보상의무의 이행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나) 피상속인이 부채를 지고 사망한 경우도 농장가액평가에 영향을 준다. 이 경우는 먼저 농장 이외의 유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그것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자상속인이 이를 인수하고 그 대신 그 부채액을 농장가격에서 공제하고 또 후술하는 일자상속인의 「선취득분」을 공제하며 나머지 농장가액을 공동상속재산으로 하여 일

자상속인과 기타의 공동상속인들이 분배를 함으로써 각자의 상속분을 정한다. 이에 따라 일자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보상액을 정하게 된다.

(4) 일자상속인의 선취특분

일자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경영을 인수하고 경영에 필요한 가축을 구입하고 신 경영방법을 채용하고 노임과 조세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다액의 경비를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런데 상속개시시에 다른 공동상속인인 형제들에게 다액의 보상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경비를 마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자상속인에 대하여는 「선취특분」(Voraus)의 권리를 주어, 일자상속인을 우대함으로써 농장의 수익성유지에 노력한 것이다. 이 취특분은 농장평가액의 3분의 1이라고 정하는 경우가 많다.

(5) 공동상속인에 대한 보상

가) 일자상속인은 상속하는 농장의 수익으로써 점차로 공동상속인에게 대한 보상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일정액 이상이 되는 상속분에 대하여는 연부금으로 지급하게 하고 있다. 예컨대 1898년의 베스트파렌의 일자상속법에서는 공동상속인은 자기의 상속분이 100마르크 이하가 될 때에는 일자상속인에 대하여 전 보상액을 즉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100마르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25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부금(年賦金)으로서 지급하게 되어 있다.

공동상속인이 이를 불편하게 생각할 때에는 언제든지 6개월 전에 예고하고 보상금의 전액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주(Land)의 토지금융조합(Landschaft)이 일자상속인에 대하여 장기연부자금을 대출하여 그 보상액을 지급하기 쉽게 해 준다.

나) 일자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성년에 이르기까지 상속농장에서 자기의 능력에 따라 공동노동에 종사하는 대가로써 일차상속인으로부터 그 신분에 맞는 부양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일자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생존 배우자에 대하여서도 그 신분에 맞는 부양을 할 의무를 진다.

다. 일자상속법에 대한 비판

위와 같은 내용을 가진 일자상속법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었다.

(1) 공동상속권자의 불이익

공동상속권자는 일자상속법으로 인하여 그 농장을 떠나게 되고 생활의 목적 기반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보상으로 받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다른 적당한 직업을 가질 기회가 없는 경우에는 무산자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몇몇 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이 법으로 인하여 실제로 무산자가 된 공동상속인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2) 일자상속인의 과도한 부담

일자상속인의 보상의무는 되도록 과중하지 않게 하도록 배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자상속인은 과도한 부채를 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농장의 평가가 순수익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농지의 거래가격인 시장가격은 순수익가격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이 농장의 평가에도 영향을 주어 고가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에 있어서는 19세기 말의 농업공황에 의하여 농장수익이 경감되어 공황 전에 높은 가격으로 농장을 상속한 자는 심히 과도한 부채를 지기에 이르렀다.

2. 나치정권의 세습농장법

가. 서 설

독일의 나치정권은 1933년 9월 29일 그 유명한 독일국 세습농장법(Reichserbhofgesetz)을 공포하고 이를 동년 10월 1일부터 전 독일국에 시행하였다. 나치정권에 의하여 시행된 가장 철저한 농업정책의 하나였다.

이 법은 전문(前文)과 7장 61개조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前文)에는, 『독일국 정부는 옛 독일의 상속관습의 보존에 의하여 농민계급을 독일민족의 혈액의 원천(Blutquelle des deutschen Volkes)으로서 유지하려고 한다.

농장은 혈족의 상속재산으로서 자유로운 농업인의 수중에 이를 영구히 두기 위해 과도한 부채 및 상속시의 분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최소한도로 1농가의 생계를 유지하기에 족한 농장, 최고한도는 125헥타의 면적을 갖는 농업 및 임비용 소

유지가 농업인인 능력을 갖는 1인에게 속하는 때에는 이를 세습농장(Erbhof)이라 한다.

세습농장의 소유자를 농업인(Bauer)이라 한다. 농민이 될 수 있는 자는 독일 종족 또는 독일 종족의 혈통을 갖는 명예로운 독일국민에 한한다.

세습농장은 분할됨이 없이 일자상속인에게 넘어간다.

공동상속인의 권리는 농업인의 기타의 재산에 한정된다. 일자상속인이 아닌 비속은 농장의 힘에 상응하는 직업교육 및 일감을 받는다. 공동상속인의 그의 귀책 사유없이 곤궁에 빠질 때에는 고향에 돌아갈 권리(Heimatzuflucht)를 준다.

일자상속권은 사인(死因)처분권으로 이를 배척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세습농장은 원칙적으로 양도되거나 부담을 과해서는 안된다.

이에 이 법을 공포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세습농장의 주요 내용

(1) 제1장. 세습농장 (제1조 ~ 제10조)

세습농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 ① 농장이 자연인의 단독 소유에 속할 것
- ② 농장에서는 일정한 원시생산 (농업, 임업, 포도재배, 야채 및 과수재배를 의미함) 이 행해지고 여기에는 농가가 있을 것
- ③ 농장은 일정한 범위의 면적을 가질 것
- ④ 농장은 농민능력을 가진 소유자 자신에 의하여 경영될 것

(2) 제2장. 농민(제11조 ~ 제18조)

세습농장의 소유자만을 농업인(Bauer)이라 부른다. 기타 농지나 임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이를 농업자(Landwirt)라고 부른다. 농업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① 독일 종족 또는 독일 종족의 혈통을 부계·모계 모두 갖는 자
- ② 독일 국적을 가진 자
- ③ 명예가 있는 자
- ④ 농장을 적절히 경영할 능력이 있는 자
- ⑤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은 자

(3) 제3장. 일자상속법에 의한 상속(제19조 ~ 제36조)

세습농장의 상속은 분할하지 않은 채로 법률상 당연히 일자상속인에게 되어진다. 일자상속인 이외의 공동상속권자는 세습농장 이외의 농업인재산에 대하여 일반 법규에 의하여 상속권을 갖는데 불과하다. 이 점은 종래의 일자상속법과 크게 다른 점이다. 즉 세습농장법에 의하면 일자상속인은 상속되는 세습농장 가액으로부터 공동상속권자인 형제·자매에게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일자상속인은 공동상속권자인 형제·자매에 대하여 그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 적절한 부양과 교육을 할 의무를 진다. 즉 그들에게 농장의 지위에 상응하는 직업교육을 시켜 독립을 할 때(여자는 혼인을 할 때)에는 농장의 능력에 알맞은 일감을 줄 의무를 부담한다. 또 그들이 그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곤궁해질 때에는 상당한 노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농장에 돌아올 수가 있다.

피상속인의 생존배우자라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평생동안 농장에서 부양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에 의하여 일자상속인이 될 자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 ① 피상속인의 남자. 남자가 사망한 때에는 남자인 그의 직계비속
- ② 피상속인의父.
- ③ 피상속인의 형제. 형제가 사망한 때에는 남자인 그의 직계비속
- ④ 피상속인의 여자. 여자가 사망한 때에는 남자인 그의 직계비속
- ⑤ 피상속인의 자매. 자매가 사망한 때에는 남자인 그의 직계비속
- ⑥ 피상속인의 여성비속 및 그의 자손

동일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지방의 관습에 따라 장자상속제 또는 딸자상속제에 의하되, 일정한 관습이 없을 때에는 딸자상속제에 의한다.

피상속인은 유언 또는 상속계약으로 법정순위에 불구하고 이를 전부 제척하고 그 이외의 자를 일자상속인으로 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1농민은 1세습농장만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상속인이 이미 세습농장을 갖고 있는 때에는 일자상속인이 될 수 없고, 또 농민이 다수의 세습농

장을 남긴 때에는 일자상속인이 되는 자는 각각 상속순위에 따라 1세습농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 제4장. 세습농장의 양도 및 부담의 제한·강제집행(제37조~제39조, 제59조)

세습농장을 영구적으로 농가의 수중에 확보하기 위하여 세습농장은 원칙적으로 이를 양도할 수 없게 하였고 또 채무를 부담할 수 없게 하였으며 부채가 발생할 수 없게 배려하였다. 다만 통상의 경영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종물의 처분은 예외이다.

세습농장에는 종래의 家産法의 특질인 압류면제의 특권을 부여한다. 즉 세습농장에 대하여는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5) 제5장. 일자상속관청(제40조 ~ 제51조)

이 법의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1심으로서의 일자상속법원(Anerbengerichte)을 구재판소내에, 제2심으로서의 세습농장법원(Erbhofgerichte)를 각 주(Land)의 상급지방법원 내에, 제3심으로서의 독일국세습농장법원(Reichserbhofgerichte)을 베를린에 둔다.

농민은 배심원으로서 재판에 관여한다.

(6) 제6장. 세습농장등기부 및 토지대장(제52조, 제53조)

모든 세습농장은 직권으로 세습농장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한다. 이 등기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일자상속법원이 이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등기는 권리천명적 의의를 가질 뿐, 권리창설적 의의는 이를 갖지 않는다.

(7) 제7장. 보칙(제54조이하)

보칙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 ① 구·주 농민지도자의 장소적 관할
- ② 상속재산세 및 토지취득세의 면제
- ③ 이 법의 해석규정(이 법의 적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는 법관은 이 법 前文에 나타난 목적에 적합하도록 재판을 하여야 한다)
- ④ 이 법의 효력발생 등에 관한 규정

3. 2차대전 후의 농장일자상속법

세습농장법은 1947년 2월 20일 연합군관리위원회법 제45호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그런데 그 후 브레멘 헛센 바덴 뷔텐베르그 주 등에서는 1933년 이전에 효력을 갖고 있던 일자상속법을 부활해서 시행하게 되었다. 영국 점령지구의 4개주 즉 슈레스비히 홀슈타인, 함부르크, 니더 작센, 노르드라인 베스트파렌 주에서는 1947년 영국군에 의한 농장일자상속법(Höfeordnung)이 공포되었다. 이 법은 1933년 이전의 법전통과 달리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강행법적인 일자상속제를 채용하고 있다.

북서 독일 4개주의 농장일자상속법은 1976년에 근본적으로 개정을 함으로써 이에 헌법상 및 농업구조상의 사정의 변화에 적응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는 분할상속관행이 지배적이었던 라인란드 활쓰 주가 1953년의 농장일자상속법에 의하여 임의법적인 일자상속법제를 도입함으로써 농장일자상속법은 제2차 대전 후 그 적용영역을 일층 확대해 갔다.

이와 같이 독일연방공화국에는 현재 농지상속에 관하여 연방의 통일적인 규정은 존재하고 있지 않고 매우 다양하다. 그렇게 된 주요한 이유는 입법권한이 연방과 주 정부 사이에 나뉘어져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

어떻든 독일의 북서 4개주의 농장일자상속법은 비록 4개주에서만 적용이 되기는 하지만 연방법에 속하는 것으로서(부분연방법) 지금 독일의 일자상속제를 대표하고 있다.

B. 스위스의 일자상속제

가. 개 설

1930년대 초에 전세계는 공황의 물결에 휩쓸리게 되었는데 1933년경부터는 스위스도 그 영향을 받게 되었다. 특히 농민들이 이로 인하여 입은 타격은 막대하였다.

스위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산물의 가격유지나 농민의 보호, 농지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의 응급입법을 하게 되었는데 특히 알프스의 한냉지대의 농민에 대한 배려로서 민법을 개정하여 일자상속제를 실현하려는 조치까지 택하게 되었다.

나. 일자상속제를 실현하기 위한 민법의 개정

스위스는 1940년에 농업가산 결정에 관한 연방법(Bundesgesetz über die Entscheidung landwirtschaftlicher Heimwesen vom 12. Dez. 1940.)으로 민법 제 619조 이하의 다수 조문을 개정하여 (1947년부터 효력을 발생) 일자상속제를 실현할 수 있게 하였다.

개정된 스위스 민법의 방법은 독일과는 아주 다르다. 즉 스위스 민법은 균분상속에 의한 농지세분화의 방지를 위해서 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농지를 일괄하여 승계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일단 균분상속을 한 뒤에 유산분할을 하면서 농지를 일괄해서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인수하게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즉 농지의 소유 내지 경영의 분할방지를 상속의 문제로 하지 않고 유산분할방법의 문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는 상속제도로서는 어디까지나 균분상속으로서 일자상속제도는 아닌 것이다.

C. 日本의 입법상황

1. 일자상속제 도입 시도의 실패 (1950년대)

일본에서는 2차대전 후 친족상속법의 전면 개정시 (1947년) 호주제도 및 가독상속제(호주상속제)의 폐지와 함께 재산상속이 자녀균분상속제로 바뀌었는데 이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농지세분화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래서 상속법 개정시에 농지에 관해서는 특례를 인정하자는 주장도 있었는데 민법에서는 일단 균분상속제를 관철하고 농가의 농지상속에 관하여는 특별입법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상속법 개정이후 농가의 농지 상속에 관한 특별입법안이 두 차례나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모두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고 말았다.

이 법안의 내용은, 농지 등 농가재산은 농업경영자가 지정하는 상속인이 일괄하여 승계하고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는 금전적 보상을 해주자는 것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주요한 이유는 이 법이 제정되면 농가의 경우 가독상속(우리민법에서 1990년대말까지 존속하던 호주상속에 해당함)이 부활하는 결과가 되고, 또 농업승계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하므로 그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어 농업경영을 압박한다는 것이었다.

이 후에도 농가의 상속에 관한 여러 가지 의론이 있었지만 특별입법은 되지 못하였고 다만 1961년에 농업기본법을 제정할 때 「국가는 자립경영을 하거나 자립경영을 하고자 하는 가족농업경영 등이 세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산의 상속에 있어서 종전의 농업경영을 되도록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계승하여 담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16조)는 한 조문을 넣을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농업정책이 입안되고 그에 따른 입법이 된 것은 있다.

2. 균분상속제하의 농가상속실태와 입법의 방향 (1960, 70년대)

가. 자작농 유지창설자금융통법의 제정과 상속법의 개정

(1) 상속법의 개정으로 균분상속제가 실시되어 농업경영규모가 세분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이론적으로는 일단 수긍할 만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도 그렇게 될 것인가를 입증하는 자료는 없었다. 그래서 日本私法學會는 1951년부터 1953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전국적인 농가상속실태조사를 해 보았는데 대상농가 2241호 중 상속으로 인하여 농지가 분할된 농가는 단 4호뿐이었다. 이것은 상속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농가상속의 경우 실제로는 균분상속이 아니라 일자가 단독상속을 하는 것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특별법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2) 그런데 이 조사는 농가의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의 유산분배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농지 등 재산의 생전증여는 조사대상으로 하지 않았었다. 또 그 해석도 농지가 대부분 일괄하여 승계되고 있다고 하는 현상을 이유로 다른 요인에 대한 분석없이 농가에서는 단독상속이 지배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이것은 농지상속실태를 조사하는데 매우 중대한 결함이 되었으며, 그래서 몇 개의 개별적인 상속실태조사가 다시 실시되었다.

(3)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조사결과에 의하면, 생전증여를 통해서 농지 등 농가 재산이 농업승계인 이외의 공동상속인에게도 분배되어지는 실례가 나타나서 단독상

속이 반드시 지배적이라고만은 할 수 없으며 나아가 농가상속의 형태는 계층이나 지방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농가의 경영주의 세대교체를 통해서 농지의 세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사실 등이 밝혀졌다.

(4)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한 몇 개의 입법이 이루어졌다. 그 법이 1955년의 「자작농유지창설자금융통법」 제정과 1958년의 상속세법 개정이다. 전자는 농업승계인인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농지 등의 상속분을 양도받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후자는 농지를 단독으로 상속함에 있어서 세금을 감경해 줄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나. 일괄생전증여 장려를 위한 세법상의 조치와 농업후계자육성조치 등

1961년의 농업기본법 제정 후 일본 정부는 분할 상속을 피하기 위한 특별입법을 다시 고려하였지만 그보다도 우선하여 농가상속의 실태를 조사할 필요를 느끼게 되어 1962년 농정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전국적인 조사 (660호)를 실시하게 하였다. 여기에서는 유산의 승계 뿐만 아니라 생전행위에 의한 승계 즉 생전증여까지도 조사하였고, 또 농지 뿐만 아니라 생계자본까지도 조사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① 농지의 세분화는 유산분할보다는 생전 증여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② 농지이외의 재산 특히 금전적인 재산의 분여가 생전증여의 형식으로 널리 행하여져서 농가의 일괄상속이 지배적이라고도 할 수 없게 되었다. ③ 또 농지분할은 상속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유산분할금지를 강제하는 입법은 농업경영세분화 방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이와 같이 ① 상속이나 생전증여를 통하여 농업경영의 세분화가 이루어지고, ② 농가의 젊은이들의 도시 진출에 따라 농업후계자가 희귀해진다는 점에 주목하여 두 가지 방향의 입법조치가 행하여졌다.

(1) 일괄생전증여장려를 위한 조세감면조치 (1964)

다른 하나는 농업승계인에 대한 일괄생전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및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를 감면해 주는 조치이다.

유산분할에 의한 농지의 세분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일괄하여 그 재산을 농업승계인에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증여

는 상속에 의한 취득의 경우보다 모든 점에서 세의 부담이 크므로, 일정한 요건아래 농지를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인 농업승계인에 생전증여하고 그 승계인이 농업을 계속 경영할 때에는 상속세·등록면허세와 함께, 부동산취득세도 면제한다는 규정을 1964년 조세특례조치법 중에 신설하였다.

(2) 농업후계자육성자금제도 및 경영이양연금제도의 창설

하나는 1964년 농업개량자금조성법의 개정을 해서 농업후계자육성자금제도를 창설하고 농업후계자에게 농업경영담당자로서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해 주는 것이었다.

또 1970년에는 농업자연금기본법을 제정하고, 통상의 노령연금 외에 경영이양연금제도를 창설하였다. 이 경영이양연금은 농업의 경영주가 65세에 달하기 이전에 농지 등 재산을 전부 농업후계자에게 양도 또는 대부하면 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연금에 덧붙여 주는 것이므로, 연금수급 연령에 달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된다. 이 제도는 영농후계자의 확보와 농업경영자의 저령화를 함께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 일괄승계를 유지하는 제도는 분할상속이 관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지방에서는 충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다. 민법(상속법) 개정에 의한 기여분제도의 신설 (1980년대)

일본의 농정조사위원회는 1962년의 조사 이래 1968년, 1973년의 두 차례 걸쳐 동일 지구에서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를 하였지만, 그 사이에 농업승계인 이외의 공동상속인에게 농지 이외의 재산이 분여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정도로 현저한 변화는 볼 수 없었다. 그 이후 조직적, 전국적인 조사는 실시되지 않았지만, 1980년대 후반이 되면서, 일본의 농업도 해체의 위기를 맞이하였다.

1980년에는 농가상속 문제를 직접적인 계기로 하여 상속법의 일부가 개정되었다. 농업승계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속분의 실질적 불공평이 문제로 되었기 때문이다. 즉, 농가의 후계자가 젊을 때부터 양친과 같이 농업에 종사하고 그 뒤 노부모를 부양하면서 농업경영을 유지해온 경우에 젊을 때부터 밖에 나가서 농업경영의 유지에 거의 관여하지 않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아버지의 사망을 이유로 농업승계자

인 휴계자와 같은 비율로 농지 등 유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불공평하며, 따라서 상속에서의 후계자의 우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민법은 유산의 분할에 관하여 유산의 성질과 각 상속인의 생활상황 등 ‘일체의 사정을 고려해서’ 해야 한다는 「기여분」 규정을 두게 되었다 (제904조의 2). 이 규정에 의해서 대부분의 농업승계인은 농지의 일괄상속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IV. 상속으로 인한 농지세분화에 대비하기 위한 앞으로의 대책

1. 우리의 상황

이상에서 농지상속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내지 대비상황을 간략히 살펴 보았는데 이것을 참고로 하여 이 문제에 관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먼저 정리해 본다.

가. 자료의 미비

우리의 상속법이 균분상속제를 택하면서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상속으로 인한 농지세분화가 염려되었었다. 그러나 농지상속실태를 조사·분석한 자료가 전무하여 이 문제를 깊이 다룰 기반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일본의 경우도 초기에는 이에 관한 실태조사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당히 방황하던 끝에, 각종의 실태조사를 하고 그 기반위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차분히 강구해 온 바 있다.

나. 농촌의 붕괴와 농지문제의 후퇴

우리나라의 농지문제는 해방전후 사회문제 중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였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로 농업인의 수가 격감하고 농촌이 붕괴되어 농지문제가 상대적으로 사회문제의 초점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부적절한 조치를 성급히 마련하기 보다는 신중한 검토 끝에 좋은 입법을 하여야 한다.

다. 평등의식의 고조

한편 국민수준의 향상으로 평등의식이 고조되어 비록 농가상속에 한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농지세분화 방지를 위해 균분상속제를 수정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라. 정리

위와같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상속으로 인한 농지세분화 문제를 선불리 다룬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므로 우선 우리가 할 일은 농가상속의 실태를 조사하는 일이다.

이 조사를 통하여 우리 농가의 상속실태를 파악한 후 그에 알맞은 입법조치를 택하여야 한다.

2. 입법대책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농가실태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근본적인 입법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모든 입법조치를 중단하고 방관만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단기적 조치로서 다음과 같은 입법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가. 농지일괄승계지원제도

농지법 제21조의 정신에 따라 농지가 일괄하여 상속, 증여 또는 양도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에컨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동법 제31조 이하)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등이다.

나. 농지일괄승계를 위한 세법상의 지원

일본의 경우와 같이 농지일괄승계를 위한 각종의 세법상의 지원을 할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5-4. 草 地 法

1. 규정 명료화

1. 현행조문

초지법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승인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81·12·31, 86·12·31, 91·5·31, 94·3·24, 94·12·22, 95·12·29, 97·4·10, 99·2·8 법5893·법5914]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시행일 99·8·9]]
2.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등의 허가과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시행일 99·8·9]]
3.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변경의 인가,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국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임지·임상 및 면적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림을 제외한다)의 전용허가·동의 또는 협의,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해제,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해제의 고시와 통지, 동법 제6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4.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의 지정해제
5. 삭제 [97·4·10]
6.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7. 삭제 [82·12·31]
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지역안에서의 토지형질의 변경등의 허가

2. 개정

초지조성허가를 할 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초지법 제20조 ②항 또는 초지법시행령 등에 신설

3. 근거

- (1)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때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산림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 허가,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의 지정 해제,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음.
- (2) 그러나 초지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할 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규정이 없어 관련 법률에 의한 의제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문제가 있음.
- (3) 따라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할 때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초지법에 명시하여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

4. 농업·농촌기본법과의 일치 여부 : 일치

II. 초지전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1. 현행 조문

초지법 제23조(초지의 전용등)

- ① 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30년이 경과된 초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4·10, 99·2·5]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에 갈

- 음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7·4·10, 99·2·5]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초지의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93·6·11, 96·8·8, 97·4·10, 99·1·29, 99·2·5] [[시행일 99·7·30]]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에 전용하는 경우
 3. 농업·축산업·임업 및 수산업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4.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 및 감면기준과 그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1·5·31]

2. 개정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초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초지법 제23조에 신설

3. 근거

- (1)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초지전용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2) 이로 인해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초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없어 범망에 허점이 있고, 축산발전기금의 조성에 차질이 있음.
- (3) 따라서 초지법에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초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의 마련되어야 함.

4. 농업·농촌기본법과의 일치 여부 : 일치

6. 農漁村整備法 등

6-1. 農業構造

1. 농업구조 관련법

- (1)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 (2) 농어촌 정비법
- (3)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4)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
- (5) 방조제 관리법

2. 정비원칙

- (1) 농업기본법의 취지와 정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함.
- (2) 공익을 훼손하지 않는 한, 정부의 독점적 권한을 민간에 개방하는 등 시장경제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함.
- (3)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중앙정부는 전국적인 균형과 일관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함.
- (4)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예: 고속통신망 등의 정보화 기반)을 농업구조개선사업에 추가하도록 함.
- (5) 환경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도록 함.

3. 정비를 필요로 하는 사항

- (1) 농업·농촌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혼동될 여지 있는 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

- (2) 농업구조개선사업의 명확한 정의.
- (3) 농업, 농업인 등에 대한 일관된 정의.
- (4)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을 명확히 함.
- (5) 공익적 기반시설과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반시설 구분.
- (6) 구조개선사업에 정보화 기반시설 추가.
- (7) 시장경제 원리 및 시장경쟁의 강조.
- (8) 지역주의 연고주의 행정의 방지.

4. 법령별 검토 사항

(1)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조 (목적)

- ① 현행조문: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증진시키고...”로 되어있으나 농가의 경영규모 적정화를 농업기반공사와 같은 사업부서가 맡으면 일방적인 대규모화로 추진할 위험이 있음.
- ② 검토의견: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증진시키고...”를 “...농업인의 농업생산성을 증진시키고...”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2) 농어촌 정비법

제1조 (목적)

- ① 현행조문: “이 법은 농수산업생산기반, 농어촌생활환경과 농어촌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여...”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제4조 1항과 중복되며 지나치게 구체적임.

- ② 검토의견: 중복을 없애고 법의 목적을 포괄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 법은 농어촌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여...”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2조(정의) 제3항

- ① 현행조문: 제3항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항목에 농업·농촌의 정보화 기반 사업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초고속 통신망 등의 정보화 기반시설은 앞으로 농업생산기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됨.
- ② 검토의견: 농업·농촌의 정보화를 강조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제3항의 ‘마’를 “농업·농촌의 정보화 기반 사업”으로 수정하고 기존의 ‘마’는 ‘바’를 신설하여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함.

제2조(정의) 제4항

- ① 현행조문: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로 되어 있어 공익적 시설과 개인이나 사설단체의 영리를 위한 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있음. 또한 농업생산 기반시설에 초고속 통신망을 명시적으로 첨가하여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② 검토의견: 공익적 영농시설에 한하여 ‘농어촌정비법’을 적용하고 농업생산기반에 초고속 통신망을 첨가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및 초고속 통신망 등 영농에 필요한 공익적 시설을 말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임.

제2장 농어촌정비를 위한 자원조사·활용

- ① 현행조문: 제2장의 제목이 “농어촌정비를 위한 자원조사·활용”으로 되어 있으나, 농어촌정비사업에 자원뿐 아니라 환경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② 검토의견: 제2장의 제목을 “농어촌정비를 위한 자원·환경의 조사·활용”으로 수

정하는 것이 타당함.

제3조 (자원조사)

- ① 현행조문: 자원조사만 언급되어 있으나, 환경조사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 ② 검토의견: 제3조에 등장하는 “자원조사”를 모두 “자원·환경조사”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제4조 (농어촌정비종합계획등)

- ① 현행조문: 제3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원조사만 언급되어 있으나, 환경조사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 ② 검토의견: 제3조와 마찬가지로 제4조에 등장하는 “자원조사”도 모두 “자원·환경조사”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제6조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 및 예정지 조사)

- ① 현행조문: 제1항에 제3조와 마찬가지로 “농림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로 되어 있는 것을 환경조사도 첨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임.
- ② 검토의견: 제1항에 “농림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로 되어 있는 것을 “농림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환경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로 수정하여야 할 것임.

제6조 및 7, 8, 12, 94조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의 계획, 추진, 시행, 예정지 조사,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문

- ① 현행조문: 절차가 복잡하고 시행인가와 고시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됨.
- ② 검토의견: 소관부처의 의견대로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절차 등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 함. 그러나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주의, 연고주의의 폐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중앙정부가 승인하는 광역적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해 권한을 이양하여야 할 것임.

제13조 (농지규모확대 및 집단화 추진)

- ① 현행조문: 제목에 “농지규모확대 및 집단화 추진”을 명시하고 제1항에 “...농업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농지규모확대 및 집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이라고 하여 규모확대를 강조하고 있으나 이것은 현재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보전형 농업, 다품종 소량생산 농업 등의 취지와 모순될 수 있음.
- ② 검토의견: 제목 “농지규모확대 및 집단화 추진”을 “농지집단화 추진”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임. 또한 제1항의 “...농업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농지규모확대 및 집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를 “...농업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집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임.

제14조(매립, 간척 또는 개간의 효율적 시행) 제2항

- ① 현행조문: “...조성하는 농지는 기계화 영농 및 영농규모확대에 적합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어 기계화와 규모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제13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재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보전형 농업, 다품종 소량생산 농업 등의 취지와 모순될 수 있음.
- ② 검토의견: 제2항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함.

제14조(매립, 간척 또는 개간의 효율적 시행) 제4항

- ① 현행조문: 개간에 의한 개발농지의 용도지정, 타용도 전용제한의 기간 등이 명시되어있지 않음.
- ② 검토의견: 소관부처의 의견대로 용도제한에 관한 사항은 농지법의 농지전용제한규정을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 인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현지여건에 따라 판단하여 제한할수 있도록 중앙병부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 함. 그러나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주의, 연고주의의 폐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중앙정부가 승인하는 광역적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해 권한을 이양하여야 할 것임.

(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12조 (용자사업 취급사무의 위탁)

- ① 현행조문: 제2항에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농림수산관련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자사업을 비농림수산관련법인도 취급할 수 있도록 개방할 필요 있음.
- ② 검토의견: 제2항의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농림수산관련법인에 위탁할수 있다”를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4) 방조제 관리법

특별한 의견 없음

6-2. 限界農地

1. 일본의 「特定農山村法」의 중요성

일본에서는 「特定農山村地域에 있어서 農林業等の 活性化를 위한 基盤整備의 促進에 관한 法律」(特定農山村法으로 약함) 전문 23조, 부칙 12조문이 1993년 6월 16일에 공포되었다.

중간농업지역은

1) 평지농업지역과 산간농업지역의 중간지역을 의미한다.

2) 산간농업지역 임야율 80% 이상, 경지율 10% 미만

중간농업지역 임야율 50% 이상, 경지율 20% 미만

또는 경사지에 있는 耕地를 점하는 비율이 일정을 이상의 마을을 말한다.

이러한 중간농업지역은 조건불리지역이며 우리나라에는 산이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므로 중간농업지역 또한 우리나라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러한 지역에서 이농이 평지보다 높기 때문에 조정금(調整金 - 독일의 경우) 또는 중산간지역 등에 직접지불제도(일본의 경우)로 보호해 주지 않으면 급속도로 이농하고 산간이 황폐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조건불리지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1994년 12월 22일 공포) 제76조~85조에 「한계농지 등의 정비」라고 하여 10조문이 있으나 일본보다 지원이 많이 미흡하다.

그러므로 일본의 「특정농산촌법」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연구하기로 희망하는 것이다.

II. 특정 농산촌지역에 있어서의 농림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日本)

제 1 조 (목적)

이 법률은, 특정 농산촌지역에 관하여, 지역에 있어서의 창의연구를 살리면서, 농림업 기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림업 기타 사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그럼으로써 풍요롭고 살기 좋은 농산촌의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등)

① 이 법률에 있어서 ‘특정농산촌지역’이란, 地勢 등의 지리적 조건이 열악하고, 농업의 생산조건이 불리한 지역이며, 또한 토지이용의 상황, 농림업 종사자수 등으로 보아 농림업이 중요한 사업인 지역으로서 政令(역자 주 : 대통령령을 의미, 이하 대통령령이라 한다)으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률에 있어서 ‘농림지 등’이란 다음에 드는 토지를 말한다.

1. 경작목적 또는 주로 혹은 양축사업을 위한 採草 혹은 가축의 방목 목적에 제공 되는 토지(이하 ‘농업용지’라 한다) 및 개발하여 농업용지로 하는 것이 적당한 토지
2. 木竹의 生育에 제공되어, 함께 경작 또는 養畜사업을 위한 채초 또는 가축의 방목 목적에 제공되는 토지(농업용지 및 다음 호에서 규정하는 林地를 제외한다)
3. 木竹의 집단적인 生育에 제공되는 토지(주로 농업용지 또는 주택지 혹은 이에 준하는 토지로서 사용되는 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임지’라고 한다.) 및 임지로 하는 것이 적당한 토지

4. 다음 항 제2호에 규정하는 농림업 등 활성화 기반시설의 用途에 제공되는 토지 및 개발하여 농림업 등 활성화 기반시설의 用途에 제공되는 것이 적당한 토지

5. 전 각호에 든 토지 외에, 이들 토지와 일체적인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 적당한 토지

③ 이 법률에 있어서 ‘농림업 등 활성화 기반정비 촉진사업’이란, 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市町村(역자 주 : 市邑面에 해당)이 행하는 다음에 드는 사업을 말한다.

1. 다음에 드는 농림업 기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의 실시를 촉진하는 사업

가. 신규의 작물 도입 기타 생산방식의 개선에 의한 농업경영(식용버섯 기타의 임산물의 생산을 함께 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선 및 안정에 관한 조치

나. 농업용지 및 山林의 보전 및 농림업상의 이용확보에 관한 조치

다. 수요의 개척, 신상품의 개발 기타지역 특산물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조치

라. 도시주민의 농림업 체험 기타 도시 등과의 지역간 교류에 관한 조치

마. 기타 지역에 있어서의 취업기회의 증대에 기여하는 조치

2. 전호에 든 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 기타 主務省 승(역자 주 : 주무부령, 이하 주무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농림업 등 활성화 기반시설’이라 한다.)의 정비를 촉진하는 사업

3. 농림지(농업용지 및 林地라 한다. 이하 같다.)의 농림업상의 효율적 종합적인 이용의 확보 및 농림업 등 활성화 기반시설의 원활한 정비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지 등을 대상으로 하여, 소유권의 이전 또는 地上權, 賃借權 혹은 使用貸借에 의한 권리의 설정 혹은 이전(이하 '소유권 이전 등'이라 한다.)을 촉진하는 사업(이하 '농림지 소유권 이전 등 촉진사업'이라 한다.)
4. 농림업 기타의 사업을 담당할 인재의 육성 및 확보 기타 농림업 기타의 사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④ 주무대신(역자 주 : 주무장관, 이하 주무장관이라 한다.)은, 제1항의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특정농산촌지역을 공시하도록 한다.
- ⑤ 주무장관은, 제3항 제2호의 주무부령을 정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長과 협의토록 한다.

제 3 조 (특정 농산촌지역에 있어서의 농림업 등 활성화 기반정비 촉진사업의 원칙)

특정농산촌지역에 있어서의 농림업 등 활성화 기반정비 촉진사업은, 지역의 농림업 기타 사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조직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림업 기타 사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자주적인 노력을 조장하고, 또한 지역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할 것, 그리고 농림업의 진흥 및 농업용지 및 山林의 보전을 통하여 국토 및 환경보전 등의 기능이 십분 발휘될 것을 취지로 하여 실시토록 한다.

제 4 조 (농림업 등 활성화 기반정비계획)

- ① 전부 또는 일부구역이 특정 농산촌지역인 市邑面은, 당해 특정농산촌지역에 있어서의 농림업 기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기반정비 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② 기반정비계획에 있어서는, 다음에 드는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1. 농림업 기타사업의 활성화의 목표
2. 농림업 등 활성화 기반정비 촉진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농림업 생산의 기반정비 및 개발 그리고 산업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기타 공공시설의 정비이고, 농림업 등 활성화 기반정비 촉진사업에 관련하여 실시되는 것에 관한 사항
4. 기타 주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전항 제2호에 드는 사항 중 농림지 소유권 등 촉진사업에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다음에 드는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1. 농림지 소유권이전 등 촉진사업의 실시에 관한 기본방침
2. 이전된 소유권이전의 대가산정기준 및 지급방법
3. 설정되고, 또는 이전된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의 존속기간 또는 잔존기간에 관한 기준 및 당해 설정되고, 또는 이전을 받은 권리가 地上權 또는 賃借權인 경우에 있어서의 地代 또는 借賃의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
4. 기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市邑面은, 전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산정기준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地價의 형성이 꾀해지도록 배려토록 한다.

⑤ 기반정비계획은, 過疎지역 활성화계획, 산촌진흥계획,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역진흥에 관한 계획, 지역삼림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삼림의 정비에 관한 계획 및 도시계획과의 조화가 유지되고 또한 지방자치법(1947년 법률 제67호) 제2조 제5항의 기본구상에 맞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⑥ 市邑面은 기반정비계획을 작성하고 또는 이것을 변경시키려 할 때는 주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12호에 드는 사항에 관하여, 都道府縣知事(역자 주 : 特別市 廣域市 道를 의미한다. 이하 역어를 사용한다)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⑦ 市邑面은, 기반정비계획을 작성하고 또는 이것을 변경했을 때는 지체없이 이것을 공표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 5 조 (농업경영의 개선 및 안정을 위한 계획의 인정)

기반정비계획을 작성한 市邑面(이하 ‘計劃作成市邑面’ 이라 한다.)은, 농업자가 조직하는 단체로부터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작성한 신규의 작물의 도입 기타 생산 방식의 개선에 의한 당해 단체의 구성원의 농업경영 개선 및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의 실시와 당해 조치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농림수산부령에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특정시설’ 이라 한다.)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인정신청이 있었을 경우, 그 계획이 기반정비계획에 맞는 것일 것, 그 계획에 따라 농업경영의 개선 및 안정을 도모하려고 하는 구성원(이하 ‘참가구성원’ 이라 한다.)의 농업경영의 개선 및 안정을 도모하는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기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그 계획이 적당하다는 뜻의 인정을 하는 것으로 한다.

제 6 조 (자료의 확보)

국가 및 특별시 광역시 도는, 전조의 인정을 받은 단체 및 그 참가구성원이 당해 인정에 관계되는 계획에 따라 동조의 조치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확보에 노력하도록 한다.

제 7 조 (농림업 등 활성화 기반시설 설치사업계획의 인정)

計劃作成市邑面은, 농림업 등 활성화 기반시설(특정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에 관계되는 사업을 행하려고 하는 자로부터 주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그 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 이라고 한다.)이 적당하다는 뜻의 인정신청이 있었을 경우에, 그 사업계획이 기반정비계획에 맞는 것이라는 것 기타 주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그 사업계획이 적당하다는 뜻의 인정을 하도록 한다.

제 8 조 (소유권 이전 등 촉진계획의 작성 등)

① 計劃作成市邑面은, 제5조의 인정을 받은 단체 혹은 그 참가구성원 또는 전조의 인정을 받은 자로부터 제5조의 인정에 관계되는 계획 또는 전조의 인정에 관계되는 산업계획에 따라 농림지 등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 등을 받고자 하는 뜻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에 필요할 때 기타 농림지 소유권 이전 등 촉진사업을 행하려고 할 때는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소유권이전등 촉진계획을 정하도록 한다.

② 소유권이전등 촉진계획에 있어서는 다음에 드는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1. 소유권의 이전등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전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권 이전등을 받을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면적
3.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에 전호에 규정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을 행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제1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전을 받을 소유권의 이전후에 토지의 이용목적 및 당해 소유권 이전의 시기 및 이전의 대가 및 그 지급방법

5. 제1호에 규정하는 자가 설정 또는 이전을 받을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의 종류, 내용(토지의 이용목적에 포함한다.), 始期 또는 이전시기, 존속기간 또는 잔존기간 및 당해 설정 또는 이전을 받을 권리가 지상권 또는 임차권인 경우에 있어서는 地代 또는 차임 및 그 지급방법

6. 기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소유권이전등 축진계획은, 다음에 드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1. 소유권이전등 축진계획의 내용이 기반정비계획에 적합한 것일 것.

2. 소유권이전등 축진계획에 있어서 다음에 드는 소유권이전등의 어느 것인가가 정해져 있을 것.

가. 농림지의 농림업상의 효율적 또한 총합적인 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농림지에 대한 地目변환(농업용기간 또는 林地간에 있어서의 지목변환을 제한다.)을 수반하는 소유권의 이전등 (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농림업등 활성화 기반시설(특정시설을 제외한다.)의 정비를 위하여 행하는 농림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 및 이와 병행하여 행하는 당해소유권이전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림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

3. 전항 제2호에 규정하는 토지마다, 동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 및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영소작권, 질권, 임차권,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 또는 기타의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의 모든 동의를 받았을 것.

4. 전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하는 토지의 이용목적외, 당해 토지에 관계되는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 도시계획 기타의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또한 당해토지의 위치 및 규모와 주변 토지이용의 상황으로 보

아, 당해 토지를 당해 이용목적에 供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것.

5. 전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가 다음에 드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가. 전항 제2호에 규정하는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농업용지이고 또한 당해 농업용지에 관계되는 동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하는 토지의 이용목적이 농업용지의 用途에 供하기 위한 것일 경우에는, 농지법(1952년 법률 제 229호)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조 제1항의 허가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나. 전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하는 토지의 이용목적이 농림업등 활성화 기반시설의 用途에 供하기 위한 것일 경우에 있어서는, 제5조의 인정을 받은 단체 혹은 그 참가구성원(당해인정에 관계되는 계획에 따라 특정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한한다.), 전조의 인정을 받은 자 또는 지방공공단체 기타의 기반정비계획에 맞춰 농림업등 활성화 기반시설(특정시설을 제외한다.)을 적정 또 확실히 정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주무부령으로 정한 자일 것.

다. 가 및 나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유권의 이전 등이 행해진 후에, 전항 제2호에 규정하는 토지를 동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하는 토지의 이용목적에 맞춰 적정 또 확실히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일 것.

④ 計劃作成市邑面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 축진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당해 소유권 이전등 축진계획이 다음에 드는 요건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할 때는 당해 소유권이전 등 축진계획에 대하여 농림수산부령,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1.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농업용지(당해 농업용지에 관계되는 소유권의 이전등의 내용이 농지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일 것.

2.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市街化 조정구역(도시계획법(1968년 법률 제100호)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을 말한다.)내에 있고, 또한 소유권의 이전 등이 행해진 후에, 농림업등 활성화기반시설의 用에 공해지게 될 것(동법 제29조 또는 동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는, 전항 제1호에 드는 요건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 촉진계획에 대한 동항의 승인을 하려고 할 때는 미리 특별시 광역시 도 농업회의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된다.

제 9 조 (소유권이전등 촉진계획의 공고)

① 計劃作成市邑面은, 소유권이전등 촉진계획을 정했을 때는 농림수산부령, 건설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 計劃作成市邑面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려고 할 때는,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뜻을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전조 제4항의 승인을 받은 소유권이전등 촉진계획에 대한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공고의 효과)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었을 때는 그 공고가 있었던 소유권이전등 촉진계획의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하고 또는 지상권, 임차권 혹은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가 설정되거나 이전한다.

제 11 조 (등기의 특례)

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었던 소유권이전등 촉진계획에 관계되는 토지의 등기에 대해서는, 大統領令으로, 부동산등기법(1899년 법률 제24호)의 특

례를 정할 수 있다.

제 12 조 (삼림조합법의 특례)

- ① 市邑面은 기반정비계획에 있어서 제4조 제2항 제2호에 드는 사항을 정하면서 특정농산촌지역에 있어서의 농업용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동호에 드는 사항에 관계되는 농업용지 및 삼림의 보전 및 농림업상의 이용의 확보에 관한 조치로서, 삼림조합이 특정농산촌지역에서 위탁을 받아 농작업을 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취지를 당해 삼림조합의 동의를 얻어 정할 수 있다.
- ② 당해 삼림조합은, 당해 市邑面이 제4조 제6항의 승인을 받았을 때는 산림조합법(1978년 법률 제36호) 제9조 제1항, 제2항 및 제7항에 규정하는 사업 외에 전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 13 조 (농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의 連携)

기반정비계획에 관계되는 특정농산촌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은, 당해 기반정비계획의 원활한 실시가 촉진되도록, 농작업 또는 산림 施業의 수탁 등에 의한 농업용지 및 삼림의 보전, 지역특산물의 판매 또는 가공 등에 관하여 상호 연휴를 도모하면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 14 조 (토지개량법의 특례)

- ① 토지개량구가, 토지개량법(1949년 법률 제195호)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에 관계되는 지역(대상지역내의 구역에 한한다. 이하 '대상시행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換地計劃을 정할 경우에는 대상시행지역내에서 농업과 병행하여 임업을 경영하는 자의 임업경영상 필요한 시설로서 그 자의 경영의 안정을 꾀하고, 그럼으로써 농업구조의 개선을 꾀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시설로서 기반정비계획에 정해진 것(大統領令으로 정

하는 요건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을 동법 제53조의 3 제1항 제2호 나에 드는 시설로 간주하여 동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에 드는 자가 각각 당해 각호에 드는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행지역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1.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 토지개량법 제89조의 2 제1항
2. 市邑面 토지개량법 제96조의4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52조 제1항

제 15 조 (과세의 특례)

대상지역 내에서, 제7조의 인정을 받은 자(지방공공단체의 출자 또는 각출에 관계되는 법인에 한한다.)가 당해 인정에 관계되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설치한 농림업등 활성화 기반시설에 관해서는 조세특별조치법(1957년 법률 제26호)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상각을 할 수 있다.

제 16 조 (지방세의 불균일 과세에 수반하는 조치)

지방세법(1950년 법률 제226호)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自治部令으로 정하는 지방공공단체가 대상지역 내에서 제7조의 인정에 관계되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농림업 등 활성화 기반시설 중 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설치한 자(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에 대해서, 당해 시설의 用途에 供하는 가옥 혹은 이들 부지인 토지의 취득에 대한 부동산취득세 또는 당해시설의 용에 공하는 가옥 혹은 건축물 혹은 그 부지인 토지에 대한 고정자산세에 관계되는 불균일한 과세를 했을 경우에, 이들 조치가 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지방교부세법(1950년 법률 제211호)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공공단체의 각 연도에 있어서의 기준재정수입액은, 동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지방공공단체의 당해 각연도분의 감수액(고정자산세에 관한 이들 조치에 의한 감수액에 있어서는 이들 조치가 있었던 최초의 연도 이후 3개년도의 것에 한한다.) 가운데 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액을 동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지방공공단체의 당해각

연도(이들 조치가 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날 이후에 행해졌을 때는, 당해 감수액에 대한 당해 각연도의 翌年度)에 있어서의 기준재정수입액이 될 액에서 공제한 액으로 한다.

제 17 조 (국가 등의 원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기반정비계획의 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반정비계획의 실시에도 필요한 사업을 행하는 자등에 대한 助言, 지도 기타의 원조의 실시에도 노력하도록 한다.

제 18 조 (지방채의 특례 등)

- ① 계획작성 市邑面이 제7조의 인정을 받은 자 중 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당해 인정에 관계되는 사업계획에 따라 행하려고 하는 농림업등 활성화 기반시설 중 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설치 또는 당해시설의 이용에 제공하는 토지의 취득 혹은 造成에 관계되는 경비에 대해서 出資, 보조 기타의 助成을 행하려고 하는 경우에, 당해 助成에 요하는 경비로서 지방재정법(1948년 법률 제109호) 제5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동항 제5호에 규정하는 경비로 간주한다.
- ② 지방공공단체가 기반정비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사업에 요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일으킨 지방채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금사정 및 당해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상황이 허용하는 한, 특별배려를 하도록 한다.

제 19 조 (농업생산의 기반 및 임업생산의 기반의 일체적인 정비 및 개발의 촉진)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농업생산의 기반 및 임업생산의 기반의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시책을 행함에 있어서는 대상지역 내에서 토지개량사업 및 조림 또는 林道の 개발사업의 종합적인 시행 기타의 농업생산의 기반 및 임업생산기반의 일체적인 정비 및 개발이 촉진계도록 배려한다.

제 20 조 (농지법 등에 의한 처분에 대한 배려)

국가 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는 대상지역 내의 토지를 기반정비계획에 정하는 농림업등 활성화 기반시설의 用途에 供하기 위하여 농지법 기타의 법률규정에 의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요구받았을 때는 당해시설 설치의 촉진이 도모되도록 적절한 배려를 하도록 한다.

제 21 조 (국유임야의 활용등)

- ① 국가는 기반정비계획의 실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유임야의 활용에 대하여 적절한 배려를 하도록 한다.
- ② 계획작성 市邑面은, 기반정비계획의 달성을 위해 필요할 때는 관계영림국장 또는 영림지국장에게 기술적 원조 기타의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2 조 (생활환경의 정비)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기반정비계획의 실시의 촉진에 병행하여, 대상지역에서 양호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의 정비를 촉진되도록 노력한다.

제 23 조 (주무장관 등)

- ① 이 법률에서 주무장관은, 국토청장, 농림수산부장관, 건설부장관 및 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② 이 법률에서 주무부령은 주무장관(국토청장의 경우는 국무총리)가 발하는 명령으로 한다.

7. 農産物 流通

7-1. 農産物 流通 關聯 法律

1. 「양곡관리법」 정비사항

1. 양곡매입가격 등의 결정시 국회 동의제 폐지

(1) 양곡(쌀, 보리 등)은 우리 농업에 있어 아직까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가 양곡을 매입할 때 그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결정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2) 이같은 제도는 일견 국민을 대변한 국회로 하여금 양정(糧政)에 대한 주요 결정에 참여케 하는 형태로서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음.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국회 동의 과정에서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이 당리당락의 수단으로 이용됨으로 인해 오히려 효율적인 양정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3) 더욱이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따라 총보조금액이 제한됨으로써 양곡의 매입가격 및 매입량 결정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음. 따라서 국회의 동의 과정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게 되고 있음.

(4) 효율적인 양정 추진을 위해 국회 동의 과정을 폐지하고 농림부장관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법률 원안·수정안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비 고
제5조 (양곡매입가격등의결정) ① 정부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을 매입함에 있어서 그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결정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정부는 …… 차년도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및 정부 관리 양곡의 수급계획을 일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예시할 수 있다.	제5조 (양곡매입가격등의결정) ① 정부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대한 양곡을 매입함에 있어서 그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 농림부장관이 결정토록 한다. ② 정부는 …… 차년도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및 정부 관리 양곡의 수급계획을 일괄하여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 농림부장관이 예시할 수 있다.	국회동의제 폐지

II.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정비사항

1. 평가 및 문제점

유통여수(流通如水)란 말과 같이 골짜기 물이 모여 큰 물줄기가 되고 보다 낮은 곳을 찾아 바다에 이르듯 유통 역시 산지에서 농어민의 손을 떠난 농수산물이 보다 큰 흐름을 이뤄 최종소비자에 이르게 된다. 치수(治水)의 근본은 물이 막힘 없이 필요한 곳으로 흐르도록 수로(水路)와 제방(堤防)을 마련하는 것이다. 누군가 사리(私利)를 목적으로 엉뚱한 곳으로 물길을 돌리거나 흐름을 막을 경우 물의 자연스런 흐름을 둔화시키고 심지어는 고여 썩는 물이 되게도 한다.

유통정책의 요체는 소비자가 원하는 농수산물이 보다 신속하게 흐르도록 함과 동시에 유통과정 참여자의 불공정한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도매시장의 거래방법에 대한 규정과 같은 억지로 물길을 돌리는 것과 같은 불필요한 규제는 가급적 풀고, 반면 거래 및 대금정산상의 불공정한 행위, 지나친 가격 불안정성 등은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正道(正道)인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볼 때 개정 농안법에 포함된 가격예시 및 유통조절 명령제도, 도매상제도, 민영도매시장의 허용, 출하자 등록제, 포전거래제도의 보완, 하역체계의 개선, 도매시장 개설자의 관리권한 강화 및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은 이전에 비해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농안법에서는 농수산물 유통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문제는 유통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실천에 옮기는데는 주저하고 있다는 점과 몇몇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대안의 미흡 등이다.

개정 농안법이 농수산물 유통의 핵심부문인 도매유통의 효율성 제고 및 활성화를 획기적으로 이루게 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규 및 지방도매시장에 대한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은 2000년 6월부터 가능케 되었으나, 정착 도입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도입효과가 큰 중앙도매시장에 대해서는 2006년 경에나 도입하겠다는 것은 문제해결의 시급성을 간과한 결과라 생각된다. 새로운 제도 도입시 부작용 가능성, 통명거래 등 전제조건 미흡, 위탁상제도로의 회귀 가능성, 시설 정비 필요성 등이 도입시기 지연의 주된 이유였다. 하지만 서울 가락동 및 부산 엄궁동 도매시장에서 상장예외품목(경매예외품목)의 확대 실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시장도매인제도의 성공 가능성은 이미 검증된 것으로 봐야 한다. 또한 공영도매시장은 위축되고 있는 반면 유사도매시장은 상대적으로 번창(예 : 서울시의 경우 가락동 도매시장에 비해 영등포 도매시장 과실부문의 급성장)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세금 차이 등의 이유를 들어 항변하거나 무조건 외면하기에는 경매제도의 비효율성 문제가 심각한 상태임을 재인식할 필요

가 있다.

동시에 전체 공영도매시장의 거래물량 중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앙도매 시장에서 경매제만을 계속 고집할 경우, 산지 및 소매유통개선에 걸림돌이 되어 정부가 새로이 도입하려는 많은 대책 및 이를 위한 정부투자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부연 설명하면, 엄청난 재원과 노력이 투입되고 있는 예냉 및 저온시설을 갖춘 산지유통센타가 앞으로 산지유통의 중심이 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산지유통센타의 상당수는 적자경영 및 경영의 불안정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입지의 부적절성, 가동률 저조, 경영능력 미흡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산지유통센타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도매시장의 경매제도에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농민들로부터 농산물을 구입, 선별 포장한 후 도매시장에 출하할 경우 경매의 특징 중 하나인 가격불안정성으로 인해 수취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이로 인한 경영상의 불안정성을 영세한 산지조합 등이 감당키 어려운 것이 현 실정이다.

중앙도매시장에서 경매제 지속을 고집할 경우 확대 예정인 산지유통센타의 활성화가 힘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엄청난 재원의 낭비, 산지유통개선의 지연 등이 예상된다. 또한, 현행 경매제는 소매유통개선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농수산물은 품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부패성이 높아 수확 후 최종소비에 이르기까지 공산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극히 짧은 유통기한이라는 제약을 갖게 된다. 도매시장단계에서 경매제는 경매시각까지의 대기시간, 상하차 및 선별작업 등으로 수의매매에 비해 유통속도가 느리게 마련이다. 경매제는 농수산물의 짧은 유통기한 중 상당한 시간이 산지에서 도매시장을 빠져 나올 때까지 소비되게 하고 상대적으로 소매단계에서의 유통기한을 더욱 축소시키게 된다. 이에 따라 소매단계에서 농수산물의 매잔품(賣殘品) 비중은 커지게 되고 이는 다시 소매유통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농수산물 유통비용 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소매유통비용의 감축을 통

해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함은 물론 귀한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중도매 시장의 경매제 지속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출하자에 대한 대금정산에 있어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직접 결제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시장도매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정산창구를 통하도록 되어 있다. 이 같은 차별화는 도매상제도 도입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대금정산의 지연 또는 미정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조치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현행 도매시장법인의 직접결제방식은 과연 효율적이며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도매시장법인별로 정산조직을 운영하는 까닭에 도매시장당 한 개의 통일된 정산조직에 의한 것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법인세 절감 등에 관심이 많은 도매시장법인의 독자적인 정산체계는 관리주체에게 정확한 거래물량 및 금액을 보고하는 것을 꺼리게 하고 이로 인해 거래의 투명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시장도매인은 물론 도매시장법인 대금정산상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도매시장법인의 관리주체에 대한 보증금, 중도매인의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보증금제도, 매매참가인의 등록제 폐지는 거래 당사자간 협약 등으로 가능한 사항을 구태여 법률에 의해 강제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에서 폐지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앞으로 도매시장 평가의 강화, 시장도매인제도 도입, 상장예외품목의 확대 등에 따라 상당기간 동안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의 이합집산 등 존폐와 관련한 변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보증금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이 미흡할 경우 자칫 출하자가 엄청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매매참가인의 등록제 폐지는 경매참여자 확대를 통해 도매시장법인의 물량 분산을 보다 원활히 하는데는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경매시도를 넘는 지나친 경쟁을 유발시켜 오히려 효율적인 가격결정을 저해하거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특히 매매참가인의 등록제 폐지는 기존 중도매인의 영세화를 촉진시켜 중도매인의 규모화를 통한 유통비

용 절감이라는 방향을 오히려 저해 역전시키는 부작용이 심히 우려된다.

현행 농안법상 상장(上場)의 개념은 도매시장 내에서 거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매시장법인을 통한 거래를 의미하고 있다. 도매시장에서 상장거래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도매시장법인이 직접 수집도 하지 않은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상장수수료(上場手數料)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현재의 상장 개념은 도매시장법인에게 엄청난 특혜가 되고 있다.

개정 농안법은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도매시장 거래주체를 도매시장법인 뿐만 아니라 시장도매인까지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더욱더 상장의 개념을 도매시장법인을 통한 거래가 아닌 도매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바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상장 개념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법 제32조에서는 “... 다른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농수산물을 상장하여 매매하는 경우 등에는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른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가격이 결정된 농수산물을 중도매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직접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하는 길을 봉쇄하고 오히려 도매시장법인을 경유케 함으로써 유통비용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이를 통해 도매시장법인은 자기가 직접 수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상장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기록상장(記錄上場)이 계속 가능케 되었다. 과연 정부는 농안법이 누구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개정 농안법에서도 개별도매시장 또는 개설구역별로 관리주체를 두는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 (제21조) 그러나 이같은 방식은 불필요한 관리인원의 증가로 인해 유통비용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인접한 도매시장간 연계 관리를 통한 유통의 효율성 제고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개정 농안법 제30조의 「출하자 등록제」는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 및 수급 안정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이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의무

조항이 아닌 선택조항으로 되어 있어 제대로 실시될 수 있을 지 우려가 된다.

마지막으로, 유통조절명령제도 및 자조금제도 등 새로운 제도 도입도 필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점은 이같은 제도의 시행주체에 대한 고려인데, 이번 농안법은 시행주체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우리 나라는 진정한 의미의 품목별 생산자 조직이 얼마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직 및 기능도 지극히 미흡한 상태에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별다른 보완조치 없이 유통조절명령제도 등을 시행할 경우 시행주체는 정부 주도 형태가 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적용대상 작목으로 생산이 집중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미미한 효과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원하는 바 효과를 달성하자면 엄청난 재원이 요구되는 데 과연 정부 재원 조달이 가능한 지 염려가 된다.

2. 개정 농안법의 수정 및 보완사항

(1) 중앙도매시장에 대한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을 앞당겨야 한다. 전체 도매시장의 모든 부류별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도매시장 개설자의 판단아래 부류별로 시장도매인제도를 즉각 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할 것이다(부칙 제1조의 수정 필요). 예를 들어 서울 가락동도매시장의 수산부류, 부산 엄궁동 도매시장의 채소 및 서류 부문에 대해서는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새로운 제도 도입시 부작용 우려, 투명거래 등 전제조건 미흡, 위탁상 제도로의 회귀 등의 이유를 들어 도매상제 도입을 거부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 농수산물 유통개혁의 핵심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경매를 통한 수수료 사업에 안주해 온 도매시장법인과 같은 기득권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동시에 중앙도매시장에는 반드시 부류별로 도매시장법인을 두도록 한 조항(제22조)은 삭제하는 것이 요청된다.

(2) 도매시장 상장(上場)의 개념을 도매시장법인을 통한 거래 개념으로부터 탈피하여 도매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도매시장법인에게 말썽 많은 특혜를 부여하는 문제 해결은 물론 불필요한 유통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토록 해야할 것이다.

(3) 도매시장 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별도매시장 또는 개설구역별로 관리주체를 두도록 한정하고 있는 조항(제21조)을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설구역이 다른 경우에도 개설자간 상호협약을 정하는 경우에는 1개의 시장관리주체에 의해 관리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함이 요청된다.

(4) 현재와 같이 거래의 투명성 및 불공정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시장도매인 뿐만 아니라 도매시장법인의 대금정산 방식도 개별정산 방식에 맡기기보다는 별도 정산조직 또는 정산회사 형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도매시장 단위로 정산회사 등을 설립할 수 있는 조항을 시행령 등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요청된다. 다만 신용거래 등이 충분히 성숙되고,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규모화가 상당정도 진행된 이후에는 모두 개별정산 방식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5)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의 보증금제도를 무조건 삭제하기보다는 보증금제도에 대한 조항을 존속시키되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보증금제도의 도입 취지 및 운영상의 탄력성 모두의 달성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6) 출하자등록제는 도매시장 거래질서 확립 및 수급안정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 것이 사실이다. 현재 선택조항으로 되어있는 출하자등록제(제30조)를 의무조항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현실 여건상 당장 모든 도매시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케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설정함과 동시에 의무조항화 하는 것이 요청된다.

(7) 품목별 생산자조직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유통조절명령 및 자조금제도와 같은 뜻깊은 제도가 실질적이며 효율적

으로 시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품목별 생산자 조직 육성이 선결 조건임을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품목별 생산자조직에 의한 유통조절 명령제도 도입시 무임승차자(Free Rider)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만 보다 효율적인 시행이 가능할 것이다.

Ⅲ. 「농산물품질관리법」 정비사항

1. 벌칙 및 과태료 조항 재정비

(1) 본 법률의 기본 목적은 농수산물에 대한 적절한 품질관리 및 공정거래 유도 에 있음. 이를 위한 세부조항들이 갖춰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농수산물 검사, 안정성 조사, 각종 표시제가 제대로 이행되게 하기 위한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이 비합리적이거나 경미함으로 인해 본 법률의 입법취지가 희석되고 있음.

(2) 예를 들어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원산지 표시 및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제38조), 원산지 또는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 및 제35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수준 이 지나치게 경미할 뿐만 아니라,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와 허위표시를 하는 경우의 제재수준 차이로 인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 하고 있고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 표시도 제대로 시행될 지 우려가 됨.

(3) 따라서 본 법률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달성케 하기 위해서는 법 제35조 및 제36조의 벌칙 수준을 좀더 상향조정함과 동시에 법 제38조의 과태료 수준은 더욱 크게 향상조정하여, 벌칙과 과태료의 상향조정 및 벌칙과 과태료 간의 격 차를 줄이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임.

2.. 법률 원안 · 수정안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비 고
제3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수준 상향 조정
제3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수준 상향 조정
제38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8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과태료수준 상향 조정

IV.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법」 정비사항

1. 전통식품의 적용범위의 확대 또는 새롭고 성장잠재력이 큰 가공식품 육성조항 신설

- (1) 법 제6조에서는 전통식품을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되고,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깔을 내는 식품”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같은 전통식품에 대한 규정은 순수한 의미의 전통식품을 육성 발전시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이 사실이나, 반면 세계화 시대에

새롭게 개발되어 앞으로 우리의 전통식품으로 자리잡게 됨은 물론 해외시장 진출까지 가능한 식품의 개발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2)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민속주 중 전통적인 제조방법에 의한 전통 민속주보다는 새로운 제조방법에 의한 민속주가 국내적인 수요 확대는 물론 세계화 상품으로서의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것은 전통식품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적극적인 육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예 : 감글주, 백세주, 류인삼주, 퓨전떡 등)

(3) 따라서 새롭고 성장잠재력이 큰 가공식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수입 가공식품을 대체하게 하거나 세계화 식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통식품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이같은 가공식품을 육성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2. 수입농수산물의 가공·수출 등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노력

(1) 본 법률은 국내 농산물의 가공을 보다 활성화하는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 하지만 앞으로 저가의 농수산물 수입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노력이 동시에 요청됨.

(2) 예를 들어 국내 농수산물만을 사용한 가공식품보다는 국내 농수산물에 수입농산물을 혼합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수입농산물을 반가공한 식품이 보다 국제 경쟁력이 높고 수출잠재력이 클 것임. 따라서 수입농산물의 가공수출을 보다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이 경우 자칫 국내 가공식품 시장을 잠식시켜 국내 농수산물의 가공을 오히려 위축시킬 수도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청됨.

(3) 따라서 보세구역을 정해 이 구역 내에서 생산자단체 등으로 하여금 수입농수산물과 국내농수산물의 혼합가공, 수입농수산물 만의 가공을 하여 해외시장으로 수출하게 한다면 국내농수산물의 가공활성화, 농가소득 및 국민소득 증대

등을 이룰 수 있을 것임. 이같은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7-2. 農産物 規格

I. 일본의 농림물자규격관련 법률에 관하여

(1)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지도(Guideline) 형태로 농림규격을 권장 실시하고 있어 법제정이 필요없다고 하였으나, 행정지도 내지 권장규격으로는 법적구속력이 없으므로 이를 지키지 않는 예외가 많고, 뿐만 아니라 비규격농산물인 경우에는 일본에 수출을 할 수 없음.

또한 규격이라는 것은 생산에 있어서는 기본적이고 핵심적이어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라도 농산물 규격생산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일본의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은 1950. 5. 11 (법률 175호) 에

제 1 차 (1951)

제 2 차 (1970)

제 3 차 (1993)

제 4 차 (1999)

개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제 2 차 (1970) 개정시 중요한 개정이 행하여지고 품질표시적정화에 관한 조치가 추가되었다.

만일 농산품의 규격이 제각기 다르면 가격표시가 곤란해진다.

II. 농산물 표준화 및 규격화에 관한 증언

- KBS1 밝아오는 새아침 '농업도 마케팅이다' 방송 내용

- 2001년 5월 3일 5:30 - 5:50

증언 : 푸른 아이넷 대표 장예식

사회(김흥수) : 농산물을 어떻게 수집저장하고 유통시키느냐 하는 문제들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우리 농산물의 물류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장 :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물류체계라고 할만큼 체계적으로 물류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산물 총생산액 중에서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고 이 부분은 전적으로 출하자의 비용으로 다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재고관리라던지 고효율유통을 위해서는 물류체계를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각종 지원책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사회 : 선진국과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물자유통 체계는 어느 정도입니까?

장 : 아주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각종 도매시장을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입 되서 들어오고 있는 농산물은 깔판 위에 상품이 깨끗하게 집적되어서 상품이 수송과정에서 쓰러지지 않게 포장까지 되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품과 수입농산물을 놓고 하역과정을 보고 있으면, 컨테이너 하나당 수입상품을 하역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30분 정도면 하나를 다 하역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출하되는 상품들은 5톤 트럭 하나를 하차하는데도 거의 한시간반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비용으로 발생되고 있고 생산자들이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회 : 지금 그 비용이 생산자가 부담한다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소비자가 그 물건을 구입할 때 더 비싸게 구입해야 하니까요.

장 :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회 : 그렇다면 상품을 표준화하고 물류체계를 새롭게 바꿀 경우 출하에서 판매까지 많은 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시죠.

장 : 경북 상주에 아까 말씀드린 외수농협 같은 경우에 등급표준화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말이죠. 만약에 30상이라고 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31개에서 40개까지 들어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자체를 외국과 같이 과수단위로 포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스 15kg 한 상자 안에 배 같은 과수를 표기할 때 저희는 30상이라고만 표현하는데 외국에서는 31개, 아니면 37개 등 정확히 개수를 표기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품이 정확하게 들어있고 다 균일하게 있습니다. 만약 30상이라고 했을 때 15kg 한상자 라고 기준을 하면 배 한 개당 중량이 428g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공산품과 달라서 다 조금씩 틀리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염두에 두면 배 하나의 크기가 407g에서 450g까지 들어있는걸 허용하는 거죠. 그렇게 실제로 그것을 딱 선별해서 넣었다가 뜯어보면 육안으로 표시될 만큼 과수들이 품질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거기에 대해 상당히 신뢰하게 되죠. 그러다보니까 그 배 자체가 자꾸 소매점에 갔을 때 소비자들이 찾고 소매점들은 팔아보니까 그게 Loss가 생기지 않고 좋으니까 계속 그걸 찾게 되는 겁니다.

사회 : 소비자들의 신뢰를 사두는 방법이기도 한데, 지금 우리 외수농협의 경우 상품표준화를 잘 했는데 이런 경우 물류체계도 잘 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장 : 지금 현재 물류체계 이전에 그 지금까지는 그 배를 골판지 상자에 다 넣어서 지금 현재도 그렇게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수농협 같은 곳에서는 대형유통업체와 공동마케팅을 전개한면서 배에 골판지 상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플라스틱 박스를 썼습니다. 지금 현재 배 골판지 상자의 경우 한 개당 1400원 정도인데 플라스틱 상자의 경우는 국고에서 지원이 나옵니다. 국고에서 70% 지원되니까 실제로 거기서 절감되는 비용이 상품 원가 대비 약 3% 정도가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유통업체 입장에서도 그 골판지 박스에 들어오면은 뜯어서 팔면 그 골판지 박스는 쓰레기 거든요. 실제로 그 쓰레기를 실어나갈 때 킬로당 50원에 팔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아 합니다. 그런데 콘테이너박스를 사용하게 되면 정부지원도 받고 비용도 줄이니까 출하자 입장에서도 이익이죠. 그리고 콘테이너 박스라서 아무리 높이 쌓아도 박스가 찌그러지거나 주저앉는 현상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품이 그대로 온전하게 유지가 되고 밑에 팔레트를 따라서 가니까 전혀 문제가 안 생기죠,

사회 : 지금 전국적으로 배를 생산하는 지역이 많은데 이 방송을 듣는 농가에서는 그 결과가 어땠을까 참 궁금해 할 것 같아요. 실제 그 상주 외수농협의 경우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장 : 실제로 가격에 비해서는 똑같이 받았다 하더라도 박스를 더 저비용의 박스를 쓰니까 그만큼 이익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나머지 유통채널에서 운임이라던가 그런 게 5-10%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출하자가 자기가 직접 가져다 주면 물류비가 거의 15%까지 내려잡니다. 그런데 대개는 대형유통업체와 공동으로 거래하니까 물류비는 약 5% 선에서 절감됩니다. 그 물류비의 차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돈으로 환산해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물론 상품을 잘 만들어서 좋은 가격에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자기들이 하는 많은 이런 유통활동을 저비용체계를 통해서 비용을 적게 들이고 하는 부분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사회 : 끝으로 아직까지 상품표준화를 하지 않은 농가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시죠.

장 :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거래 단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 이라는 개념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매시장 자체의 거래가 우리나라에서 대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매시장도 외국농산물과 똑같이 과일을 중매하거나 팔때도 과수 중심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출하를 하실 때에는 과수중심으로 출하를 하시면 정확하게 제 값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시장에 출하되서 경매사를 중심으로 중도매인까지 전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좋은

값을 지속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 : 네, 알겠습니다. '농업도 마케팅이다', 오늘은 상품의 표준화와 물류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8. 農業動産信用法

I. 序論

일본의 「농업동산신용법」 (1933. 3. 2. 법률 제 30 호) 은 총 19조문, 동법 시행령 (1933. 11. 29. 칙령 307 호) 은 5조문으로서 저당대상을 규정하며, 「농업용동산저당권시행령」 (1933. 11. 29. 칙령 309호) 은 저당 대상의 경매절차를 규정하며 4조문으로 되어 있다.

이 법에 의한 동산저당은 「등록질」 - 등기를 함 (농업용 동산저당 등기부예 기재) - 이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않는 양도담보보다 담보력이 강하다.

다음과 같은 장점을 든다.

- (1) 목적동산을 선의의 제3자가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유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저당권의 목적인 것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14조), 별칙으로 이를 강제한다 (19조).
- (2) 목적동산을 양도한 경우 또는 제3자가 집행한 경우에는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저당권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5조).

II. 日本 農業用 動産의 抵當權

1. 農業用 動産抵當權의 設定

- (1) 이 抵當權을 설정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을 하는 자, 또는 농업실행조합·양잠실

행조합 기타 勅令으로 정하는 法人에 한하며(農業動産信用法 11조 1항·시행령 4조), 이 抵當權을 취득할 수 있는 者는 신용조합 또는 勅令으로 정하는 금융시설(동법 12조 1항·시행령 2조)에 한하며, 모두 法律에 의하여 정해져 있다. 특수 금융의 매개구실을 하도록 하게 하는 취지이다.

(2) 抵當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農業用 動産은 법률로 정해져 있다(시행령 1조). 석유발동기·전동기류, 양수기, 製茶機·孵卵機·乾蠶機류, 원동기에 의하여 운전하는 탈곡기·麥摺機류, 소·말·작은 어선 등, 개개의 物件으로서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에 한하며, 가래·괭이·리어카·낫·伝馬船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원래 개개의 동산이 抵當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서, 一體를 이룬 기업용 재산으로 생각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아직 그 물적설비가 유기적 결합인 일체를 이루는 데는 이르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酪農의 발달, 농업법인의 보급 등에 의하여 사정의 변경도 예상될 수 있을 것이다.

2. 農業用 動産抵當權의 公示와 그 對抗力

抵當權의 公示방법은, 특별등기(農業用 動産抵當登記簿의 기재)이다(동법 13조 1항·3항, 1933년 勅308호 農業用 動産 抵當登記令). 이 등기는, 한 개의 動産에 대하여 1용지를 비치하는 것이므로(등기령 3조), 마치 개개의 동산이 개개의 부동산과 같은 취급을 받는 셈이다. 그러나 登記의 公示力은 일반의 경우와 크게 상이하다. 즉, 農業用動産의 抵當權은, 등기가 없더라도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지만, 한편 등기를 한 후에라도 제3자의 선의취득을 방해할 수는 없다(동법 13조 1항·2항). 더욱이 법률은 目的動産이 선의의 제3자에게 취득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유자가 이것을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채무의 擔保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抵當權의 목적임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하여(14조), 벌칙으로써 이를 강제한다(19조).

그리고 目的動産을 양도하거나 또는 담보에 제공했을 때 및 이에 대하여 제3자가 집행했을 때는, 소유자는 제체없이 그 뜻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도록

했다(15조). 개개의 動産에 대한 등기가 존재하더라도 일반거래계에서는 이에 주의를 하지 않으리라고 예상하여, 소유자의 신의에 호소하고(고의로 손상을 은닉한 경우에도 벌칙이 있다(동법 18조)), 또한 각 경우의 선의·악의에 따라 문제를 결정하려고 한 것이다. 거기에 이 제도가 다분히 인적 신용의 색채를 띠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 사실은, 신용조합과 농민과의 금융관계를 규율하는 데 지장은 되지 않을 것이다. 후술하는 저당증권제도 보다는 훨씬 많이 이용되고 있다.

3. 農業用 動産抵當權의 效力

이 저당권과 선취특권이 경합할 때는, 抵當權은 민법 제330조의 제1순위의 선취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동법 16조). 그 밖의 점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다만 滌除에 관한 378조~387조를 제외한다)이 일반적으로 준용된다(12조 2항). 다만, 저당권의 실행은 특별법(1933년 勅309호 농업용 동산저당권 실행령)에 정한 2, 3의 特則외, 競賣法의 動産의 경매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17조, 실행령 1조). 出處: 我妻 榮 저, 新訂 擔保物權法 (민법강의 III), 1974, 582 - 3면)

III. 일본 농업동산신용법(1933년 3월 29일 법률 제30호)

제 1 장 총칙

제 1 조 (농업의 정의)

- ① 본법에서 농업이란 경작, 養畜 또는 양잠의 업무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를 말한다.
- ② 수산동식물의 採捕 혹은 養殖 또는 薪炭생산의 업무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는 본법의 적용에 있어서 농업으로 간주한다.

제 2 조 (농업용 동산의 정의)

- ① 본법에 있어서 농업용 동산이란 농업경영의 用途에 공하는 동산을 말한다.
- ② 전항의 농업용 동산의 범위는 勅令으로써 이를 정한다.

제 3 조 (담보권자의 범위)

본법의 선취특권 또는 농업용 동산의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 자는 농업협동조합, 신용조합 및 勅令으로써 정한 법인에 한한다.

제 2 장 농업경영자금대부의 선취특권

제 4 조 (선취특권의 취득)

- ① 농업협동조합, 신용조합 기타 勅令으로써 정하는 법인이 농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아래에 드는 행위를 함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를 했을 때는 그 채권의 원본 및 이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특정동산 위에 선취특권을 가진다.

1. 농업용 동산 또는 농업생산물의 보존
2. 농업용동산의 구입
3. 種苗 혹은 비료의 구입
4. 蠶種 또는 甍의 구입
5. 薪炭原木의 구입
6. 명령으로써 정하는 수산양식용 種묘 또는 飼料의 구입

② 전항의 법인이 농사실행조합, 양잠살향조합 기타 칙령으로써 정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농업용동산을 보존하고 또는 구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대부를 했을 때 역시 전항과 같다.

제 5 조 (농업용 등산 또는 농업생산물 보존자금대부의 선취특권)

- ① 농업용동산 보존자금 대부의 선취특권은 대부를 받은 자금으로써 보존한 농업생산물 위에 존재한다.
- ② 농업생산물보존자금대부의 선취특권은 대부를 받은 자금으로써 보존한 농업생산물 위에 존재한다.
- ③ 전2항의 선취특권은 농업용동산 또는 농업생산물에 관한 권리를 보존, 추인 또는 실행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대부에 대해서도 역시 존재한다.

제 6 조 (농업용 등산 구입자금대부의 선취특권)

농업용동산 구입자금대부의 선취특권은 대부를 받은 자금으로써 구입한 농업용동산 위에 존재한다.

제 7 조 (種苗 혹은 비료의 구입자금 대부의 선취특권)

종묘 또는 비료의 구입자금 대부의 선취특권은 대부를 받은 자금으로써 구입한 종묘 또는 비료를 사용한 후 1년내에 이를 사용한 토지로부터 생긴 과실 위에 존재한다. 뽕나무의 비료구입자금 대부의 선취특권에 있어서는 그 과실인 뽕잎에서 생긴物 위에도 역시 존재한다.

제 8 조 (잠종 또는 뽕잎의 구입자금 대부의 선취특권)

잠종 또는 뽕잎 구입자금 대부의 선취특권은 대부를 받은 자금으로써 구입한 잠종 또는 뽕잎으로부터 생긴 물 위에 존재한다.

제 9 조 (신탄원목 구입자금 대부의 선취특권)

신탄원목 구입자금 대부의 선취특권은 대부를 받은 자금으로써 구입한 신탄원목으로부터 생산한 신탄 위에 존재한다.

제 10 조 (수산양식용 종묘구입자금대부의 선취특권)

- ① 수산양식용 종묘구입자금대부의 선취특권은 대부를 받은 자금으로써 구입한 종묘를 양식한 物件 위에 존재한다.
- ② 수산양식용 사료구입자금대부의 선취특권은, 대부를 받은 자금으로써 구입한 사료를 써서 양식한 物件 위에 존재한다.

제 11 조 (선취특권의 우선권 순위)

선취특권의 우선권 순위에 대해서는 농업용동산 또는 농업생산물의 보존자금대부의 선취특권은 동산보존의 선취특권과, 농업용동산 또는 신탄원목의 구입자금대부의 선취특권은 동산매매의 선취특권과, 종묘 혹은 비료, 잠종 혹은 뽕잎 또는 수산양식용 종묘 혹은 사료의 구입자금대부의 선취특권은 종묘비료공급의 선취특권으로 본다.

제 3 장 농업용동산의 저당권

제 12 조 (저당권의 설정)

- ① 농업용동산은 농업을 하는 자 또는 농업협동조합, 기타 칙령으로써 정하는 법인이 그 소속하는 농업협동조합, 신용조합 또는 칙령으로써 정하는 법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를 목적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② 농업용동산의저당권에는 본법 기타의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외에 부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민법(1896년 4월 법률 제89호) 제378조 내지 제387조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 (저당권의 대항력)

- ① 농업용동산의 저당권의 得喪 및 변경은 그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② 전항의 규정은 등기 후일지라도 민법 제192조 내지 제194조의 규정의 적용을 막지 못한다.
- ③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칙령으로써 이를 정한다.

제 14 조 (농업용동산의 양도 등의 경우에 있어서의 저당권존재의 통지 의무)

- ① 저당권의 목적인 농업용동산의 소유자가 이를 양도하려고 할 때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에게 저당권의 존재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규정은 저당권의 목적인 농업용동산을 다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려 할 때 이를 준용한다.

제 15 조 (목적물의 양도, 담보의 공여 또는 압류의 경우에 소유자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의무)

- ① 저당권의 목적인 농업용동산의 소유자가 이를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채무의 담보로 제공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조의 통지를 했다는 뜻을 저당권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 ② 저당권의 목적인 농업용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압류를 했을 경우에는 그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16조 (선취특권과 저당권이 경합했을 경우의 순위)

선취특권과 농업용동산의 저당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민법 제330조에 든 제1순위의 선취특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제 17 조 (저당권의 실행)

농업용동산의 저당권 실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칙령으로써 이를 정한다.

제 4 장 벌칙

제 18 조 (목적물 손상은닉의 죄)

저당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써 저당권의 목적인 농업용동산을 손상 또는 은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엔(2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상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다.

제19조(저당권 침해의 죄)

저당권의 목적인 농업용동산의 소유자 저당권자에게 손상을 가할 목적으로 당해 동산에 관하여 양도, 借入 기타 저당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엔(2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친고죄)

전2조의 죄를 고소가 있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9. 農 漁 業 災 害

검토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규칙,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

I. 개정내용 1:

법률조항	농업·농촌기본법 제40조(농업재해에 대한 시책)
현행조항	정부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생산을 위하여 한해·수해·풍해·냉해 등 농업재해에 대한 예방·응급대책·복구와 농업재해보험·공제제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조항	정부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생산을 위하여 한해·수해·풍해·냉해·병충해·수질 및 토양오염으로 인한 재해 등 농업재해에 대한 예방·응급대책·복구와 농업재해보험·공제제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농어업재해대책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병충해가 주요 재해원인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농업·농촌기본법 제40조(농업재해에 대한 시책)에는 한해, 수해, 풍해, 냉해 등만 농업재해로 명시되고 있어, 이의 수정이 요구됨. 또한 환경오염의 증대로 인해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비점원) 수질 및 토양오염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수질 및 토양오염으로 인한 피해 역시 지원대상 재해로 분류하는 것을 검토해볼만 함

II. 개정내용 2:

법률조항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 제5조(농업재해위원회의 구성등) ②
현행조항	<p>② 위원장은 농림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부차관보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p> <p>1. 재정경제원·내무부·국방부·교육부·상공자원부·건설교통부·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농촌진흥청·기상청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중 소속기관장이 추천하는자 각 1인 및 농림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중 농림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2인</p>
개정조항	<p>② 위원장은 농림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부차관보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p> <p>1. 재정경제원·내무부·국방부·교육부·상공자원부·건설교통부·환경부·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농촌진흥청·기상청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중 소속기관장이 추천하는자 각 1인 및 농림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중 농림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2인</p>
개정이유	개정내용 1에 의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재해를 농업재해에 포함시킬 경우 환경부관리를 농업재해위원회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III. 개정내용 3:

법률조항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②
현행조항	신설
개정조항	10. 가축전염병으로 죽은 가축에 대해 지원하는 경우: 입식비와 방역비
개정이유	최근의 구제역 확산 등을 감안할 때 축산부문의 재해에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포함되어야 할 것임.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서 유실되거나 죽은 가축에 갈음하여 어린 가축을 입식하는 경우의 입식비 지원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죽은 가축의 원인 가운데 어디까지를 재해로 인정할 것인지가 불명확함. 가축전염병의 경우 입식비 외에 방역비 등도 지원되어야 할 것임

IV. 개정내용 4:

법률조항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 제2조(정의) ①
현행조항	① 법 제2조제2호에서 병충해라 함은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우박, 서리, 조해, 설해 또는 동해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병충해를 말한다
개정조항	삭제 혹은 병충해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함
개정이유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우박, 서리, 조해, 설해 또는 동해는 병충해와는 별개의 농업재해로서 이러한 재해들이 원인으로 작용한 병충해만을 인정한다고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V. 개정내용 5:

법률조항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규칙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기준) 2 ②
현행조항	풍수해대책법 및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사항외에 국가의 보조 및 지원 기준에 관하여는 농업재해위원회 또는 어업재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부장관 또한 수산청장이 정한다.
개정조항	풍수해대책법 및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사항외에 국가의 보조 및 지원 기준에 관하여는 농업재해위원회 또는 어업재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이유	관할부서의 명칭 변경

VI. 기타 개정 검토내용:

1. 농어업재해대책법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농업 및 어업생산에 대한 재해의 예방과 그 사후대책을 강구하기 위함이라 규정되고 있으나, 법 내용 자체는 대부분 사후대책과 지원에 치중하고 있어 재해대책 예방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2.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이 일반적인 재해의 복구 및 지원과 관련된 법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관할 부서가 서로 다른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같은 법률로 묶을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10. 環境 農業 法

10-1. 親環境農業育成法

1. 環境農産物の 分類 기준 변경

(1) 법 제16조 (환경농산물의 분류)에서 환경농산물을 일반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전환기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저농약농산물 등 5가지로 구분하고 있음.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반환경농산물을 환경농산물 분류에 포함시킴으로써 법제정 취지를 희석시키고 있음은 물론 소비자의 불만 및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2) 따라서 환경농산물의 종류에서 일반환경농산물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전환기유기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조항 추가

(1) 일반 농법으로부터 유기농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가 소요됨. 이 기간 동안 농가입장에서는 토양개량 등을 위해 상당액의 추가 투자가 요구되는 반면 생산된 농산물은 일반농산물 가격 밖에 받을 수 없으므로 엄청난 경영압박을 받게 됨. 이에 따라 상당수의 농가가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음.

(2) 따라서 전환기농가의 경영압박문제를 어느 정도 보충해줄 수 있는 금융 관련 지원조항 추가가 필요함.

3. 친환경농업 농가 중 소작농가에 대한 행정 지원 조항 추가

- (1) 대도시 인근 지역일수록 친환경농업 육성이 요청되는데 반해 이 같은 지역일수록 부채지주 농지가 많아 소작농가가 많음. 친환경농업은 상당기간 동안 토양개량 등에 많은 투자와 시간이 요구되는데 소작농가 입장에서는 언제 농지를 다시 돌려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시간 및 자금 투입을 꺼리게 마련임. 이 같은 상황에서 친환경농업 육성은 커다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음.
- (2) 따라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소작농가에 대해서는 추가 투자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지원 조항 (예: 소작기간의 연장 등)이 농지법 등에 반영되어야 함.

4. 환경농업 기자재에 대한 조항 추가

- (1) 농업생산자재와 관련된 법률은 「비료관리법」과 「농약관리법」이 있음. 이는 기존의 일반농법을 기준으로 한 것임.
- (2) 반면 환경농업은 다양한 농법이 있고 환경농업이 발전할수록 더욱 다양한 생산자재가 개발 사용되고 있음. 예를 들어 환경농업이 많이 사용되는 자재 중 「목초액」, 「키토산」, 「미생물제재」 등은 엄밀하게 따져보면 비료도 농약도 아니므로 기존의 법률에 포함시키기 힘들.
- (3) 따라서 이 같은 환경농업기자재에 대한 조항을 별도 법률 (예: 환경농기자재 관리법)로 제정하거나 아니면 「환경농업육성법」에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5. 법률 원안·수정안 대비표

현행	수정안	비고
<p>제17조 (환경농산물의 분류)</p> <p>① 환경농산물은 그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일반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전환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 및 저농약농산물로 분류한다.</p>	<p>제17조 (환경농산물의 분류)</p> <p>① 환경농산물은 그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전환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 및 저농약농산물로 분류한다.</p>	<p>환경농산물 분류 중 일반환경농산물을 제외</p>
<p>제19조(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지원)</p> <p>①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자에 대하여 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은 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할 수 있다.</p>	<p>제19조(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지원)</p> <p>①~② 항은 원안과 같음.</p> <p>③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환기농산물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경영압박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 전환기농산물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전환기농산물에 대한 지원조항을 추가 신설</p>

10-2. 土壤汚染防止

한국의 「토양환경보전법」(전문 32조문)은 토양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일반법이며, 일본의 「농용지토양오염방지법」(전문 17조문)은 그 대상을 농용지로 하고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용지 속에 포함될 수 있는 특정 유해물질(카드늄 기타)이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법이다. 그러므로 특히 농지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별도입법이 필요하다.

일본의 「농용지의 토양의 오염방지 등에 관한 법률」(1970. 12. 25 법률 139호) - 이하 「농용지토양오염방지법」이라고 약칭(전문 32조문)

이하 關谷, 農林水産法 138-140면에 있는 同法 설명을 소개한다.

공해대책기본법은 1967년에 제정되었지만, 1970년의 동법의 改正에 의하여 토양의 오염이 동법의 公害로서 추가되어, 그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農業用地 土壤의 汚染防止 등에 관한 法律이 제정되었다.

공해대책기본법에서는,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생기는 상당범위에 걸친 大氣汚染, 水質汚濁, 土壤汚染 등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에 관련된 피해가 생기는 것(생활환경에는 사람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재산과 동식물 및 그 生育환경을 포함한다.)을 ‘공해’로 정의하고, 사업자,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의 공해방지책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공해방지에 관한 기본적인시책을 정하고 있다.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정부는 토양오염에 관련된 환경상의 조건에 대한 사람의 건강 및 생활환경의 보전·유지에 바람직스러운 기준을 정하고, 또한 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자 등의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하는 등으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배출 등의 규제조치를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농업용지의 토양오염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 또는 지도조치를 정하는 誘導的 성격의 법률로서 강제적 요소를 지니고 있지 않고, 또한 제도의 목적으로는 농업생산력의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는 농축산물의 생산 또는 농작물 등의 生育阻害를 방지하고, 그럼으로써 국민의 건강보호 및 생활 환경의 보전에 기여할 것을 들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都道府縣知事)는, 그 지역내의 농업용지의 토양 및 농작물 등에 함유되는 특정 유해물질의 종류 및 量 등으로 보아서 사람의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는 농축산물이 생산되고 혹은 농작물 등의 生育을 저해할 염려가 현저하여 政令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都道府縣知事) 공해대책심의회 및 관계 市邑面長(市町村)의 의견을 들어서, 농업용지 토양오염방지지역으로 지정한다. 여기서 '특정유해물질'이란, 카드뮴 기타 그 물질이 농업용지의 토양에 함유됨으로써 사람의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는 농축산물이 생산되고, 또는 농작물 등의 生育이 저해될 염려가 있는 물질(방사성물질을 제외한다)로서 政令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농업용지 토양오염 대책지역에 대해서,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都道府縣知事)는 특별시 광역시 도 공해대책심의회 및 관계 시읍면장의 의견을 들어서 지역내의 농업용지 이용구분과 이용의 기본방침, 특정유해물질에 의한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관개배수시설 등의 신설, 관리 또는 변경, 오염의 제거를 위한 客土 등 사업, 오염 농업용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地日變換 등의 사업, 오염상황의 조사측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용지 토양오염 대책계획을 정하고, 농림수산대신(역자 주 :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都道府縣知事)는 수질오탁방지법 또는 대기오염방지법에 기초하여, 농업용지 토양오염대책 지역내의 농업용지에 물이 流入하는 공공용수역에 배출되는 排水의 배수기준 또는 그 지역의 매연발생시설에 대한 매연 배출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都道府縣知事)는 농업용지 토양오염대책지역내의 농업용지 중 사람의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는 농산물이 생산된다고 인정되는 농업용지가 있

을 때는 지정농작물 등(그 농업용지에 작물을 심는 것이 적당하지 않는 농작물 또는 가축사료로 제공하는 것이 적당치 않는 植物)의 범위를 정하여, 그 농업용지의 구역을 특별지구로서 지정할 수 있다.

市邑面(市町村)長은,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都道府縣知事)에게 특별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都道府縣知事)는, 특별지구내의 농업용지에서 위의 지정농작물 등의 作付를 하지 않도록, 또는 특별지구내의 농업용지에 生育하고 있는 지정농작물 등을 가축의 사료로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역자 주 : 환경청장관)은, 농업용지의 토양이 공장 등의 배출수, 매연 등에 함유된 특정유해물질에 의하여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광산보안법 기타의 법령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고 또는 관계지방공공단체의 장에게 권고하도록 되어 있다.

출처 : 關谷 俊作, 農林水産法, 現代行政法學會 31, 行政, 1985, 138-140 p.

11. WTO協定履行特別法

농업통상분야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I. 들어가며

1. 總論

세계무역기구협정 이행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93년말 타결된 UR협상 결과를 국회에서 비준하는 과정에서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목적하에 1994년 12월 15일 제정된 것으로 총 1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 농업 보호라는 기본 원칙 하에 "협정과 관계 법령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별법의 제정의 주관부처는 외무부이었으며 관련 소관 부처는 농림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5개 부처임.

특별법의 목적에 비추어 법령정비는 WTO협정상 의무감축사항은 국내여건을 감안하여 점진적인 감축을 유도하고, 장려사항인 허용보조는 입법화를 통한 국내농업보호를 기하는 방향이 되어야 함.

2. 시행령 등 제정의 필요성

특별법의 개정이나 종합적인 시행령의 제정은 상당한 시일을 요할 것이므로 WTO 협상과 국내농업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가를 먼저 심도있게 검토한 후에,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입법이나 개정을 통해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시행령으로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임.

WTO 출범 이후 세계 각국은 농업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도 「농업 농촌 기본법」을 제정하여 총괄적인 국내농업의 보호육성의 근거법으로 삼고, 이 법을 통해 특별법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음

앞으로 통상정책과 관련된 농업보호조치는 WTO이행특별법에서, 국내농정과 관련된 사항은 「농업농촌기본법」을 중심으로 법령을 정비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

II. 개별 조항의 검토

1. 제1조(목적)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함에 있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하 회원국이라 한다)으로서의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고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법 제정목적인 농업보호에 대한 정부부처간 나아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예시적으로 농업보호를 명문화하고, 농업분야에서 한국의 개도국지위를 명문화할 필요있음.

[농림부 검토의견] 동법의 목적 자체가 WTO협정이행에 있어 국익의 보장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있음을 명시하여 우리나라 산업발전 뿐만 아니라 농업보호 등을 명문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재검토의견] 포괄적으로 제1조를 해석하면 농업보호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2. 제2조(경제주권의 보장)

협정의 어느 조항도 세계자유무역체제의 일원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정당한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경제주권을 지키는 것은 WTO체제에서 무엇보다도 심각하게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 나아가 제2조가 식량안보와 통일농정의 근거조항이 될 수 있음.

제2조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이 "정당한 경제적 권익"인가 하는 문제라 할 것인 바, 이는 협정의 해석과정 및 차기협상과정에서 국제적인 틀 속에서 우리나라의 특수상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도 직결되어 있음. 이 조항에 식량자급률 등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방안 등에 관한 규정을 추가해야 함.

[농림부 검토의견]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규정을 농업·농촌기본법에 반영하여 2001. 2. 28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음

-주요 품목별 식량자급률의 목표를 농업·농촌 발전기본계획 수립시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동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즉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재검토의견] 농업·농촌기본법에 식량안보 규정을 반영하고, 주요 품목별 식량자급률 목표를 농업·농촌 발전기본계획 수립시 포함시키는 조치는 타당함

3. 제3조(협정상의 권익확보)

- ① 정부는 협정의 기본원칙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행한다.
- ② 정부는 협상의 결과가 협정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거나 협정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특정 품목의 국내 피해가 클 경우 협정절차에 따라 이를 수정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항은 협정이 우리나라에 불리한 규정이 많고 대부분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스스로 불합리한 협정상의 의무를 준수한다는 선언을 할 필요가 없는 바,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함

[농림부 검토의견] 협정에 대한 이행에 있어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며, 이에는 기본

원칙을 따르는 것이 옳은 방향일 것임. 동조 제2항에서 “협상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거나 협정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특정품목의 수매피해가 있을 경우 협정절차에 따라 수정하기 위한 협정을 추진한다”고 규정하여 제1항과 제2항은 서로 상호 연계되어 있음. 따라서 개정의 실익이 없음.

(2) 제2항

제2항은 문맥상 표현이 모호하고 “협정의 기본원칙”이나 “협정절차”와 같은 포괄적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

농림부는 이 규정을 농림수산물 양허재협상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하면서 WTO 협정상의 양허재협상 추진요건과 절차로 (1) 특정산품의 수입에 대한 산업피해 구제조치로서의 긴급조치와 (2) 특정상황에 기인한 양허재협상에 대해 설명. 그리고 관계법령으로 관세법 제43조의 9, 대외무역법 제26조 내지 30조를 들.

관련조항만으로는 양허재협상의 요건에 있어 (1)의 경우 우리나라의 판단에 의한 자동발동문제, (2)의 경우 “특정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한 조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상 적용되는 경우 요건 등이 각각 다르고 조치를 취하는 주체가 다르므로 인해 가령 농산물에 대한 양허재협상의 경우 단계별로 어떤 절차를 밟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위 조문만으로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충분하지도 않음

[농림부 검토의견] 양허의 정지, 수정·철회 등의 조치와 재협상에 대한 사항은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발동요건이 성립되면 관세법 등의 절차에 따라 발동할 수 있는 등 실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준비는 완료하였음

준용해야 할 규정을 제외하고 우리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양허의 정지, 수정, 철회 등의 조치와 재협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4. 제4조(보조금에 대한 조치)

회원국이 협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보조금 등에 의하여 수출을 하는 때에는 정부는 협정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출보조금은 우리가 수입을 할 경우와 수출을 할 경우로 나누어 고찰하여야 할 것. 위 규정처럼 우리가 수입을 할 경우 수출국의 부적절한 보조금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 뿐만 아니라 양허의무 위반을 이유로 수입의 제한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

[농림부 검토의견] 보조금 규정 위반시 당사국의 조사, 이해 당사국과의 협의, 피해의 판정, 상계관세 부과 및 징수의 절차를 거치도록 보조금 상계조치 협정 제 5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를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실제 운용되고 있음

5. 제5조(민족내부거래)

남북한간의 거래는 민족내부거래로서 협정에 의한 국가간의 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6. 제6조(특별긴급관세)

농림수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국제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때에는 정부는 협정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6조는 협정 제5조를 그대로 입법화한 것으로 특별긴급관세가 과도적 조치인가의 논란이 있으므로 동 조항을 유지하고 물량기준과 가격기준 등 발동요건 등에 대해 가능한한 법으로 끌어 올려 규정을 하고 구체적인 부분은 시행령에 담아야 할 것. 현행 관세법 제12조의 3과 관세법 제4조의 19, 관세법 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준용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

[농림부 검토의견] WTO이행특별법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하고 있고, 특별 긴급관세 부과의 규정은 이미 관세법에서 정리

하고 있어 제도적 준비는 완료하였음

[재검토의견] 최근 중국산 마늘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의 부과근거가 된 것으로 관세법에서 관련 규정 정리.

7. 제7조(농림수산물 관세 및 수입이익금의 용도)

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림수산물 관세와 수입이익금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민 소득향상 및 농어촌 발전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농림수산물관세에 대해서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농림수산물 수입이익금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 농안법, 축산법, 산림법 등에 규정이 산재해 있는 바 특별법에 최소한 그 용도를 규정해놓고 준용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

관세 및 이익금을 다시 농업보호를 위해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관세액 전입대상수입 농림수산물이나 수입이익금 부과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야 함.

[농림부 검토의견] 농림수산물 관세 전액은 농특회계 구조개선사업 계정에 전입하여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투자하도록 농어촌 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또한 농림수산물 수입이익금 관리를 위하여 양곡관리법, 농안법, 축산법 등 개별법에서 정리하고 있어 특별법 개정의 실익이 없음. 관세 및 수입이익금 부과대상품목은 법령 또는 WTO협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품목확대는 회원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8. 제8조(국민건강의 보호)

식품, 그 용기 기타 수입물품이 검역법·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법령이 정하는 세균·병해충 또는 유해물질 등을 함유하여 국민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그 수입물품이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물품 또는 그 수입물품을 제조·가공한 제조원의 유사물품에 대하여 협정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8조는 SPS(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협정의 내용을 반영한 규정이라 할 수 있으나 식품안전성, 실질적인 수출증대, 수입억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됨.

SPS협정에서도 고의적이고 불공정하지 않는 한 차별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이 조항을 활용해 수입을 실질적으로 금지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9. 제9조(환경의 보호)

특정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사람·동물의 건강이나 식물의 성장을 해할 환경오염의 위험이 있는 때에는 정부는 협정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물품에 대하여 그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관련법령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을 들고 있으나 위 규정들이 상당한 예외를 인정하는 등 규정이 완비되어있지 못하고 제8조와 마찬가지로 검역 등 관련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못하여 상당한 정비가 필요

농업의 환경편익 기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농업과 관련해 환경농업육성법을 적극 활용할 근거로 할 필요성이 있음

[농림부 검토의견]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법령이 있으며, 관련법령에서 규정이 완비되어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적시가 필요하며 그러할 경우 관련부처에 건의하여 제도 정비에 노력하겠음

10. 제10조(수입기관의 지정)

정부는 농림수산물의 수입으로 인하여 관련 국내농림수산업이 위축될 위험이 큰 물품에 대하여는 협정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으로 하여금 수입하게 할 수 있다.

관련법령으로 양곡관리법, 축산법, 농수산물의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종자관

리법 등을 들고 있으나 특별법에 각 품목을 포괄하는 통일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국영무역의 문제 즉 국영무역이 무역을 왜곡하는지 역시 차기 협상의 주요 쟁점 중의 하나. 이 조항은 수입국영무역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출국영무역에 대한 우리의 입장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수입으로 인한 국내외 가격차 등 국영무역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바, 협정위반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수입 전망에 대한 국영무역 등도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하여야 하고 시장접근 물량의 수입관리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운용지침이 없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국영무역제도를 원용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그 품목도 확대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농림부 검토의견] WTO협정 발효에 대비 수입관리제도 관련법령인 양곡관리법, 축산법, 농안법, 종자관리법 등을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므로 개정의 실익이 없음

11.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 ①정부는 협정 발효후 조속한 시일내에 수출품에 대한 신용보증과 수출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등 협정이 허용하는 수출시장개척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충하여야 한다.
- ②정부는 협정 발효후 조속한 시일내에 농림수산업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정이 허용하는 다음 각호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생산통제를 목적으로 한 직접지불
 2. 영세농 등을 위한 보조
 3. 토양 등 환경보전을 위한 유기농·경종농에 대한 보조
 4. 농림수산업 재해에 대한 지원
 5. 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

(1) 제1항

관계법령으로 농업·농촌기본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수출보험법, 인삼산업법 등. 그러나 관계법령위 각 법 규정은 지원할 수 있다는 정도의 규정밖에 없는 상태이고 농수산물수출보험 역시 구체적인 정비가 필요

우리가 수출을 하는 경우 수출보조금에 대한 개념규정이 아직까지 협정에서 명확히 정의되고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실질적인 수출보조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입법화하여야 함.

농업농촌기본법과의 관계 : 제35조(농산물의 수출진흥)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수출진흥과 우리 식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림부 검토의견] 농산물 수출 등에 대한 규정은 농안법, 농업·농촌기본법 관련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 사업을 뒷받침하고 있음. 구체적 정비에 대한 내용을 적시한다면 반영 검토하겠음

(2) 제2항

- ① 제11조 제2항의 시행령으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을 1997. 2. 1 대통령령 제15265호로 제정되어 1999. 3. 31. 개정함.

농림부는 위 규정에 의해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논농업직접지불제를 2001년부터 실시하

고 있음.

협정상 국내보조는 허용보조(green box),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blue box), 감축대상보조(amber box)로 구분되어 있는 바, 특별법에서는 이를 망라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야 할 것

허용보조가 협상과정에서 무역왜곡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 점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 등을 적극 활용하여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제를 유지하고 허용보조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수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우리의 주식인 쌀 등에 대한 정부지원을 정당화할 수 있는 내용을 입법화하여야 함.

직접지불제를 시행시 농업의 구조조정과 농산물의 안정적 확보방안, 재정확보방안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② 생산통제를 목적으로 한 직접지불에 대해서도 감산정책의 필요성 여부, 재정문제 등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시행령을 제정하여야 할 것.
- ③ 영세농 등을 위한 보조로서 일반적 투자보조나 농업투입재에 대한 보조, 부채경감조치, 학자금 지원, 생활보호비 지급, 연금, 의료보험 지원 등도 통일적으로 규정
- ④ 토양등 환경보전을 위한 유기농, 경종농에 대한 보조 부분도 환경보전지원제도라는 차원으로 외연을 확대시키고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농업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면서 환경보호라는 농업의 비교역적, 다원적 기능에 근거한 직접지불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규정 보충
- ⑤ 농수산업 재해에 대한 지원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개정하여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특별법에 명시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급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⑥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소득보조

농업에 대한 산업지원이 아닌 농민에 대한 소득지원으로서 허용보조로 인정되는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함.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 이에 해당)농어가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생활보호법, 국민연금법의 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농업보호 및 복지정책 차원에서 강화된 규정을 특별법에 명시하여야 함.

농업농촌기본법 관련규정: 제39조, 제40조

제39조(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한다.

1. 영세농 등을 위한 지원
2. 토양 등 환경의 보전을 위한 지원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
6. 기타 농업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

제40조(농업재해에 대한 시책)

정부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생산을 위하여 한해·수해·풍해·냉해 등 농업재해에 대한 예방·응급대책·복구와 농업재해보험, 공제제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농림부 검토의견] 특별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은 WTO농업협정의 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지원관련 조항을 담아 둔 것이며, 구체적인 규정은 동법의 시행령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담겨 있으므로 특별법 개정의 실익은 없음

12. 제12조(생산자단체의 농림수산물 수급조절사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농림수산물 수급조절사업을 하는 생산자단체에게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매·비축·가공 등의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민간부분의 활성화를 통한 수급조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농촌기본법,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등 제반 법률을 정비하고 자조금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등 지원가능한 구체적 규정을 두어야 함

농업농촌기본법 관련규정 : 제30조(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①정부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농업관측, 생산조정, 수매비축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금조성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유통업을 영위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림부 검토의견] 농림수산물 수급조절사업은 현재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원되고 있는 바, “구체적 규정”이 어떤 내용인지 적시한다면 반영 검토하겠음

13. 제13조(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사업의 실시)

정부는 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협정 발효후 년1회 시행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사업은 지속적 과제라 할 것이므로 농업·농촌기본법의 내실화와 관계법령의 정비 등을 통해 WTO체제 하에서 한국농업과 농업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14. 제14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입법상의 불비를 예상하여 시행령을 만들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둬.

[농림부 검토의견]

(1) WTO이행특별법은 '95.1.1출범한 WTO체제 협정이행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국내산업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하여 제정

(2) 동법 중 시행이 필요한 규정을 각 조문별로 “협정과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음.

-기존의 관계법령으로 특별법시행을 뒷받침하고 있음

(3) 특히 관계법령이 없어 시행령 제정이 필요한 특별법 제 11조 제 2항 직불제 시행을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을 '97.2.1 제정하여 경영이양직불제를 시행

-동시행규정을 개정하여 '99년부터 친환경농업 직불제를, 2001년부터 논농업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직불제를 확대할 경우 동 시행규정을 개정하여 근거를 제공할 계획임

(4) 따라서 동 특별법에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도록 건의하고 있는 본 연구용역은 우리 부의 의견과 상치되는 것이며, 적절하지 않은 검토임.

-연구보고서에 타법에서 규정하여야 될 사항 등에 대하여 통일적인 규정·구체적인 정비 등의 표현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음

[재검토의견]

(1) WTO이행특별법의 관련조항을 검토해보면 이미 관계법령에 반영되었거나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조항도 있어서 농림부 검토의견은 일면 타당하다고 봄.

(2) 농업·농촌기본법은 WTO체제 출범이라는 개방경쟁시대에 대응한 농업·농촌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농업농촌관계법률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WTO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농업에 관한 기본정책 및 보호조치에 관한 국내법적인 근거로서 활용하고, WTO이행특별법은 다자간·양자간 협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특히 농업분야 협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근거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임.

집필자 명단

1. 序 論 (黃迪仁 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학술원 회원)
2. 農業·農村基本法 解説 (黃迪仁 교수)
3. 女性農業人育成法案 (崔柄煜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대)
4. 農業協同組合法 (成潑根 교수, 충북대 농과대 농경제학과 ; 김두년 실장, 농협중앙회 조사부 유통경제실)
5. 農地法 등
 - (1) 農地法 (朱奉圭 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金正夫 선임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농촌발전연구부 농지팀)
 - (2) 強制責任法 (黃迪仁 교수)
 - (3) 農地의 一子相續制 (崔柄昱 교수)
 - (4) 草地法 (朱奉圭 교수, 김정부 실장)
6. 農漁村整備法 등
 - (1) 農業構造 (李泰鎬 교수, 서울대 농생대 농경제사회학부)
 - (2) 限界農地 (黃迪仁 교수)
7. 農產物流通
 - (1) 農產物 流通 關聯 法律 (金完培 교수, 서울대 농생대 농경제사회학부)
 - (2) 農產物 規格 (黃迪仁 교수)
8. 農業動産信用法 (黃迪仁 교수)
9. 農漁業災害 (權五祥 교수, 서울대 농생대 농경제사회학부)
10. 環境農地法
 - (1) 親環境農業育成法 (金完培 교수)
 - (2) 土壤汚染防止 (黃迪仁 교수)
11. WTO協定履行特別法 (宋在一 계장, 농협중앙회 통상협력팀)